일반연구보고서 2025-5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에 관한 법령 정비 방안

A Study on Legislative and Regulatory Improvements for Supporting Crime Prevention Environmental Design

김성준 Kim, Sungjoon
김은희 Kim, Eunhee
조영진 Cho, Youngjin
허재석 Her, Jaeseok

(aur

일반연구보고서 2025-5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에 관한 법령 정비 방안

A Study on Legislative and Regulatory Improvements for Supporting Crime Prevention Environmental Design

지은이 김성준, 김은희, 조영진, 허재석
펴낸곳 건축공간연구원
출판등록 제2015-41호 (등록일 '08. 02. 18.)
인쇄 2025년 12월 29일, 발행: 2025년 12월 31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8층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8

http://www.auri.re.kr
가격: 10,000원, ISBN: 979-11-5659-531-1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공간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진

연구책임	김성준 부연구위원
연구진	김은희 연구위원 조영진 선임연구위원 허재석 연구원
연구보조원	신슬기 조사원

연구심의위원	오성훈 선임연구위원 김상호 선임연구위원 서수정 선임연구위원 강석진 경상국립대 교수 이경환 공주대학교 교수

차례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11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4

제2장 범죄예방 환경 조성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 검토 17

1. 범죄예방 환경 조성 관련 문헌 검토 18
2. 범죄예방 환경 조성 관련 선행연구 검토 21

제3장 범죄예방 환경 조성 관련 법령 및 추진경과 33

1. 범죄예방환경조성 관련 법제도 현황 34
2. 관련 법령 제정 추진 경과 46
3. 법안 내용상의 쟁점 68

제4장 범죄예방 환경 조성 관련 법제정(안) 마련 99

1.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안)」 개선방안 제안 100
2. 전문가 FGI 를 통한 법령 체계화 방안 109
3.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안)」 제안 132

제5장 결론 219

1. 연구 요약 220
2. 연구 성과 및 향후 과제 226

참고문헌 227

부록 229

1.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안)」 229
2. 「생활안전환경조성법(안)」 추가제안 및 비교 236

표 차례

List of Tables

[표 1-1] 지방자치단체별 범죄예방 관련 조례 ····· 4
[표 1-2] 중앙 부처의 CPTED 사업 현황 ····· 6
[표 1-3] 미국 법무부 State and Local Assistance 하위조직 ····· 7
[표 1-4] 호주 법무부 연방 프로그램 ····· 8
[표 1-5] 주요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14
[표 2-1] 경찰청「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의 1 세대 CPTED 디자인 원칙 ····· 19
[표 2-2] 2 세대 CPTED 전략의 특징 ····· 20
[표 2-3] CPTED 정책문제 및 대안(신의기 외, 2008) ····· 21
[표 2-4] 우리나라 CPTED 문제점 및 정책 발전 방안(박헌수, 2015) ····· 23
[표 2-5] CPTED 제도화 방안(양진석, 2010) ····· 25
[표 2-6] CPTED 법률 추진방안(김용길·박민영, 2014) ····· 26
[표 2-7] CPTED 조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수진, 2022) ····· 27
[표 2-8] CPTED 조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장동훈, 2023) ····· 28
[표 2-9] CPTED 조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김고원·강석진, 2019) ····· 28
[표 2-10] 우리나라 CPTED 한계 및 개선방안(최용성·곽대훈, 2020) ····· 29
[표 2-11] 건축물의 효율적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안(조영진·손동필, 2016) ····· 30
[표 2-12] 범죄예방을 위한 법체계 정립방안(조영진 외, 2019) ····· 31
[표 3-1]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의 구성 및 포함 내용 ····· 35
[표 3-2] 대통령훈령 제 448 호「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규정」구성 ····· 36
[표 3-3] 범죄예방 환경개선 협의회 ····· 36
[표 3-4] 범죄예방 환경개선 실무협의회 ····· 37
[표 3-5]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계획 ····· 38
[표 3-6] 자문위원(제 8 조) ····· 38
[표 3-7] 운영세칙(제 12 조) ····· 39
[표 3-8]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추진경과 ····· 41
[표 3-9]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의 추진과제 ····· 41
[표 3-10]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추진과제-CPTED 관련 제도 개선 ····· 42
[표 3-11]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추진과제-CPTED 사업 통합관리 인프라 구축 ·· 43
[표 3-12]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추진과제-CPTED 사업 관계기관 협업 강화 ····· 43
[표 3-13]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추진과제 – CPTED 관련 인식 제고 ····· 45
[표 3-14] 범죄예방기본법안(2015) 구성 ····· 46

[표 3-15] 범죄예방기본법안(2015) 주요 내용 ····· 47
[표 3-16] 범죄예방 기본법안(2016) 구성 ····· 48
[표 3-17] 범죄예방 기본법안(2016) 주요 내용 ····· 48
[표 3-18]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2016) 구성 ····· 50
[표 3-19]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2016) 주요내용 ····· 51
[표 3-20]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2020) 구성 ····· 52
[표 3-21]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2020) 주요 내용 ····· 52
[표 3-22] 지역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2021) 구성 ····· 53
[표 3-23] 지역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2021) 주요 내용 ····· 54
[표 3-24]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2025) 구성 ····· 55
[표 3-25]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2025) 주요 내용 ····· 56
[표 3-26] 법률안별 포함 내용 ····· 57
[표 3-27] 법률안별 제정 목적 ····· 59
[표 3-28] 법률안별 정의된 항목 ····· 60
[표 3-29] 법률안별 책무 ····· 62
[표 3-30] 법률안별 계획·사업 관련 내용 ····· 65
[표 3-31] 법률안별 주체 ····· 69
[표 3-32] 법안별 기본계획과 대통령훈령 제 448 호에 따른 범죄예방환경개선 기본계획 ·· 73
[표 3-33] 법안별 자문·심의기구 ····· 75
[표 3-34] 법안별 지역협의체 ····· 76
[표 3-35] 법안별 범죄 데이터 관련 내용 ····· 78
[표 3-36] 법안별 범죄예방 진단 내용 ····· 82
[표 3-37] 법안별 범죄예방 강화구역, 범죄예방 디자인 조항에서의 범죄예방 진단 내용 ··· 83
[표 3-38] 법안별 범죄예방 강화구역 내용 ····· 86
[표 3-39] 법률안별 행정적·재정적 지원 ····· 91
[표 3-40] 법안별 범죄예방디자인 인증 관련 내용 ····· 94
[표 4-1]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 주체별 책무 ····· 101
[표 4-2]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 구성 ····· 101
[표 4-3]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 내 계획 ····· 103
[표 4-4]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 내 심의·자문 기구 ····· 104
[표 4-5]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 내 협력의무 명시 조항 ····· 105
[표 4-6]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 범죄예방실무협의체 ····· 106
[표 4-7]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 의 범죄예방 데이터와 범죄 데이터 ····· 107
[표 4-8] FGI 참여 전문가 분야별 인원 ····· 109
[표 4-9]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 법률안 전반에 대한 의견 ····· 110
[표 4-10]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제 1 장제 1 조) ··· 113
[표 4-11]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제 1 장제 2 조) ··· 113
[표 4-12]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제 1 장제 3 조) ··· 115
[표 4-13]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제 1 장제 5 조) ··· 116
[표 4-14]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제 2 장) ····· 116
[표 4-15]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제 2 장제 6 조) ··· 117

[표 4-16]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제 2 장제 7 조) … 117
[표 4-17]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제 2 장제 8 조) … 118
[표 4-18]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제 3 장제 10 조) … 119
[표 4-19]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제 3 장제 11 조) … 119
[표 4-20]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제 3 장제 12 조) … 120
[표 4-21]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제 3 장제 13 조) … 120
[표 4-22]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제 3 장제 14 조) … 121
[표 4-23]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제 3 장제 15 조) … 121
[표 4-24]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제 4 장제 16 조) … 122
[표 4-25]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제 4 장제 17 조) … 122
[표 4-26]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제 4 장제 18 조) … 123
[표 4-27]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제 4 장제 19 조) … 124
[표 4-28]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제 4 장제 20 조) … 125
[표 4-29]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제 4 장제 21 조) … 126
[표 4-30]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제 4 장제 22 조) … 126
[표 4-31]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제 4 장제 23 조) … 127
[표 4-32]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제 4 장제 24 조) … 127
[표 4-33]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제 4 장제 25 조) … 128
[표 4-34]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제 5 장제 27 조) … 129
[표 4-35]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제 5 장제 28 조) … 130
[표 4-36]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제 5 장제 29 조) … 130
[표 4-37]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제 5 장제 31 조) … 130
[표 4-38]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제 6 장제 32 조) … 131
[표 4-39] 타 법률에서의 제정목적 … 133
[표 4-40] '용어의 정의' 중 '범죄예방' 관련 입법례 … 135
[표 4-41] '국가 등의 책무' 입법례 … 137
[표 4-42] '국민, 지역주민의 책무' 입법례 … 139
[표 4-4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입법례 … 140
[표 4-44] '범죄예방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입법례 … 141
[표 4-45] '범죄예방 기본계획 수립' 입법례 … 144
[표 4-46] '범죄예방 시행계획 수립' 입법례 … 154
[표 4-47]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입법례 … 156
[표 4-48] '범죄예방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입법례 … 158
[표 4-49] '범죄예방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입법례 … 162
[표 4-50] '범죄예방실무협의체의 설치' 입법례 … 163
[표 4-51] '범죄예방정책책임관의 지정' 입법례 … 166
[표 4-52] '범죄예방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입법례 … 168
[표 4-53] '지역 범죄예방협의체의 설치' 입법례 … 170
[표 4-54] '범죄예방 실태조사' 입법례 … 171
[표 4-55] 경찰관서의 범죄예방 관련 조직과 담당업무 … 174
[표 4-56] '범죄예방 진단' 입법례 … 175

[표 4-57] 범죄예방디자인 자치법규 사례 ····· 177
[표 4-58] '범죄예방 디자인' 관련 입법례 ····· 178
[표 4-59] '범죄예방 디자인 활성화 시책' 관련 입법례 ····· 178
[표 4-60]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 입법례 ····· 180
[표 4-61]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 관련 입법례 ····· 182
[표 4-62]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조치' 관련 입법례 ····· 184
[표 4-63] '범죄통계의 작성·관리 및 공개' 관련 입법례 ····· 186
[표 4-64] '범죄위험지수의 공표' 관련 입법례 ····· 188
[표 4-6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예보·경보 대상 재난의 범위 ····· 190
[표 4-66] '범죄 등에 대한 예보·경보' 입법례 ····· 190
[표 4-67] '범죄예방디자인 인증' 관련 해외 입법 사례 ····· 193
[표 4-68] '범죄예방디자인 인증' 관련 입법례 ····· 193
[표 4-69] '인증의 취소 및 청문' 관련 입법례 ····· 198
[표 4-70] '범죄예방공단' 관련 입법례 ····· 200
[표 4-71]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관련 입법례 ····· 205
[표 4-72] '범죄예방 교육' 관련 입법례 ····· 208
[표 4-73]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 현황 ····· 210
[표 4-74]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의 활성화' 관련 입법례 ····· 210
[표 4-75] '범죄예방사업에 대한 보조' 관련 입법례 ····· 211
[표 4-76] '권한의 위임·위탁' 입법례 ····· 213
[표 4-77] '포상' 관련 입법례 ····· 214
[표 4-78] '과태료' 입법례 ····· 216
[표 5-1] 법률안별 제정 목적 ····· 220
[표 5-2] 법률안별 포함 내용 ····· 221
[표 5-3]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 입법 시도된 법률안의 주요 쟁점 ····· 222
[표 5-4]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안)」 법률안 전반에 대한 의견 요약 ····· 223
[별표 1]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 최종안 ····· 229
[별표 2] 「범죄예방환경조성법(안)」과 「생활안전환경조성법(안)」 조문비교 ····· 236

그림 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1-1] 주요 범죄유형별 발생비 추이(2019 년~2023 년) ····· 2
[그림 1-2]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 ····· 3
[그림 1-3] 범죄피해 두려움 ····· 3
[그림 4-1] 범죄예방디자인(CPTED)의 개념 ····· 134
[그림 4-2]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범죄통계 사례(주요 범죄유형별 발생비 추이) ····· 186

Chapter. 1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5년간 전체범죄의 발생건수는 대체로 감소하였으나, 2022년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

최근 5년간 전체범죄의 발생건수는 대체로 감소하였으나, 주요 범죄유형 중 강력범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절도범죄, 마약범죄, 지능범죄는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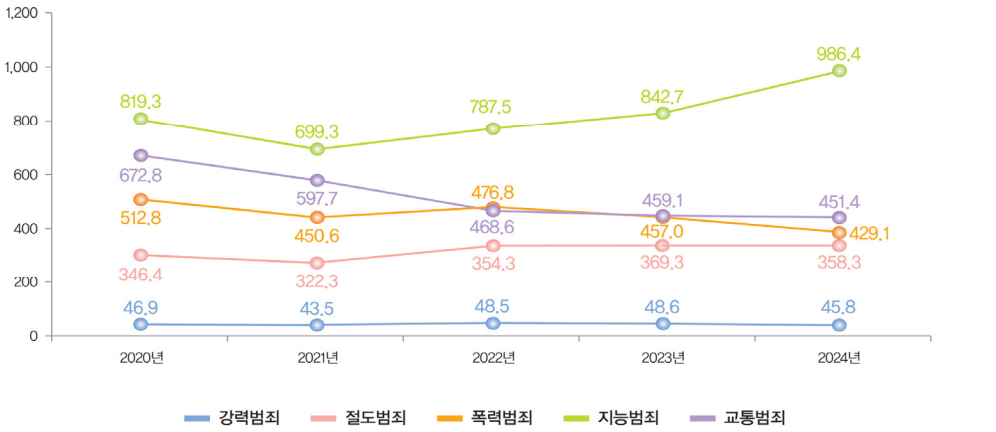

[그림 1-1] 주요 범죄유형별 발생비 추이(2020년~2024년)

출처: 경찰청. (2024). p.20.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List.do?q_bbsCode=1115&estnColumn2=%EB%85%84%EB%8F%84) (검색일: 2025.2.19.)

국민의 범죄로 인한 불안감 수치 역시 편차가 있지만 지난 10년간 약 25%의 높은 수준으로, 국가적 재난 상황을 제외하면 사회의 주된 불안 요소로 나타난다.[2)]

1) 경찰청. (2024). p.21.

2) 법무부. (2022). p.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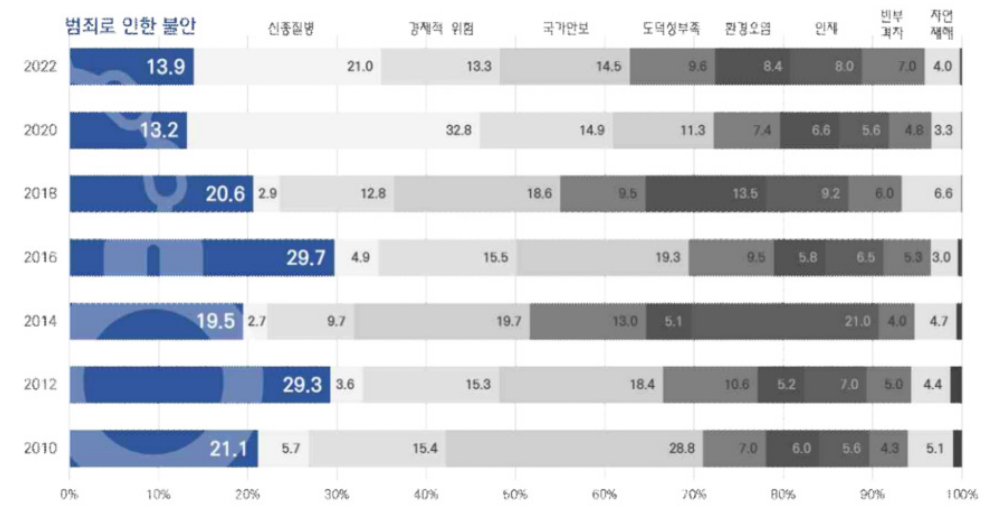

[그림 1-2]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
출처: 법무부. (2022) p.4. [그림 1-2]

범죄 피해 두려움은 감소 추세였으나 2021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 사회의 범죄건수 및 범죄로 인한 불안감, 범죄 피해 두려움 모두 전체적으로 높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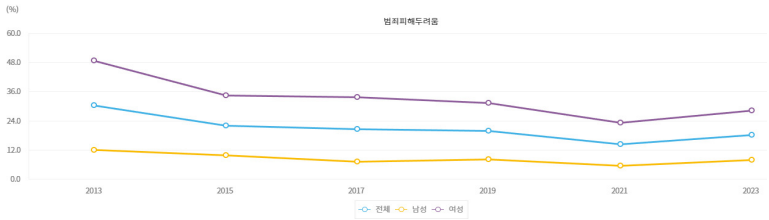

[그림 1-3] 범죄피해 두려움
출처: 지표누리 국가발전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lasCd=2&idxCd=4264) (검색일: 2025.2.19.)
* 범죄 피해 두려움은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려운 편이다' 또는 '매우 두렵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참고기사〉 여성 1인 가구 '범죄 불안' 커졌다... 사회 안전 인식도 30% ↓

"처음으로 자취했던 집이 반지하였는데, 어느 날 새벽에 자다가 눈 떴더니 누가 창문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날 트라우마 때문에 반지하에서 절대 안 살아요."
"최근 범죄 때문에 늘 불안해요. 집 가는 길에 골목길이 많은데, 야근하고 귀가할 때 가장 무서워요."

최근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혼자 생활하는 여성 1인 가구가 늘면서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중은 28.9%로 2년 전(33.3%)보다 4.4%포인트 감소했다.

사회의 안전 상태 변화에서는 더 큰 차이를 보였다. 5년 전보다 안전해졌다는 비중은 21.9%로 2년 전보다 무려 10.4% 포인트 떨어졌다. 또한 앞으로 5년 후 우리 사회가 현재보다 안전해질 것이라는 비중은 22.9%로 위험해질 것이라는 비중(30.3%)보다 현저히 낮았다.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는 '범죄'(17.9%)가 꼽혔다. 이어 경제적 위험(16.5%), 국가 안보(16.2%), 환경오염(10.0%) 순이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국가 안보(18.3%)를 꼽았고, 여자는 범죄(22.4%)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된 불안 요인이라고 짚었다.
야간에 혼자 걸을 때 불안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증가했다.
13세 이상 인구 중 밤에 혼자 걸을 때 불안하다고 느낀 비중은 30.5%로 2년 전(29.6%)보다 0.9%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여자(44.9%)가 남자(15.8%)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야간 보행이 불안한 이유는 '신문, 뉴스 등에서 사고 접함'(46.3%)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인적이 드물'(26.4%), '가로등·CCTV 등 안전시설 부족'(16.9%) 순으로 조사됐다.
(이하 생략)
출처: 1코노미뉴스(2024. 11.13.). (https://www.1conom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89) (검색일: 2025.2.19.)

범죄는 개인의 재산이나 신체상 피해 뿐 아니라 심리적인 불안감을 가중시킴에 따라 삶의 질 저하는 물론 막대한 유무형의 사회경제적 비용손실을 유도하여 지역을 쇠퇴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2022년 기준 범죄 연평균 사회적 추정 비용은 약 1,890만 원, 범죄 유형별 사회적 추정 비용은 살인 217억 원, 강간 2억 7,264만 원, 강도 5,759만 원, 절도 242만 원으로 추산된다.[3] 경기도 내 범죄 피해의 사회적 총 비용은 36조 원 정도로 추정되며, 그 중 약취 유인과 강간이 각 6조 원으로 가장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 범죄로부터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법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여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범죄예방 관련운동 및 사업 추진

법무부는 법질서를 확산하고 국민의 지속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법질서 실천운동'을 현재 시행 중이다. 광주시의 경우 '15년 청결·질서·친절 3대 문화시민운동이 일상생활 속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어 이와 관련한 시범사업 및 조례의 제정이 추진되었다. 법무부·국민안전처 등의 중앙부처와 서울시·부산시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CPTED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5개의 광역자치단체와 158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등을 수립하였다.

3) 법무부. (2022). p.4.

4) 왕연상. (2021). 부천포커스. 2021.02.15. (http://www.e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833) (검색일: 2025.2.19.)

[표 1-1] 지방자치단체별 범죄예방 관련 조례

조례	자치단체	
	광역	기초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남 거제시, 경기 과천시, 전북 김제시, 경남 김해시, 전북 남원시, 전남 목포시, 경남 밀양시, 경남 사천시, 경남 양산시, 전북 전주시, 경남 진주시, 충북 충주시, 경남 포항시
		전남 강진군, 인천 강화군, 전남 곡성군, 경남 남해군, 전남 담양군, 전남 무안군, 부산 기장군, 전남 신안군, 충북 영동군, 전남 영암군, 울산 울주군, 경남 의령군, 전북 장수군, 전남 장흥군, 충북 증평군, 전남 진도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안군, 전남 해남군, 전남 화순군, 강원 화천군
		광주 남구, 광주 북구, 광주 서구, 대구 남구, 대구 달서구, 대구 서구, 부산 강서구, 부산 금정구, 부산 남구, 부산 동구, 부산 동래구, 부산 부산진구, 부산 북구, 부산 사상구, 부산 서구, 부산 수영구, 부산 연제구, 부산 영도구, 부산 중구, 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 울산 북구, 인천 계양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부평구, 인천 연수구, 인천 중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강원 강릉시, 경기 광명시, 전남 광양시, 경기 광주시, 경기 동두천시, 강원 삼척시, 강원 속초시, 강원 원주시, 경남 창원시, 강원 태백시
		강원 고성군, 전남 고흥군, 전남 구례군, 대구 달성군, 전남 보성군, 충북 보은군, 강원 양구군, 강원 양양군, 경기 양평군, 전남 영광군, 강원 영월군, 전남 완도군, 전북 완주군, 강원 인제군, 강원 정선군, 전남 함평군, 강원 홍천군, 강원 횡성군
		서울 광진구, 서울 금천구, 서울 노원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양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종로구, 부산 사하구, 인천 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의정부시
		서울 강남구, 서울 강서구, 서울 구로구, 서울 마포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서초구, 서울 성동구, 서울 중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	인천광역시	경남 고성군
		인천 남동구, 인천 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설치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포천시
		광주 광산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및 범죄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경기 안양시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조례		경기 시흥시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현재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계획과 사업 대부분은 명확한 근거법률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 추진기반이 미흡

법무부가 2014년 6월부터 추진 중인 '법질서 실천운동 시범사업'의 경우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범죄예방 계획안의 기초자료인 범죄데이터의 구득과 활용이 불가능하다. '안전마을 사업'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특별법」 등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진행되지만, 사업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법률이 부재한 상황이다.

2014년 5월 건축법의 개정(제53조의2 건축물의 범죄예방)을 통해 건축물의 범죄예방 의무 적용이 시행되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의무화 되었다(조영진 외, 2019, p.1).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2015년도 4월 제정)는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내 유일무이한 근거 조문이자 법적 근거로 작동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CPTED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의 부재를 언급하였으며[5], 2025년 7월 「범죄예방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교흥의원은 "현장에서는 경찰, 지자체, 주민들로 구성된 자율방범대 등이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 같은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법적 장치가 없다"는 것을 발의 이유로 들었다.[6]

[표 1-2] 중앙 부처의 CPTED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개요	시행기관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 범죄에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는 물리적 환경개선 및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등 사회적 환경개선 컨설팅 진행 •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해수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과 협업하여 진행	법무부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 주차장, 원룸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지속 추진 • 인증 대상 확대를 위해 시설유형 및 인증 기준을 검토 • 인증 전·후 범죄발생 및 체감안전 변화 등 효과를 분석하여 언론·SNS 등 홍보 추진	경찰청
범죄예방 진단팀(CPO) 활동	• 범죄취약지역 진단·분석을 전담하는 경찰서 범죄예방 진단팀(CPO) 운영 • 지역·건물의 범죄취약요소 진단·분석 후 사업대상지 선정·방범시설 추천 등에 참여	경찰청
공공디자인 사업	• 지자체, 경찰, 주민 등으로 구성된 통합 대응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공공 디자인 설계 – 밝은 색채와 방범시설물 디자인 외에 순찰 경로 및 주민 방범활동 경로 재설계, 각종 감시용 카메라·가로등 재배치, 자연감시 기능 강화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디자인	문화체육관광부
여성친화도시 사업	• 여성과 남성이 지역정책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돌봄, 안전, 여성의 역량 강화 구현을 목적으로 함 • 지역의 여성 리더를 발굴·양성하여 여성 스스로가 안전한 공간을 만들도록 여성활동공간안전 사업과 마을여성 안전역량증진 사업 추진 중	여성가족부
도시재생사업	• 경제거점 조성 및 지역 특화재생을 통한 도시공간 재창조를 목표로 함 • 쇠퇴지역에 주거·업무·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개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 • 역사·문화 등 고유자산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 및 도시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중심·	국토교통부

5) 월간중앙. (2021). 2021.08.20. (https://www.m-joong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456) (검색일: 2025.2.19.)

6) 유지인. (2025). 경기신문. 2025.07.30.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857531) (검색일: 2025.11.3.)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 추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 어촌지역을 경제거점으로 육성하고, 보건, 복지, 문화, 돌봄 등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사업 •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재해·범죄 안전시설 조성, 마을환경 정비 경관 개선 등이 있음	해양수산부

출처: 관계부처합동. (2023). p.10. [표].
* 이외에도 다수 부처 및 지자체가 CPTED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1980년대 말부터 안전한 사회조성을 위해 각종 법률과 조례를 수립하여 운영 중

영국의 범죄와 무질서 법(Crime and Disorder Act 1998)은 범죄와 무질서를 줄이고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정부의 책임을 명시한 법률로, 지역협력체 구성의 법령상 기초를 제공한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초 편의점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급증하자 1986년 7월 게인즈빌 시에서 야간 시대 편의점 범죄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상위법인 플로리다 주법에 편의점 안전법(Convenience Business Security Act)이 신설되었다. 미국의 템페 시는 조닝과 개발법(Zoning and Development Code)을 통하여 공간 계획 시 건축가, 계획가, 개발자 등이 범죄 발생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디자인 리뷰 과정에서 CPTED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 법무부는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범죄발생시 범인을 체포·교화하는 활동 뿐 아니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유·무형 환경을 조성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포괄적인 범죄예방에 대한 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국가의 법무부가 중심이 되어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미국의 법무부 하부조직인 State and Local Assistance는 OJP(Office of Justice Programs), COPS(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rvices) 등 총 4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지급되는 교부금을 바탕으로 범죄예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표 1-3] 미국 법무부 State and Local Assistance 하위조직

부서	주요 기능
OJP(Office of Justice Programs)	범죄 예방 전략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교부금을 제공하고 관리
COPS(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rvices)	범죄예방 및 감축을 위해 필수적인 자료 수집 및 분석을 담당하고 관련 프로그램에 교부금을 지원
CRS(Community Relations Service)	CRS는 각종 차별문제와 증오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 교육, 컨설팅 서비스와 커뮤니티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사회 관계 개선 서비스를 제공

OVW(Office on Violence Against Women)	OVW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을 줄이고 가정폭력과 스토킹, 성폭력, 이성간 폭력의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법을 집행

출처: 연구진 작성.

호주 법무부의 하부조직인 National Security and Criminal Justice Group의 Criminal Justice Division에서는 범죄 예방 등과 관련한 정책,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며, Proceeds of Crime Act 2002 298조에 명시된 범죄예방을 위한 교부금 사용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표 1-4] 호주 법무부 연방 프로그램

부서	주요 기능
National Community Crime Prevention Programme(NCCPP)	2004년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안전한 커뮤니티 만들기와 범죄 예방을 위해 실시된 프로그램으로 약 4년간 총 6,550만 달러의 교부금 지급
Safer Suburbs Programme	범죄와 반사회적 행동을 예방하기 위하여 CCTV 설치, 거리 조명 설치 등의 커뮤니티 안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교부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
School Security Programme	인종 또는 종교적 편견에 의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 대상을 선정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교부금을 지급
Safer Streets Programme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에 정부의 계획에 따라 5000만 달러를 교부

출처: 연구진 작성.

■ 범죄예방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 환경과 범죄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물리적·비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 대책 수립 필요

여러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나, 기초질서, 준법교육 등을 고려한 종합적·실천적 범죄예방 대안은 미흡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의 범죄예방환경설계는 건축 관련 법규 중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관한 법령, 조례의 재개정 등 제도 개선과 공간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법무부의 범죄환경조성을 위한 안전마을 사업은 재난·재해·범죄 등의 각종 마을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기존에 추진된 사업 대부분은 노후한 주거지 개선사업 위주로 진행되었으나, 범죄발생 비율을 살펴보면 건축물 용도와 장소, 시간에 따라 발생율과 범죄유형이 상이하다. 예를 들어, 장소별 범죄현황 중 건축물의 경우 공동주택에서는 살인, 숙박업소에서는 강간·강제추행, 단독주택에서는 절도 발생률이 가장 높다.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 사업 대부분은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및 사업 추진주체의 전문성 부재, 한정된 예산 등으로 인해 획일적이고 일회적인 사업위주로 진행되고 안정적인 추진기반이 미흡하다. 따라서, 법무부를 중심으로 기초 법질서를 확립하고, 범죄취약지역의 물리적·사회적 개선을 위한 실천적·종합적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마련과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CPTED 확산을 통해 주거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하고, 범죄와 범죄두려움 감소 및 범죄예방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7]

범죄예방디자인 인증 주택이나 건축물의 경우 그렇지 않은 주택에 비해 범죄피해가 26~7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에 활용되는 범죄예방 시설의 효과성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검증되었다.[8]

또한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느끼는 지역안전도는 평균 45.9점에서 평균 67.3점으로 개선되어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범죄두려움이 약 4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9]

- 네덜란드 '경찰안전주택' 제도 시행으로 주거침입 절도 28% ⇓ ('97년 vs '00년)
- 日, 범죄안전감 조사 : 방범우량맨션 거주자 안심도 74.5% 〉 일반맨션 26.3%

- 골목길에 조명을 설치했을 경우, 야간에 발생하는 연간 5대 범죄의 약 16%, 폭력범죄의 약 17%가 감소
- 다세대 · 원룸 등 공동주택 건물의 1층 현관에 공동현관 잠금장치(도어락)가 설치된 경우, 그렇지 않은 건물과 비교하여 범죄가 약 43% 감소하는 효과

■ 이와 같은 여건을 고려하여 이전에도 여러 차례 범죄예방환경 조성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무산됨

2016년에 「범죄예방 기본법안」 및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제정이 추진되었으나 법안의 실행 주체인 검찰 중심의 법무부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무산되었으며, 2020년에 범죄예방 관련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전담 센터의 역할 등을 담은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제안되었으나 경찰청, 법무부 등 실행 주무 부처 간의 협의 등의 문제로 추진되지 못했다. 2021년에 「지역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으며, 2025년에 다시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제안되었다.

과거의 법안은 별도의 체계적인 연구 없이 건축공간연구원과 법무부, 경찰청을 중심으로 법안의 항목만을 도출하여 제정 근거가 미약한 한계가 있었다.

7) 범죄과학연구소(ICS), 방범인증제 국내 도입 모형 개발 및 법제화(2013) 연구자료 참조
8) 조영진 외(2019), 범죄예방 환경조성 시설·기법의 효과성 분석 연구자료 참조
9) 조영진 외(2019),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의 효과성 분석 연구 연구자료 참조

■ 따라서 대내외 적인 여건의 변화, CPTED 사업의 조직화, 지속적인 운영·관리, 체계적인 실행조직 구성, 안정적인 전문적·재정적 지원 확보 등을 위해 범죄예방 환경조성 지원법(안)의 제정 필요

2022년부터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이 법무부 중심으로 재편되고 법무부의 검찰과 경찰의 역할이 축소되었다. 현재 범죄예방환경조성 관련 사업들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조직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법질서를 확립하며, 관련 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정책적·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예방환경조성을 위한 근거, 지원기구, 법적 수단 등을 명확화한다.

둘째, 범죄예방환경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가칭)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기존 제안 법령과 관련 법령간의 관계를 정립한다.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 관련 현황 분석

범죄예방환경 조성의 개념을 검토하고, 범죄환경 조성의 목표, 범위, 항목, 수단, 주체 등에 대한 논의를 종합한다. 범죄예방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제정된 법령 및 법령의 효과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 범죄예방환경 조성 관련 법령 및 추진경과 분석

2025년 개정이 예정된 '범죄예방건축기준고시'와 대통령훈령 제448호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규정」 및 훈령 제6조에 의거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을 분석하고, 2015년부터 최근까지 관련 법령 제정 추진 경과를 살펴본다.

■ 범죄예방환경 조성 관련 법제정(안) 마련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가칭)「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의 개선방안 및 실행방안을 제안하고, 전문가 FGI를 통하여 법안 체계화의 방향, 내용, 보완사항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최종적으로 (가칭)「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안)」을 제안하고 법령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입법례를 함께 제시한다.

2) 연구 방법

■ 범죄예방 환경개선 관련 문헌 조사 및 선행연구 고찰

CPTED 개념 및 적용 과정에서의 특성을 고찰하고, 특히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관련하여 추진되었던 법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학계의 관점에서 범죄예방 관련 법령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다.

■ 범죄예방환경 조성 관련 법령 및 추진경과 분석

범죄예방환경 조성과 관련되어 추진되었던 여러 법령들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 기존 법령을 보완한 새로운 제정안 마련을 위한 관련 분야 전문가 FGI

건축사, 관련 분야 전문가(범죄학, 건축학, 도시학 등), 실무자(공무원, CPO 등) 등 관련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법안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필요사항 및 우선순위 도출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법령 대안 마련 및 수정 과정에 반영한다.

■ 세미나 및 자문회의

공공·학계·실무분야 전문가 풀을 이용한 세미나 및 워크숍을 추진한다. 특히 본 법령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찰청,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의 정기적 의견수렴을 통해 연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표 1-5] 주요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선행연구	연구방법	세부내용
주요 선행 연구	CPTED 제도화, 법제화 방안 연구	1	• (제목)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 • (저자) 신의기 외, 2008 • (목적) 국내외 CPTED 전략의 실태와 제도에 대한 조사결과 소개·분석	• 문헌연구 • 사례분석 • 설문조사 • 효과성 분석 • GIS 분석	• 기관 간 협력에 대한 법제화 필요 • 중앙부처 내 특정 주무기관이 정해져 사업의 중심이 되고 관련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협력의 의무화되는 형태 필요 •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주민 참여 유도 필요 • 한국형 지침을 개발하고 인증제도 개발 및 근거 마련 필요
		2	• (제목) 한국의 CPTED 도입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 (저자) 박헌수, 2015 • (목적) CPTED 개념을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법적 제도화 중심으로 고찰	• 문헌연구 • 사례분석	•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함 • 법률의 제정이 정부 입법 형태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되어야 함 • 인증제, 교육 프로그램, 표준화 제도 등 도입 필요 • 국민적·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
		3	• (제목) 환경설계(CPTED)를 활용한 도시범죄 예방에 관한 연구 • (저자) 양진석, 2010 • (목적) 도시범죄의 예방을 위한 CPTED 활용방안 제시	• 문헌연구 • 사례분석 • GIS 분석 • 공간회귀분석 • 전문가 설문 • (AHP 분석)	•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법제화 추진이 바람직하나,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 국토해양부가 중심이 되고 여타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적극적 협력이 의무화되는 형태가 바람직 • 인증제도, 주민참여 필요 • 도시의 물리적 요소로 인해 범죄발생의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음 확인
		4	• (제목) CPTED 제도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 (저자) 강용길·박민영, 2014 • (목적) CPTED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필요성과 입법추진방식을 검토	• 문헌연구 • 사례분석	• CPTED의 이중적 특성에 기인하여 국가와 자치단체 모두 법률형태의 근거 필요 • 국가법률의 입법방식은 기존 건설법제의 개정보다 독립된 법률 제정이 바람직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선행연구	연구방법	세부내용
	CPTED 법안 연구	5	• (제목) 광역지방자치단체의 CPTED 관련 조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저자) 이수진, 2022 • (목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CPTED 관련 조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 제시	• 문헌연구 • 사례분석 • CPTED 관련 조례 분석 • 법률안 분석	• 경찰과의 협력체계, 범죄취약가구 지원, 사업추진협의체 구성, 주관부서 등이 명시되지 않은 조례가 있음 • 5년 이상 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 있음
		6	• (제목) 한국의 CPTED 관련 법령·조례 현황과 발전 방향 • (저자) 장동훈. 2023 • (목적) CPTED 관련 법률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해결방안 제시	• 문헌연구 • 국내 및 해외 조례 분석	• 지자체의 조례 조항에 경찰과의 협업 의무화 조항 미비, 물리적 환경 개선 중심으로 주민 치안 공동체 관련 내용 미흡, 범죄예방 관련 취약가구 지원 내용 및 대책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음 • 범죄예방 기본법 제정, 경찰과의 협력체계 강화, 주민치안공동체 활동 강화, 범죄예방 관련 지원의 강화 및 다양화 필요
		7	• (제목) 설문조사를 통한 법제도 및 정책측면의 효과적인 CPTED 적용 방안 연구 • (저자) 김고원·강석진, 2019 • (목적) 효과적인 CPTED 적용 방안 모색	• 문헌연구 • 설문조사	• 실무자와 공무원이 도시계획과 관련된 법안에 포함된 CPTED 관련 조항은 잘 알지 못함 • 계획 초기 단계에서 CPTED 요소를 확인하고 심의, 평가할 수 있는 기존 및 지원방안 필요 • CPTED 심의 및 자문에 대한 필요성은 매우 높지만 만족도는 낮음
		8	• (제목) CPTED의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 영국, 호주에 대한 비교법제 연구를 중심으로 • (저자) 최용성·곽대훈, 2020 • (목적) 해외 입법 사례를 살펴보고 CPTED 기법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모색	• 문헌연구 • 사례분석	• 건축법상의 선언적 규정을 보완·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 필요 • 인증제 도입 방안 검토 • 관련 정부부처 간 협업 및 역할분담 필요 • 지역별 범죄위험평가 제도 필요
	건축법,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관련 연구	9	• (제목) 건축물의 범죄예방 관련 법령 개선방안 연구 • (저자) 조영진·손동필, 2016 • (목적)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고시 등의 일련의 범죄예방 관련 체계 정립 및 제도 개선(안) 마련	• 실무자 및 전문가 자문 • 현행 제도 민원자료 분석 • 국내외 범죄예방 관련 법령 분석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의 단계별 개정 추진 • 권장적용에서 의무적용으로 범죄예방환경설계 도입확대
		10	• (제목) 범죄예방 건축기준 개선방안 연구 • (저자) 조영진 외, 2019 • (목적) 사회적 여건변화를 고려한 「범죄예방 건축기준」 개선방안 제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개정에 따른 경제성 분석,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법체계 정립방안 제안	• 대국민 의견조사(공모전) • 문헌연구 • 전문가 조사 • 경제성 분석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의무 대상 건축물 확대 등 개정안 제시 • 범죄예방 정책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근거법령 필요 • 범죄예방 관련 정책을 통합할 수 있는 범죄예방 관련 기본법 성격의 통합 법령 필요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선행연구	연구방법	세부내용
본 연구		• (제목)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에 관한 법령 정비 방안 • (연구목적) 범죄예방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 지원기구, 법적 수단 등을 명확화하고,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안)」 마련 및 체계화를 위한 기존 제안 법령 및 관련 법령 간의 관계 정립 및 정비방안 제시	•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 고찰 • 관련 법령 및 추진경과 분석 • 전문가 FGI • 세미나 및 자문회의 • 관계기관 의견수렴	• CPTED 개념 및 적용 과정에서의 특성을 고찰하고, 범죄예방 관련 법령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현재 CPTED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파악 • 범죄예방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되었던 법령을 분석하여 중요 내용 및 시사점 도출 • 건축사, 범죄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실무자 등 전문가 FGI를 통하여 법안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필요사항, 우선순위 도출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 • 공공·학계·실무분야 전문가 세미나 및 워크숍을 추진하고 경찰청, 법무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안)」 법령 체계화 방안 제안

출처 : 해당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재작성.

Chapter. 2

제2장

범죄예방 환경 조성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 검토

1. 범죄예방 환경 조성 관련 문헌 검토
2. 범죄예방 환경 조성 관련 선행연구 검토

1. 범죄예방 환경 조성 관련 문헌 검토

1)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의 개념

미국 범죄예방연구소(NCPI)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절한 디자인과 주어진 환경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범죄발생수준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정의하였다.[10] CPTED의 핵심은 범죄행위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줄이는 것이 인간의 행태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범죄수준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으로, 이때의 환경은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행동에 대한 인식, 사회과학, 법집행, 공동체조직 등 포괄적인 개념을 포함한다(Crowe. 2000).[11]

경기개발 연구원(2007)은 CPTED를 '범죄예방에 있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보다 범행이 일어나는 '장소' 또는 '공간'이라는 물리적인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정의하였고[12], 이승희(2020)는 CPTED를 '도시공간과 건축물의 설계 시에 범죄위험과 범죄불안감을 고려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요소를 적용하는 것으로, 적절한 환경설계를 통하여 환경의 방범성을 높임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이들 정의를 종합하자면 CPTED는 '환경'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물리적인 환경이 중심이 되지만 행동에 대한 인식, 공동체조직 등 사회적 환경도 포함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 CPTED 이론

① 1세대 CPTED

Paul Cozens와 Terence Love가 정리한 1세대 CPTED의 디자인 원칙은 영역성 강화

10) 신의기 외. (2008). p.55. 재인용.
11) 신의기 외. (2008). p.56. 재인용.
12) 신의기 외. (2008). P.57. 재인용.

(Territorial reinforcement), 자연적 감시(Natural Serveillance), 유지와 관리(Image/space management), 접근통제(Access control), 명료성(Legitimate), 활용성 증대(Activity support), 대상의 공고화(Target hardening), 환경 영향(Geographical juxtaposition (surrounding environment))의 총 7가지로 구성된다. 이 중 주된 설계 원칙은 영역성 강화, 접근 통제, 자연적 감시, 활용성 증대(활동의 활성화), 유지와 관리이며[13], 경찰청의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 및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도 이 원칙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1세대 CPTED 기법의 한계로는 총 다섯 가지가 논의되는데, 첫째, 비합리적인 범죄자나 격정범 등 비이성적인 범죄에 취약하다는 것, 둘째, 지역의 사회경제적·인구사회적 상황에 따라 효용이 달라진다는 것, 셋째, 물리적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범죄전이효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넷째, CPTED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지역사회 역량이 필요하므로, 역량이 확보되지 못한 곳에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다섯째, CPTED가 충분한 지역사회의 참여 없이 과도하게 목표 강화 전략으로 치우칠 경우, 주민이 집안에 스스로를 가두는 요새심리를 야기하여 CPTED의 핵심 전략인 자연적 감시, 활동 활성화 등과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등이다[14].

[표 2-1] 경찰청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의 1세대 CPTED 디자인 원칙

디자인 원칙	정의	설명
자연적 감시	시야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건물이나 조경 등의 물리적 특성을 배치하는 것	- 지역 주민들이 이웃과 낯선 사람들의 행동을 모두 관찰하고 범죄행위를 발견할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역을 설계하는 것 - 대부분의 사람은 주변을 볼 수 있거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고 느낄 때 보다 안전감을 느낌
자연적 접근통제	입·출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사람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	- 범죄자가 범죄목표물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적발될 위험을 증가시켜 범죄의 기회를 감소시키며, 도로, 보행로, 조경, 조명, 건물의 입·출구 등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일정한 공간으로 인도하고 사적 지역으로 접근하는 것을 포기하게 함 - 자연적 접근통제의 강화를 위해 자물쇠, 알람 시스템, 출입통제장치 등 물리적·기계적 수단 사용
영역성	조경, 조명, 표지, 보도 형태, 울타리 등을 이용하여 일정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	- 어떤 지역에 대한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당 지역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 - 사적 공간이 분명해질수록 사용자는 영역에 대한 통제감이 커지며 통제가 강화될수록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감소
활동 활성화	일정 지역에 대한 지역주민 등의 사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공원을 배치하거나 다양한 상가를 유치하는 것	- 주민, 상가, 고객 등 정당한 이용자가 공공 공간을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배치하는 것 - 지역 주민 등에 의해 공공 공간의 사용이 활발해질수록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 감소 - 활동 활성화를 위해 야간시간대 등 취약시간대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함

출처: *경찰청. (2013). 제3조.

13) 김현미. (2024). p.11.

14) 김연수. (2013). p.29.

② 2세대 CPTED

2세대 CPTED는 1세대 CPTED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시킨 것으로, "물리적 디자인을 넘어 사회적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참여로 커뮤니티의 자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범죄예방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개념"[15]이다.

Saville과 Cleveland(2008)이 제시한 2세대 CPTED의 주요 전략은 사회적 응집력(Social cohesion), 연계성(Connectivity), 지역사회 문화(Community culture), 지역사회 역량(Threshold esteem)[16]이다.

[표 2-2] 2세대 CPTED 전략의 특징

전략	특징
사회적 응집	- 지역사회 내 이벤트와 조직참여 - 자조적인 지역사회 문제해결 노력 - 긍정적 방향의 지역사회 내 갈등 해소 - 지역사회 내 우호적 네트워크 확대 - 우호적 네트워크 간 긍정적 관계 확산
연계성	- 외부기관과 네트워크 - 결정권자와 접근통로 - 외부집단, 조직 혹은 타 지역사회와의 공식적 활동 - 외부지역과 적절한 연계교통수단
문화	- 성평등, 약자 평등전략 - 대 여성폭력 프로그램 같은 성별 프로그램 - 지역사회 내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 확대 - 특별한 축제, 행사 확대 - 지역 전통과 문화 활동 확대 - 자부심 혹은 주민이나 지역 내 공간이용자 특성 반영
지역사회 역량	- 인구밀도, 토지이용밀도, 최대한의 다양성 - 균형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 - 최소한의 인구밀집과 최대한의 공간사용 - 사회적 자원 및 경제자원접근 활성화 - 한계치 이하의 범죄발생 요인

출처: 김연수. (2013). p.30. [표 1].

15) 김현미. (2024). p.17.

16) 김연수. (2013). p.30.

2. 범죄예방 환경 조성 관련 선행연구 검토

1) CPTED 제도화, 법제화 방안 연구

①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신의기 외, 2008)

신의기(2008)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전략의 국내·외국의 실태, 제도에 대한 조사결과를 소개·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에서 CPTED를 제도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이론적 접근, 국내 실태 분석, CPTED 효과성 분석, 해외 조례 및 지침 분석, 교육제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책문제를 정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론적 접근으로는 범죄학 이론 및 관련 이론을 분석하여 CPTED의 개념, 역사, 전략 등을 살펴보고 영국, 네덜란드,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외국 선행사례를 조사 및 분석하였으며, 국내 실태는 국내의 범죄통계 분석, 경찰 및 구청 공무원 설문조사, 신도시 개발사업 및 서울시 뉴타운사업의 CPTED 적용 실태 등을 분석하였다. CPTED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강·절도범 수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GIS를 이용한 구도시와 신도시 간 범죄발생패턴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해외사례로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외국의 주요 조례와 지침을, 마지막으로 국내외 교육제도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CPTED 제도화의 정책문제로 유간기관 간 협력과 주무기관 선정, CPTED 인식의 확대와 주민참여, 한국형 지침의 개발과 법제화를 도출하였고, 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표 2-3] CPTED 정책문제 및 대안(신의기 외, 2008)

정책문제	구분	내용	대안
유간기관 간 협력과 주무기관 선정	유간기관 간 협력증진	경찰과 기초자치단체 간 협조관계는 거의 없는 낙제 수준	영국에서 '범죄와 무질서법(Crime and Disorder Act 1998)'을 법제화시킨 것처럼 경찰과 기초자치단체 등 기관 간 협력에 대한 법제화 필요
	주무기관의 선정	CPTED 관련사항을 기획, 결정, 집행, 평가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필요	• 중앙부처 내 특정 주무기관이 정해져 사업의 중심이 되고 관련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협력이 의무화되는 형태가 이루어져야 함 • 외곽지원조직으로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과 같은 준정부기

			관이 범죄영향평가 등의 실사작업을 해당지역 경찰서 내 CPTED 담당 경찰관 및 기초자치단체 공무원과 함께 수행
	CPTED의 중요성 인지 확대	CPTED의 중요성 인식 및 전문지식의 확보가 필요	• CPTED 가이드라인 배포, CPTED 교육 실시, 효과 홍보 등이 필요 • 우선적으로 정확한 범죄 피해 조사와 CPTED 적용 효과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CPTED 인식의 확대와 주민참여	CPTED 수요 관리	기존 주거지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 고려 필요	• 적용이 용이한 부문을 선택하여 그 효과성을 입증 • 궁극적으로는 CPTED 적용이 어렵지만 잠재적 수요는 큰 부문으로 자원을 이동
		큰돈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효과적인 기법은 초기에 전면적 적용	CPTED의 기본원리인 유지관리의 일환인 '집 주변 깨끗하게 청소'와 같이 실질적이면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는 기법부터 일반 시민에게 가르쳐주면서 적용범위 확대
		민간 개발에 제약, CCTV는 인권 침해적 요소를 감수해야 하는 부분 등이 있음	CPTED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CPTED의 필요성을 느끼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함
	주민참여	환경의 물리적인 변화만으로 범죄 및 범죄공포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접근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음	•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유대와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통하여 비공식적인 범죄통제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 • 도시 행정에의 주민 참여도 제고, 청소년 활동 장려, 도시민들의 모임 공간 확대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상호작용 활성화
	교육제도의 확대와 심화	경찰 및 구청 공무원 교육 필요성	• 기본업무교육 프로그램 내 CPTED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 • CPTED 교육 매뉴얼 개발, 전문강사 양성, 교육콘텐츠와 교육용 기자재의 연구개발, 인증체계 마련을 통한 교육이수자 활용 모형의 개발 등
		교육 대상 확대	범죄현장을 조사하는 수사관, 일반인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식의 저변 확대 도모
		관련 부처 상호 이해 증진	상호 의사소통과 업무 협력이 필요한 관련 부처 및 기관들 구성원이 합동 교육을 받거나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함
		홍보 및 PR	대한건축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행정학회, 건축사회와 협회 및 연구소 차원에서 홍보 및 PR이 이루어져야 함
한국형 지침의 개발과 법제화	한국형 지침의 마련	CPTED 적용에 우리 나름의 전략과 접근방식 필요	CPTED 기본 원리는 존중하되, 집행전략은 해당 지역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차별화
	CPTED인증제도 개발 및 관련 법·제도적 근거 마련	CPTED 인증제도를 통해 방범에 취약한 제품을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	• 경찰이나 관련 기관들이 CPTED나 범죄예방 관련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공인 제품인증기관에서 1차 인증, 인증기관이나 공인단체의 2차 시험을 통과한 제품에 한하여 인증서를 교부하는 CPTED 인증제도 개발 • CPTED 국내 표준 마련, 표준 정립 전에는 국제 표준, 유럽 표준 등 해외 표준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CPTED 확산	• CPTED 도입 초기에 법·제도적 근거를 고려하여 신속하게 확산 • CPTED의 원칙을 지구계획에 포함시키거나 개발 정책 수립 시 고려하도록 규정 • 법적 근거 마련 후 이를 근거로 지방조례 제정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에 CPTED 내용을 포함, 토지이용계획 및 용도지역 규정과 조경설치기준, 국토해양부의 건축설계지침에 CPTED를 반영하여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효과적인 집행전략의 모색	신도시, 신규건축물에 적용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	•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과 건축계획, 설계 단계에 CPTED 전문가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 마련 • 법 개정을 통해서도 이를 실현할 수 있음
		기존 지역은 비용 부담의 문제가 있음	경찰이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예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받고, 일부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기계적 또는 인위적 CPTED 기법 적용
		영역성 확보의 정도 조정 필요	범죄 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적 이익과 폐쇄적 설계로 인한 군사요새적 이미지 및 고립화의 부작용 사이에 적절한 조정 필요

출처: 신의기 외. (2008). pp.467-479의 내용을 정리하여 연구진 작성.

② 한국의 CPTED 도입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박헌수, 2015)

박헌수(2015)는 한국의 중앙정부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CPTED 개념을 도입하고 정책적으로 적용한 과정을 해외사례와 비교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으로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법적 제도화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도시 안전을 위한 바람직한 CPTED 도입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CPTED 도입의 의의 등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미국, 영국, 일본, 유럽 등 외국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CPTED 도입 현황과 한국의 CPTED 도입과정,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내 적용 현황 등을 분석하여 해외 사례와 국내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정책적 한계와 바람직한 정책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표 2-4] 우리나라 CPTED 문제점 및 정책 발전 방안(박헌수, 2015)

구분	내용	
문제점	중앙정부의 통합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CPTED를 추진하기 위한 별도기구, 정부차원의 인증센터가 없음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효과측정 부재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선언적이고 개념적인 수준에서 지침을 작성하고 조례를 제정 • 실효성을 가시화하거나 측정하지 못함
	강제성 없이 권장, 권유 수준으로 CPTED 정책 실행	• 대부분의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권장, 권유 수준으로 CPTED 정책 실행 • 건축법 등과 같이 강제성을 가질 때 더 큰 효과가 있음
	관련 주체들의 협업 필요	• 자치단체나 경찰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면 선언적인 조례제정으로 전시행정 수준에 머무르는 결과를 초래 • 가시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관련 공공기관, 전문가, 민간업자, 개인 등이 협업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홍보 부족	CPTED 관련 법규를 제정한 광역자치단체 4곳, 기초자치단체 4곳에 불과
	기타	• 단일 법령에 CPTED 정책을 모두 포함시킬 수 없음 • 관련업계의 경제적 비용 • 사회적 동의
정책 발전	국민안전처 산하에 가칭 '범죄예방본부' 신설	•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 산하 생활안전정책관실에서 기본적 방향을 제시하고, 범정부적으로 범죄예방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별도 기구로 가칭 범죄예방본부 신설

방안		• 범죄예방본부는 범죄예방 제도 정비 및 신설, 공공 업무, 범죄예방 관련 교육, 범죄예방 관련 연구 지원사업 등 범죄예방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 • 산하 기구로 범죄예방 정책실, 범죄예방 지원실, 범죄예방 교육실, 연구센터 등을 두어 중앙정부 차원의 콘트롤 타워 역할
	'CPTED Zone' 도입 및 확산	• 일정 지역을 CPTED Zone으로 선정하여 누구나 해당지역이 범죄예방 대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함 • 건축물 등 각종 시설의 신설, 증·개축 시 범죄예방 대책을 강구하도록 한 경우에만 시설 허가 등의 제재 • CPTED Zone 광고, 표지판 등으로 표식
	CPTED 교육 확산	• 초·중·고교 등 각급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범죄예방 교육 실시하면서 CPTED 관련 교육 포함 • 도시재생·건축물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경찰, 소방공무원, 건축·건설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CPTED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특히 건축·건설 사업자들은 교육 미수료 시 벌금, 면허 제재 등 강제적 정책 도입 필요
	CPTED 인증제, 자격증 제도 시행	• 국가적 차원에서 인증제 시행 • 가칭 범죄예방본부를 중심으로 인증센터를 운영 • 건축·건설 관련 인허가 시 CPTED 자격증을 필수로 요구할 수 있도록 CPTED 자격증 제도 시행 • 인증 유효성 검증, 자격증 보수교육 등 시행
	CPTED 관련 상설협의기구 설치	• 가칭 범죄예방본부를 중심으로 관련 중앙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학계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상설협의기구 설치 • CPTED 관련 정책의 실효성 검증 등
	CPTED 전문가 양성	• 전문적으로 CPTED 정책을 입안하고 연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여 가칭 범죄예방본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에 배치 • 교육기관에 CPTED 관련 연구기관 설치

출처: 박헌수. (2015). pp.96-98, pp.120-123의 내용을 정리하여 연구진 작성.

③ 환경설계(CPTED)를 활용한 도시범죄 예방에 관한 연구(양진석, 2010)

양진석(2010)은 도시범죄 예방의 사회적 필요성과 중요성에 기반을 두고 도시범죄의 예방을 위한 CPTED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연구의 세부목표는 도시범죄 발생요인을 분석하고, CPTED의 중요요소를 도출하고 계획방향을 제시하며, CPTED의 제도화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선행연구 검토, 범죄 이론분석 등 문헌연구, CPTED의 영국, 미국, 일본 및 유럽국가 등 해외사례, 국내사례 분석, 기초통계 및 GIS 현황도 작성을 통한 국내 범죄발생 현황 분석, 공간계량경제모형 분석을 통한 범죄발생 영향요인분석, 전문가 설문을 통한 중요도 분석(AHP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CPTED 제도화 방안의 기본 원칙으로 절차적 합리성과 민주성, 수단의 효과성, 과학적 관리를, 정책적 과제로는 조례 및 지침의 법제화, 추진주체 선정, CPTED 인증제도 도입, 주민참여 제고를 제시하였다.

[표 2-5] CPTED 제도화 방안(양진석, 2010)

구분	내용		
CPTED 제도화의 기본 원칙	절차적 합리성과 민주성	- CPTED 계획과정은 범죄예방 목표치 설정, 세부계획 수립, 투자우선순위 결정 및 자원 배분, 모니터링(계획의 실현 여부 평가)의 네 단계로 구분	
		범죄예방 목표치 설정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과정상의 민주성이 중요하므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집단, 시민단체, 시민 등의 참여주체가 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목표치 설정. 목표치는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여 계획목표의 명확화, 구체성 제고
		세부계획 수립	CPTED 계획요소를 물리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로 구분함. 계획내용 간에 정합성 확보 필요
		투자우선순위 결정 및 자원 배분	참여주체간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 시기별, 지역별 우선 항목 검토
		모니터링	계획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문제점을 진단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수단의 효과성	-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지표 선정 및 모니터링 자료 DB 구축 - 참여주체간의 협력체계 구축: 유관기관 간, 참여주체 간 유기적 협력을 명문화하는 법제화 우선적 검토. 경찰과 관련된 법률에 포함시키는 것이 효과적 대안임	
	과학적 관리	- CPTED 계획내용별로 범죄예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정량적 분석 및 계획수립 과정에 반영 - 범죄 관련 자료 구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구축된 자료에 대한 제한적인 수준에서의 공개 고려	
정책적 과제와 대안 모색	조례 및 지침의 법제화	- CPTED의 법제화는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례 및 지침의 개발 또한 중앙정부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최소한 지방자치단체에 가이드라인을 부여해야 함 - CPTED 집행전략은 해당지역의 상황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차별화된 전략 필요 - 조례 및 지침의 개발 시 CPTED의 목적, CPTED 요소별 구체적 계획방향, 계획 및 관리를 주관하는 기관과 기관간의 협력체계, CPTED 인증제 도입, 주민참여 방안, 모니터링 시스템, 교육프로그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CPTED 요소별 계획방향은 어떤 법률에 포함시킬지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며, 특별법 등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추진주체 선정	- 전체적인 틀은 중앙부처 내 국토해양부가 중심에 있되, 여타의 관련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협력이 의무화되는 형태가 바람직 -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연구원, 시민단체, 시민 등의 적극적 참여 독려할 수 있는 배려도 필수적	
	CPTED 인증제도 도입	- 국내 표준이 정립되기 전까지는 인정받고 있는 국제적인 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제 마련 - CPTED 인증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하되 국토해양부에서 관장 - 기술적인 문제는 한국건자재시험연구소, 방재시험연구원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유지	
	주민참여 제고	- 도시행정을 통해 주민 참여도 제고, 청소년 활동 장려, 도시민들의 모임 공간 확대 등 필요 - 도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내에서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상호작용 활성화 -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CPTED 교육 강화	

출처: 양진석. (2010). pp.133-143의 내용을 정리하여 연구진 작성.

④ CPTED 제도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김용길·박민영, 2014)

김용길·박민영(2014)은 CPTED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CPTED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필요성과 입법추진방식을 검토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선행연구 등의 문헌연구와 우리나라와 외국의 CPTED 관련 법률 운영현황

분석 등을 수행하였으며, 법률형태와 내용, 입법방식, 입법을 위한 절차상의 고려, 정책적 과제와 대안 모색 등의 법률 추진방안을 제안하였다.

⑤ CPTED 법률 추진방안

[표 2-6] CPTED 법률 추진방안(김용길·박민영, 2014)

구분	내용		
법률형태와 내용에 대한 검토	CPTED 사무의 성격	• CPTED 사무는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이원적 성격을 지님 • 범죄예방전략의 거시적 접근에서는 국가사무로써 전국적 통일성과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적 지원방안 필요 • 미시적 접근에서는 자치사무로써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방식과 투입전략,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 필요	
		국가사무	• 전국적인 통일과 조율이 필요한 부분 • 건축물에 대한 설계 지침의 운영, CPTED 전문가 인증제도의 공인 자격증 제도 운영, 적용대상지정에 대한 일반적 기준 및 절차, 표준화된 평사시스템, 국토개발 및 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등
		자치사무	• 자치단체의 사무 • 취약지역 및 공간에 대한 지역개발, 도시계획 사업, 주거생활환경 개선 등 • 범죄유발요소는 지역적 특성에 기반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다양성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지역별로 차별화된 범죄예방 전략 필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형태	국가사무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국가법률 형태가 바람직 • CPTED 사무의 전국적인 통일과 추진방식,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 다기관 협력의무 부과, CPTED 전문가의 양성 및 활동 등의 제도화, 법률적 권한과 의무, 주거 자유 등의 제한, 사생활권의 침해 등 기본권의 제한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포함 • 자치단체의 추진사항에 대해 사무를 구분하고 이를 위임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법률적 정당성 확보
		자치사무	• 조례형태 제정이 바람직 • 지역 내 사업추진대상의 선정, 절차, 투입전략 협의체 구성, 유지관리방안 등 자치단체의 행정 및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항,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공동체 활성화 등의 지원방안 등 포함
입법방식에 대한 검토	입법방식	• 국가 법률로서 CPTED 단일 법률의 제정이 가장 적합한 입법방식 •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사업주체, 위원회, 협의 및 시행방식, 관리 운영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법안 작성	
	책임기관	• CPTED 계획, 운영, 평가 등 책임기관은 안전행정부 또는 국토교통부가 적합	
CPTED 입법을 위한 절차상의 고려	유도적 국가역할	• 정보의 제공과 설득을 통한 유도 필요 • CPTED 도입과 관련한 행정절차와 입법절차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려는 노력 필수적	
	공공부문에의 민간참여, 파트너십에 의한 뉴 거버넌스	• 법률을 통해 추진되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가지더라도 시민의 참여가 절차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 영미의 입법 사례에서처럼 다기관적·다기능적 법정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상호 정보교환협정 등을 통해 유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들이 함께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협의를 나누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함	

출처: 양진석. (2010). pp.18-23의 내용을 정리하여 연구진 작성.

2) CPTED 법안(조례) 연구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CPTED 관련 조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수진, 2022)

이수진(2022)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CPTED 관련 조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문헌연구, 선행연구, CPTED 관련 조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지역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CPTED 관련 조례 분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범죄예방', '디자인', '환경설계' 총 3가지 키워드 검색 결과를 토대로 정리한 조례 현황을 2019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실시했던 'CPTED 사업 우수지역 평가' 지표를 참고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문제점으로 경찰과의 협력체계 약화, 범죄취약가구 대상 지원 미흡, 사업추진협의체 부재를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표 2-7] CPTED 조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수진, 2022)

문제점	개선방안	
경찰과의 협력체계 약화	경찰과의 협력체계 강화	CPTED 관련 조례 내용에 '범죄예방진단' 조항을 추가
범죄취약가구 대상 지원 미흡	방범시설 설치 지원	• 범죄취약가구를 위한 '방범시설 설치 지원' 조항을 조례에 포함 • 범죄취약가구를 평가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 지표 마련
	조례 주관부서 명시	해당 조례의 주관 부서 명시
사업추진협의체 부재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구성	• 경찰, 관계기관 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치안 협의체 설치 의무화 내용 조례에 포함 • 지역치안협의체의 결정을 반영하여 범죄예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조례에 포함 • 지역치안협의체의 명칭을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로 변경 •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는 경찰서에서 운영되는 경찰서, 지자체, 지역주민의 협의체로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조례 내용에 반영하여 개정

출처: 이수진. (2022). pp.55-68의 내용을 정리하여 연구진 작성.

② 한국의 CPTED 관련 법령·조례 현황과 발전 방안(장동훈, 2023)

장동훈(2023)은 국내 CPTED 정책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률과 우리나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관련 조례의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외국의 사례 및 관련 법규들을 참고하여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 문헌연구와 국내 조례 및 해외 법제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문제점으로 경

찰과의 협업 의무화 필요, 주민치안 공동체 관련 내용 미흡, 범죄예방 관련 지원에 대한 내용과 대책이 미흡한 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으로 범죄예방 기본법의 제정, 경찰과의 협력체계 강화, 주민치안공동체 활동 강화, 범죄예방 관련 지원 강화 및 다양화를 제안하였다.

[표 2-8] CPTED 조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장동훈, 2023)

구분	내용	
문제점	경찰과의 협업 의무화 필요	조례 조항에 경찰과의 협업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
	주민치안 공동체 관련 내용 미흡	지역 주민이 스스로 방위 활동을 하기 위해 조직한 자율방범대 조직은 민간자생봉사단체로 활동 법적 근거가 없어 별도의 허가 신청을 요하지 않음
	범죄예방 관련 지원에 대한 내용과 대책이 미흡	• 방범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내용 포함 필요 •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필요
개선방안	범죄예방 기본법의 제정	• 중앙정부는 CPTED 법 정책 관련 큰 테두리의 입법을 하고, 지방 정부는 이 테두리 안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 마련 • 근거 법률 제정을 통해 정부에서 지자체에 범죄예방 정책을 위한 예산 지원 가능 • 광역지자체의 조례에 근거 법률에 어긋나는 내용에 대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중앙정부의 통제 가능
	경찰과의 협력체계 강화	• CPTED 관련 법규나 조례에 지자체와 경찰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근거 규정 마련 필요 •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자체의 범죄예방 관련 시책에 경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법 개정 필요
	주민치안공동체 활동 강화 (2세대 CPTED 활성화)	• 지역 주민, CPTED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주민치안공동체' 조직의 구성과 체계적인 활동을 위한 근거 법령·조례 제정 필요 • 주민치안 공동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CPTED 교육, CPTED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필요
	범죄예방 관련 지원 강화 및 다양화	• 범죄취약가구에 대한 범죄예방시설 설치 지원이 확대·지속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필요 •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필요 • CPTED 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 의무화 필요

출처: 장동훈. (2023). pp.46-48, pp.60-68의 내용을 정리하여 연구진 작성.

③ 설문조사를 통한 법제도 및 정책측면의 효과적인 CPTED 적용 방안 연구(김고원·강석진, 2019)

김고원·강석진(2019)은 CPTED 관련 법제도 및 정책 분석, CPTED 전문가 및 관계자(공무원,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효과적인 CPTED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표 2-9] CPTED 조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김고원·강석진, 2019)

문제점	개선방안
실무자와 공무원은 「건축법」에 포함된 CPTED 관련 조항은 비교적 잘 알고 있지만, 도시계획과 관련된 「공원 및 녹지 등	• '범죄예방' 또는 '방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조항을 'CPTED' 또는 '범죄예방 설계'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

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국토 기본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등에 포함된 CPTED 관련 조항은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건축물과 도시공간 유형별로 적절한 CPTED 사례를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
• 국토교통부의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는 대부분 조경, 통신, 설비분야에 국한되어 적용됨 • 관련 심의 및 자문도 제한적 범위에서 진행됨 • 설계내용 수정이나 변경이 어려운 인허가나 준공단계에서 CPTED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음 • 심의 및 평가배점이 없거나 매우 낮은 수준이며 CPTED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 없음	계획 초기단계에서 CPTED 요소를 확인하고 심의 및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지원방안 필요
CPTED 심의 및 자문에 대한 필요성은 매우 높지만 만족도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내실 있는 심의 및 자문을 위해 표준화된 방법(문서, 도면 규격화)과 기준 개발(구체적인 평가지침, 매뉴얼 등) • CPTED 전문위원회 운영 또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CPTED 전문가의 전문성 확보

출처: 김고원·강석진. (2019). pp.104-105의 내용을 정리하여 연구진 작성.

④ CPTED의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 영국, 호주에 대한 비교법제 연구를 중심으로 (최용성·곽대훈, 2020)

최용성·곽대훈(2020)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CPTED 기법을 도입·적용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적용을 위한 CPTED 기법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CPTED 한계로 물리적 환경디자인 구축에 치중, 사업의 지속성 부재, 지역별 범죄정보 획득의 어려움, 인증제도 미흡, 「건축법」상 규정의 실효성 부족을 도출하였으며, 법·제도적 개선방안으로 「건축법」 규정을 보완·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 인증제 도입, 관련 주체 간 협업 및 역할분담, 지역별 범죄위험평가 제도 등을 제안하였다.

[표 2-10] 우리나라 CPTED 한계 및 개선방안(최용성·곽대훈, 2020)

구분	내용	
한계	물리적 환경디자인 구축에 치중됨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CPTED 관련 조례 및 정책들이 대부분 물리적인 환경디자인 구축에 치중되어 있음 •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단발성 행사들로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지역별 범죄정보 획득 어려움	• 지역별로 정확한 범죄정보 획득이 어려워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적인 정책수립 미흡 • 범죄발생통계는 경찰과 지자체 간에 공유가 어렵고, 자료제공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어서 재량적인 협조에만 의지하는 실정
	인증제도 미흡	• 한국CPTED학회 등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증제도와 서울 등 지자체의 자체적 인증제도가 있으나 양자 모두 공신력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건축법」상의 규정 실효성 낮음	• 「건축법」 상의 규정이 선언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실효성 낮음 • 건축주 등으로 하여금 CPTED 기법을 적용하도록 유인하기에 제도적 한계가 있음
법·제도적 개선	「건축법」 규정을 보완·정비하여 제	• 법률에서 CPTED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사업의 예산 및 인력 투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

방안	도의 실효성 확보	• 사업승인 단계가 아닌 건축허가 단계에서 CPTED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규정 마련 필요
	인증제 도입	• 건축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해당 지역의 범죄특성 및 인증등급에 따라 방범시설이 적용될 수 있도록 CPTED 인증제도 도입 검토 •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CPTED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CPTED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
	관련 주체 간 협업 및 역할분담	• 관련 정부부처 간 협업 우선 •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지자체와 경찰, 설계 및 시공자 간의 정보공유와 역할분담 필요 • 정부차원에서 CPTED 관련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해 예산 지원 방안 검토
	지역별 범죄위험 평가 제도	• 지역사회 안전 및 차별적 CPTED 정책수립을 위한 지역별 범죄위험평가 제도 필요 • 경찰청의 CPTED 범죄발생통계를 의무적으로 지역사회에 공유하는 등의 방안 검토

출처: 최용성·곽대훈. (2020). pp.136-137, pp.141-144의 내용을 정리하여 연구진 작성.

3) 건축법, 범죄예방건축기준 고시 관련 연구

① 건축물의 범죄예방 관련 법령 개선방안 연구-건축법 및 하위법령을 중심으로(조영진·손동필, 2016)

조영진·손동필(2016)은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고시 등의 일련의 범죄예방 관련 체계를 정립하고, 건축물의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관련 분야 실무자 및 전문가 자문, 현행 제도 관련 민원자료 수집 및 분석, 국내외 건축물의 범죄예방 관련 법령 등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건축법」에서 범죄예방환경설계센터 설립 또는 지정, 「건축법 시행령」에서 의무/권장 대상건축물 개정 및 범죄예방환경설계센터 항목 신설,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체크리스트에 범죄예방 관련 검토 추가 등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제안하였다.

[표 2-11] 건축물의 효율적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안(조영진·손동필, 2016)

구분	주요 개정 내용	
건축법 개정 (제53조의2)	범죄예방환경설계센터 설립 또는 지정	• 건축물의 세부 용도별 '범죄예방 기준' 마련 필요 • 용도·지역별 범죄발생 특성에 따른 '범죄예방 기준' 마련 필요 • 날로 고도화되는 범죄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연구 필요 • 건축사, 공무원 등 범죄예방환경설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필요 • 범죄예방환경설계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홍보 필요
건축법 시행령 개정 (제61조의3)	의무/권장 대상건축물 개정	• 실제 범죄발생이 높은 소형 공동주택(다세대/다가구/연립 주택,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범죄예방환경설계 의무화 • 의무시설 중 침입범죄 위험이 적은 문화 및 집회시설, 수련시설을 삭제하여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규제 완화
	범죄예방환경설계센터 항목 신설	• 건축법 개정에 따른 범죄예방환경설계센터의 업무범위와 설치요건에 관한 항목 신설 • 범죄예방환경설계센터의 자격을 공공기관으로 제한 • 관계자 교육 및 홍보를 센터의 업무에 포함
건축법 시행규	체크리스트에	•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에 범죄예방

칙 개정 [별지 제23호 서식]	범죄예방 관련 검토 추가	관련 항목을 명시하여 인허가시 이를 체크하도록 함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	• 건축물의 침입 방어 성능과 창호 침입 방어 성능 제품 사용의 확인 • 기존 의무 적용대상 건축물과 권장 적용대상 건축물 구분의 적정여부 • 신규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수립 • 용도변경과 리모델링 시 고시 적용에 대한 명문화 • 건축물의 범죄위험평가 도입방안 • 기존 조문 중 해석이 모호한 문구 개정	

출처: 조영진·손동필. (2016). pp.101-106의 내용을 정리하여 연구진 작성.

② 범죄예방 건축기준 개선방안 연구(조영진 외. 2019)

조영진 외(2019)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범죄예방 의무적용 대상 건축물 확대와 여건 변화를 반영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죄예방시설 설치와 이에 따른 범죄예방 기대효과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하고, 건축물의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법체계 정립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범죄예방 제도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등의 문헌연구, 경제성 분석, 여론조사 및 관련 분야 전문가·실무자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범죄예방 정책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법령이 필요하다는 결론 하에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범죄예방 정책 법률의 추진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표 2-12] 범죄예방을 위한 법체계 정립방안(조영진 외, 2019)

구분	내용	
범죄예방 정책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법령 필요	다양한 법률에 일부 명시되어 있는 범죄예방 관련 법령	• 건축 및 도시 공간환경의 범죄예방 관련 법령은 다양한 법률에서 언급하고 있으나 내용이 평면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형식 • 「건축법」, 「국토기본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주차장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에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조성 및 범죄예방계획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범죄예방 정책 사업 수행에 근거법령 부재로 인한 어려움 상존	• 중앙 부처 및 지자체에서 다양한 범죄예방 관련 사업 수행 • 정책 및 사업 수행에 근거법령이 부재하여 예산확보 및 실행에 어려움이 있음 • 명확한 방향성 없이 단순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로 사업이 수행되는 경우가 많음
	기존 법령은 범죄예방 환경조성에 관한 법원칙 또는 기본 이념 부재	• 다양한 법령에서 범죄예방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범죄예방 관련 조항을 평면적으로 규정 • 건축 관계 법령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규정을 산발적으로 담고 있어 실질적인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관한 법원칙 또는 기본 이념 부재 • 개별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범죄예방관련 환경조성에 관한 규정을 서로 정합성 있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우선적으로 범죄예방관련 환경조성에 관한 부문을 의무화시

		키는 방안 마련 필요
범죄예방 관련 정책을 통합할 수 있는 범죄예방 관련 기본법 성격의 통합 법령 필요	범죄예방의 방향성 정립과 효율적 정책 및 사업 수행을 위한 통합 법령 필요	• 범죄예방에 관해 실효적인 제도는 「건축법」제53조의2에 의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가 유일하며 건축을 제외한 도시 및 공간에 대한 범죄예방은 개별 기관에서 가이드라인 형태로 운영 • 건축·도시·공간환경의 범죄예방은 서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의 통합 및 범죄예방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범죄예방 관련 통합 법령의 제정이 필요함
현행 계류 법률의 추진 제언		• '범죄예방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과 '범죄예방 기본법(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국회 계류 중 • 법무부와 행정자치부(경찰청)를 공동으로 소관부처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관계부처 간 원활한 협의를 바탕으로 소관부처 결정 •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병합심리 또는 위원장의 대안 등을 통해 총체적 관리방안 검토 • 현재 계류 중인 법률의 내용 중 물리적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법률대안을 마련하고 물리적 공간환경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입법(가칭 범죄예방 환경조성 기본법) 추진

출처: 조영진 외. (2019). pp.101-106의 내용을 정리하여 연구진 작성.

Chapter. 3

제3장

범죄예방 환경 조성 관련 법령 및 추진경과

1. 범죄예방환경조성 관련 법제도 현황
2. 관련 법령 제정 추진 경과
3. 법안 내용상의 쟁점

1. 범죄예방환경조성 관련 법제도 현황

1) 범죄예방건축기준고시(2025년 개정 예정)

①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의 구성

2014년 5월「건축법」개정을 통해 제53조의2를 신설하고 이에 따라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고시하였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건축물은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총 3개의 장, 15개의 조, 3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은 총칙, 2장은 범죄예방 공통기준, 3장은 건축물의 용도별 범죄예방 기준이다.

②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의 내용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물리적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그 내용으로 하며, 대지의 출입구, 건축물 출입구 주차장, 조경, 창문, 건축물의 외벽 등 물리적 환경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예방 공통기준은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확보, 활동의 활성화 등 1세대 CPTED의 원칙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축물의 용도별 범죄예방 기준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오피스텔, 문화 및 집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 일용품 소매점, 다중생활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기준 내용이 가장 많은 반면 단독주택은 의무 대상이 아니며, 제11조의 규칙 적용을 권장하고 있다.

[표 3-1]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의 구성 및 포함 내용

장	조	제목	포함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확보, 활동의 활성화, 건축주, 설계자
	제3조	적용대상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제1종근린생활시설(일용품 판매점),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교육연구시설(연구소·도서관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2장		범죄예방 공통기준	
	제4조	접근통제의 기준	
	제5조	영역성 확보의 기준	
	제6조	활동의 활성화 기준	
	제7조	조경 기준	
	제8조	조명 기준	
	제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의 설치	
제3장		건축물의 용도별 범죄예방 기준	
	제10조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기준	대지의 출입구/담장/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경비실 등/ 주차장/조경/건축물의 출입구/세대 현관문 및 창문/승강기·복도 및 계단 등/건축물의 외벽/건축물의 측면이나 뒷면, 정원, 사각지대 및 주차장의 조명/전기·가스·수도 등 검침용 기기/세대 창문에 방범시설 설치
	제11조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관한 사항	세대 창호재/세대 출입문/건축물 출입구/건축물 외벽/건축물의 측면이나 뒷면, 출입문, 정원, 사각지대 및 주차장의 조명/전기·가스·수도 등 검침용 기기/담장, 주차구역, 건축물의 출입구 지하층,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승강기 내부/계단실/세대 창문에 방범시설 설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은 규칙 적용을 권장
	제12조	문화 및 집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에 대한 기준	출입구 등/주차장/차도와 보행로가 함께 있는 보행로
	제13조	일용품 소매점에 대한 기준	출입문 또는 창문/출입구 및 카운터 주변/카운터의 배치
	제14조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기준	출입구/건축물의 출입구/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제15조	재검토기한	
부칙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2) 대통령훈령 제448호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규정」

① 대통령훈령 제448호의 구성

대통령훈령 제448호는 2022. 11. 16. 제정되었으며, 총 12개의 조와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2] 대통령훈령 제448호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규정」 구성

조	제목	주체
제1조	목적	
제2조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	협의회의 구성	
제4조	협의회의 운영	
제5조	범죄예방환경개선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법무부장관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법무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
제8조	자문위원	협의회의 의장
제9조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의 의뢰	법무부장관
제10조	지방자치단체 등에의 협조요청	법무부장관
제11조	수당과 여비	
제12조	운영세칙	
부칙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훈령 원문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② 대통령훈령 제448호의 내용

■ 목적(제1조)

대통령훈령 제448호의 목적은 범죄예방 환경개선에 관한 관계 기관의 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범죄예방 환경개선 협의회(제2조-제4조)

제2조-제4조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협의회의 설치부터 운영까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범죄예방 환경개선 협의회는 협의회 의원이 소속된 기관(제3조제1항)의 범죄예방 환경개선에 관한 사업과 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관으로, 기본계획의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의 및 추진·평가 등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다룬다. 범죄예방 환경개선 협의회의 의장은 법무부장관이다.

[표 3-3] 범죄예방 환경개선 협의회

구분	조·항	내용	
설치 및 기능	제2조제1항	소속	법무부장관
		목적	협의회 의원이 소속된 기관(제3조제1항)의 범죄예방 환경개선에 관한 사업과 계획 등을 심의·조정

	제2조제2항	기능	심의·조정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음	
			기본계획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기본계획 수립(제6조)
			시행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제7조)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의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추진 및 평가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관련 제도 및 규정에 관한 사항
			기타	그 밖에 의장이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구성	제3조제1항	의장	법무부장관	
		위원	•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차관 • 경찰청의 차장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을 위원으로 함	
	제3조제2항	간사	•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협의회의 의장이 지명 • 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해 1명을 둠	
운영	제4조제1항	소집	의장이 소집	
		개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의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제4조제2항	직무대행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제4조제3항	협조의무	의장은 쟁점사항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함	
	제4조제4항	서면회의	의장은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회의(전자문서에 의한 것을 포함)를 개최할 수 있음	

출처: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규정(대통령훈령 제448호) 제2조-제4의 내용을 표로 작성.

■ 범죄예방 환경개선 실무협의회(제5조)

범죄예방 환경개선 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범죄예방 환경개선 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범죄예방 환경개선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를 둔다(제5조 제1항). 범죄예방 환경개선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법무부차관이다.

[표 3-4] 범죄예방 환경개선 실무협의회

구분	조·항	내용	
구성	제5조제2항	의장	법무부 차관
		위원	관계기관의 실·국장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5조제3항	간사	-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실무협의회의 의장이 지명 - 실무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해 1명을 둠
운영	제5조제4항		- 제4조(범죄예방 환경개선 협의회의 운영) 준용 -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봄

출처: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규정(대통령훈령 제448호) 제5조의 내용을 표로 작성.

■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계획(제6조-제7조)

제6조는 범죄예방 환경계획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표 3-5]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계획

구분	조·항	내용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제6조제1항	주체	법무부 장관	
		심의	협의회의 심의를 거침	
		기간	5년마다 수립	
		의견 수렴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	
	제6조제2항	포함 사항	1.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2.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종합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연구·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제1항	주체	법무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	
		기간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시행	
	제7조제2항	추진실적 요청	법무부장관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통보해줄 것을 요청해야 함
	제7조제3항	추진실적 통보	법무부장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협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함
	제7조제4항	추진실적 반영	관계기관의 장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반영해야 함

출처: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규정(대통령훈령 제448호) 제6조-제7조의 내용을 표로 작성.

■ 자문위원(제8조)

협의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민간단체 등의 직원이나 관계 공무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제8조제1항).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제8조제4항).

[표 3-6] 자문위원(제8조)

구분	항	내용
협의회	제1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음

의장	제2항	협의회의 회의에 자문위원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음
실무협의회 의장	제3항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자문위원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음

출처: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규정(대통령훈령 제448호) 제8조의 내용을 표로 작성.

■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의 의뢰(제9조)

법무부장관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소, 대학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에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등에의 협조요청(제10조)

법무부장관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출석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수당과 여비(제11조)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자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운영세칙(제12조)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하도록 한다.

[표 3-7] 운영세칙(제12조)

구분	항	내용
협의회	제1항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의장이 정함
실무협의회	제2항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회의 의장이 정함

출처: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규정(대통령훈령 제448호) 제12조의 내용을 표로 작성,

3) 대통령훈령 제448호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규정」 제6조에 의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① 수립 배경[17)]

■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추진 필요

2005년 경찰청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방안」이 발간되고 신도시 위주로 CPTED가 적용되기 시작한 이후 여러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재정 측면의 문제로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관계기관 간의 소통 부재로 유사 사업이 중복 시행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지속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2022년 5월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관리하는 것을 법무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며,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국가 단위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기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다.

■ 대통령 훈령에 제448호에 따라 수립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은 2022년 11월 16일 제정된 대통령훈령 제448호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규정」 제6조에 근거하여 수립되었다.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규정

제6조(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2.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종합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연구·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추진 경과

17) 관계부처 합동. (2023). pp.4-5 내용을 정리하여 연구진 작성,

[표 3-8]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추진경과

일자	추진경과
2022. 5.	「국정과제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의 실천과제인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에 따른 세부과제로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CPTED)의 실효성 제고” 지정
2022. 5.	범죄예방 환경개선팀(법무부 보호정책과) 구성 – ‘범죄예방 환경개선 협의회’ 구성·운영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추진
2022. 6.~ 8.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구성을 위한 관계기관 의견수렴
2022. 8.~ 12.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용역 진행
2022. 11.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규정」(대통령훈령) 제정·시행
2022. 12. ~ 2023. 1.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업무회의

출처:관계부처 합동. (2023). p.6의 내용을 표로 작성.

③ 추진과제

■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진전략과 추진과제

CPTED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네 개의 추진전략과 그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추진전략은 첫째, 건축·도시개발 규정의 CPTED 사항을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의 ‘제도 개선’, 둘째,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개설하고 통합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온라인 홈페이지를 마련하는 등 CPTED 사업 통합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셋째, 법무부와 관계기관 간 협업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기관의 고유사업에 대한 ‘협업·관리 강화’, 넷째, 범죄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및 지자체 실무자 교육 활성화이다.

[표 3-9]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의 추진과제

구분	내용	
비전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목표	통합관리를 통한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사업의 실효성 제고	
추진과제	CTPED 관련 제도 개선	• CPTED 적용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협의 추진 • CPTED 사업 추진 단계별 표준 매뉴얼 개발·보급 • CPTED 사업 평가 체계 구축 • CPTED 사업 포상제도 마련
	CPTED 사업 통합관리 인프라 구축	•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법무부-지자체 CPTED 협업체계 구축
	CPTED 사업 관계기관 협업 강화	• 법무부 & 국토부·해수부, CPTED 맞춤형 컨설팅 확대 • 법무부 & 문체부, 교정시설 공공디자인 컨설팅 추진 • 관계기관의 CPTED 관련 사업 지속 추진 → CPTED 인증제 활성화 → 안전한 보행로 만들기 사업 추진 → CPTED 적용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사업 → 범죄예방 진단 경찰관(CPO) 활동 강화 등
	CPTED 인식 제고	• 법교육을 활용한 CPTED 교육 활동 전개 • 대학생 참여 CPTED 온라인 홍보 활동 전개 • CPTED 담당자 실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활성화

출처:관계부처 합동. (2023). p.14 그림을 표로 작성.

■ CPTED 관련 제도 개선

CPTED 관련 제도 개선 전략을 위한 추진과제는 'CPTED 적용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협의 추진', 'CPTED 사업 추진 단계별 표준 매뉴얼 개발·보급', 'CPTED 사업 평가 체계 구축', 'CPTED 사업 포상 제도 마련'이다.

[표 3-10]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추진과제-CPTED 관련 제도 개선

세부 추진과제	소관부처	추진 내용
CPTED 적용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협의 추진	국토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등 관련규정의 개정 협의 추진
		• 2024 개정 예정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의 개정 협의 추진 • CPTED 현황 진단 및 적용 매뉴얼을 구체화하고 고시 내용에 건축물의 공간·형태·구조·입지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협의 추진
CPTED 사업 추진 단계별 표준 매뉴얼 개발·보급	법무부	CPTED 사업 추진 단계별 표준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지자체 CPTED 사업 추진 시 사업 단계별 추진 내용, 체크리스트, 예시 등을 제공하는 표준 매뉴얼 개발 • 전문가 및 지자체 실무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현장 및 실무 중심으로 개발하여 지자체 보급
CPTED 사업 평가 체계 구축	법무부	지자체 합동평가에 CPTED 평가지표 도입 추진
		• CPTED 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정성 지표를 연구 및 개발 추진 • 지자체 합동평가에 CPTED 평가 지표를 도입 추진
CPTED 사업 포상 제도 마련	법무부	우수 CPTED 사업 지자체 등에 대한 정부포상 등 추진
		• 정부 및 부처 포상에 CPTED 유공 분야를 신설하고 우수 CPTED 사업 지자체 등에 대한 포상제도 마련 • 향후 지자체 합동평가의 CPTED 평가를 활용하여 우수 CPTED사업 지자체 및 담당 공무원을 발굴·선정, 표창 실시

출처:관계부처 합동. (2023). pp.16-18 내용을 표로 작성

④ CPTED 사업 통합관리 인프라 구축

CPTED 사업 통합관리 인프라 구축 전략을 위한 추진과제는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구성 및 운영', '법무부-지자체 CPTED 협업체계 구축'이다.

[표 3-11]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추진과제-CPTED 사업 통합관리 인프라 구축

세부 추진과제	소관부처	추진 내용
범죄예방환경개선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법무부	협의회 규정(대통령 훈령)을 근거로 하는 협의회 구성
		• 법무부장관이 협의회 회장이 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의 차관을 위원으로 위촉하며, 각종 민간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구성(관계기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차관과 경찰청의 차장 – 9개 기관) •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관계기관 간의 협의, 사업 이행에 대한 평가 등을 심의·조정
법무부-지자체 CPTED 네트워크 구축	법무부	법무부-광역지자체 간의 CPTED 네트워크 구축 추진
		• 법무부와 광역지자체(17개 시·도) 간의 CPTED 사업 현황 및 정보를 원활하게 교환하여 통합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 CPTED 사업에 관한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현황 및 정보 교류, 의견 수렴, 협의회의 의결 사항(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공유 등 지자체와의 협력 관계 유지

출처:관계부처 합동. (2023). pp.18-19 내용을 표로 작성.

■ CPTED 사업 관계기관 협업 강화

CPTED 사업 관계기관 협업 강화 전략을 위한 추진과제는 '법무부-국토부·해수부 연계 맞춤형 컨설팅 확대', '법무부-문체부 연계 교정시설 공공디자인 컨설팅 추진', 경찰청, 행안부, 문체부, 여가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의 CPTED 관련 사업 지속 추진'이다.

[표 3-12]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추진과제-CPTED 사업 관계기관 협업 강화

세부 추진과제	소관부처	추진 내용	
법무부 & 국토부·해수부 맞춤형 컨설팅 확대	국토부·해수부	부처협업 강화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 확대 추진	
		• 국토부·해수부는 개발사업 추진 시, CPTED 적용 필요 지역을 적극 발굴하고 법무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컨설팅을 통해 해당 지자체에 CPTED 설계 자료를 제공, 안전한 환경조성 도모 • 각종 개발 사업에 CPTED를 반영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속 확대 추진	
법무부 & 문체부 교정시설 공공디자인 컨설팅 추진	문체부	교정시설 공공디자인 컨설팅 시범사업 추진	
		• 교정시설에 색채 심리 적용·사용자 환경 개선 등 공공디자인 관점을 적용한 공공디자인 환경개선 가이드라인 제작	
관계기관의 CPTED 관련 사업 지속 추진	경찰청	CPTED 인증제 활성화	
		추진 배경	• 경찰청에서 민간 시설의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을 유도하기 위해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이 평가·인증하는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제」 운영 • 편의점·원룸 방범인증제 시범운영을 거쳐 주차장, 원룸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지속 추진 중
		추진 내용	• 범죄예방 우수시설의 인증 대상 확대를 위해 시설유형 및 인증 기준을 검토하고, 효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인증제 활성화
	행안부	안전한 보행로 만들기 사업 추진	
		추진 배경	• 안전한 보행환경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	• 보행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보행 활성화, 지역경제 활

		내용	성화, 도시방재, 범죄예방 등 생활권 전반의 환경 개선
	문체부	CPTED 적용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추진 배경	• 범죄예방디자인(CPTED)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디자인적 접근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공공디자인의 주요 분야 •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따라, 지자체 대상 범죄예방 안전 관련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추진 내용	•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사업을 통해 '범죄예방', '생활안전' 관련 사업지 조성 추진 • 전문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역 공공디자인 조성 공모, 컨설팅 지원
	경찰청	CPTED 실효성 제고를 위한 CPO 활동 강화	
		추진 배경	• 2016년 강남역 사건을 계기로 범죄취약지역 진단·분석을 전담하는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CPO)을 신설하여 운영 중 •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CPTED 사업에 앞서 지역·건물의 범죄취약요소 진단·분석 후 사업대상지 선정·방범시설 추천 등에 참여 중
		추진 내용	• 지자체 CPTED 사업에 CPO 역할 강화: 범죄취약지역 관리 및 시설주·자치단체 대상 개선 권고, CPTED 사업 참여 등 범죄예방진단팀 활동 강화, 지역별 CPTED 사업 실효성 제고
	여가부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배경	•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 및 지정 평가지표에 있는 지역사회 안전증진 항목에 CPTED 요소 반영 필요
		추진 내용	• 여성친화도시 사업 내용 중 안전 지킴이, 순찰 및 귀가 동행 서비스, 공간 모니터링 사업 등과 연계하여 범죄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 • 여성친화도시 지정 평가지표 중 '지역사회 안전증진' 항목 평가 시 CPTED 요소를 반영·심사함으로써 지자체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유도
	행안부	주소정보시설 고도화를 통한 야간 범죄예방 환경조성	
		추진 배경	•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고도화를 통해 이면도로에서 발생하는 범죄예방 및 신속한 신고체계 마련 • 긴급 상황 발생 시 주소정보시설을 활용한 정확한 사고 위치파악 및 신속한 구조구급 활동 활용
		추진 내용	• 국민 위치 찾기 편의 향상 및 신속한 구조 구급 활동 지원을 위한 사물주소판, 기초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 확충 • 주소정보시설에 AR/QR코드 표기, 이면도로에 CPTED(조명·야광형 등) 기능을 반영한 주소정보시설 정비
	교육부	학교 안전 강화사업 확대	
		추진 배경	•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교 안전 시스템 구축 필요
		추진 내용	• 국립부설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외부인 침입, 화재 등을 조기 감지하여 학교 관계자에게 자동으로 알려주는 지능형 CCTV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설치 및 (시범) 운영: 지능형 CCTV 를 이용한 CCTV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출처:관계부처 합동. (2023). pp.21-24 내용을 표로 작성.

⑤ CPTED 관련 인식 제고

CPTED 관련 인식 제고 전략을 위한 추진과제는 '법교육을 활용한 CPTED 교육 활동 전개', '대학생 참여 CPTED 온라인 홍보 활동 전개', 'CPTED 담당자 실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강

화'이다.

[표 3-13]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추진과제 – CPTED 관련 인식 제고

세부 추진과제	소관부처	추진 내용
법교육을 활용한 CPTED 교육 활동 전개	법무부	법교육 기반을 활용한 CPTED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체험하는 활동 중심의 청소년 CPTED 프로그램을 개발 • 법교육 활동 기반을 활용, CPTED 내용의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청소년시설 등에 보급·운영
대학생 참여 CPTED 온라인 홍보 활동 전개	법무부	대학생이 참여하는 온라인 CPTED 홍보 활동 추진
		• 법무부 법질서 캠페인에 참여하는 대학생 저스티스 서포터즈와 함께 CPTED 관련 온라인 홍보활동 전개 • CPTED의 원리, 필요성, 사례 등에 대한 카드뉴스, 동영상 등을 제작,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전개
CPTED 담당자 실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법무부	CPTED 담당자 실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의 CPTED 사업 평가지표에 지자체 직원의 CPTED 교육 수료 실적 반영 • 지자체 CPTED 실무자의 교육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일정 등 적극 홍보 • 현재 법무연수원 사이버교육으로 운영 중인 "CPTED 실무자 교육" 프로그램의 수정·보완 등 개편 검토 추진

출처:관계부처 합동. (2023). pp.25-26 내용을 표로 작성.

2. 관련 법령 제정 추진 경과

1) 범죄예방기본법

① 범죄예방기본법안(2015)

■ 개요

2015년 9월 11일에 발의되었으며, 대표발의자는 서청원의원이다. 총 15개의 조와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활성화, 민간범죄예방봉사단체의 육성 등 협업적·과학적 범죄예방 기반 마련, 현행 경찰 중심의 범죄예방체계를 보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분야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범죄예방체계 구축을 위하여 제안되었다.

[표 3-14] 범죄예방기본법안(2015) 구성

조	제목	주체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범죄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제6조	범죄예방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경찰청장
제7조	범죄예방디자인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제8조	범죄예방디자인 인증	경찰청장
제9조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지정	지방경찰청장
제10조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관리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관서의 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제11조	위해에 대한 예보·경보	경찰청장
제12조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의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제13조	범죄예방공단의 설립	국가
제14조	권한의 위임	경찰청장
제15조	과태료	
부칙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범죄예방기본법안(2015) 주요내용

[표 3-15] 범죄예방기본법안(2015) 주요 내용

조	제목	내용
제2조	정의	범죄예방, 협업적 범죄예방, 범죄예방디자인 정의
제5조	범죄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경찰청장이 범죄예방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협업적 범죄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함
제6조	범죄예방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경찰청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주요 정책자문을 수행하고 관계 부처와의 업무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민·관 위원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범죄예방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함
제7조	범죄예방디자인 활성화	범죄예방디자인 활성화 사업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인증제를 실시함
제8조	범죄예방디자인 인증	
제9조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지정	범죄예방강화구역의 지정·관리, 위해에 대한 예보·경보 및 조치에 대하여 규정함
제10조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관리	
제11조	위해에 대한 예보·경보	
제12조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의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교통안전·학교폭력 및 청소년계도활동 등을 수행하는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의 육성을 활성화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제13조	범죄예방공단의 설립	협력적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범죄예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② 범죄예방 기본법안(2016)

■ 개요

2016년 11월 9일 발의되었으며, 대표발의자는 권성동의원이다. 총 4개의 장과 1개의 부칙, 20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다.

범죄예방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첫째, 범죄예방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책무와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둘째, 법무부가 주관하여 범죄예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죄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관계 부처의 참여와 협조 하에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범죄예방정책을 추진하며, 셋째,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의 활성화 등 범죄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범죄예방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

[표 3-16] 범죄예방 기본법안(2016) 구성

장	조	제목	주체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4조	범죄예방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범죄예방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6조	범죄예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법무부장관
	제7조	범죄예방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법무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제8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제9조	범죄예방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	범죄예방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
	제11조	범죄예방실무협의체의 설치 등	
	제12조	범죄예방정책책임관의 지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제13조	범죄예방 실태조사	법무부장관
	제14조	범죄통계의 작성·관리 및 공개	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 법무부장관
제3장		범죄예방 교육·홍보 및 환경개선	
	제15조	범죄예방 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16조	범죄예방 활동 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17조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18조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19조	포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4장		보칙	
	제20조	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
부칙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범죄예방기본법안(2016) 주요내용

[표 3-17] 범죄예방 기본법안(2016) 주요 내용

장	조	제목	내용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범죄예방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에 관한 종합적 · 체계적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조치를 취함 2) 공공기관은 범죄예방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제4조	범죄예방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정책 수립·시행 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으로 지역별 균등성, 재원 마련 노력, 범죄예방 관련 자료 표준화 및 공유, 국

			가·지방자치단체 간 및 공공부문·민간부문 간의 협력 등을 제시함
제2장		범죄예방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6조	범죄예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1)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종합적·체계적인 범죄예방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함 2) 범죄예방 기본계획에는 범죄예방정책의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주요 정책의 개요, 연구·교육·홍보, 범죄예방과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제7조	범죄예방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을 매년 1월 말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제9조	범죄예방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추진조직 구축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죄예방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조정 기능을 부여함 2)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정책 평가·조정,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 협조·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제10조	범죄예방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국무총리를 위원장, 법무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부처의 장관 등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2) 위원회는 범죄예방정책의 이행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제11조	범죄예방실무협의체의 설치 등	1) 법무부 소속으로 범죄예방실무협의체를 설치하여 범죄예방정책의 기본계획 수립·시행의 구체적 방안,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업무 협조, 연구·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함 2) 협의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범죄예방 업무 관련 담당자, 범죄예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함
	제13조	범죄예방 실태조사	1) 법무부장관은 3년마다 범죄예방활동 현황, 범죄예방정책 추진 상황 등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함 2)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음
	제14조	범죄통계의 작성·관리 및 공개	1) 검찰, 경찰,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은 각각 범죄통계를 작성·관리하고 있으나, 통계 작성·관리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및 기준이 부재함 2) 형사사법기관은 정확한 지역별·유형별 범죄통계를 작성·관리하고, 법무부장관은 각 통계를 통합하여 관리할 의무 규정을 마련함 3) 법무부장관은 범죄예방 활동이나 학술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범죄통계 공개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제3장		범죄예방 교육·홍보 및 환경개선	
	제15조	범죄예방 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제16조	범죄예방 활동 홍보	
	제17조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상호 협력하는 한편, 범죄취약지역을 파악하여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제18조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여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여건을 조성하고 범죄예방 활동 공로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
	제19조	포상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2)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①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2016)

■ 개요

2016년 7월 27일 발의되었으며, 대표발의자는 윤재옥의원이다. 총 5개의 장과 1개의 부칙, 20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다. 6장까지 있으나 4장이 없어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이 법안은 경찰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자치단체·지역주민 등이 범죄예방에 대한 책무를 가지고, 범죄위험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및 협업적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

[표 3-18]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2016) 구성

장	조	제목	주체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제4조	국민의 책무	국민
제2장		범죄예방진단 및 활용	
	제5조	범죄예방진단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제6조	지역 범죄예방디자인 활성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7조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지정 등	지방경찰청장
	제8조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관리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제9조	자문기구 및 지역 범죄예방디자인 협의체	경찰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3장		범죄예방정보자료의 관리 및 활용	
	제10조	범죄예방정보자료의 관리	경찰청장
	제11조	범죄위험지수의 공표	경찰청장
	제12조	범죄 등에 대한 예보·경보	경찰청장
	제13조	범죄예방디자인 인증	경찰청장
	제14조	인증의 취소 및 청문	경찰청장
	제15조	범죄예방디자인센터의 설립	국가, 경찰청장
제5장		범죄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제16조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제17조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경찰청장
	제18조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의 활성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장
제6장		보칙	
	제19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20조	과태료	
부칙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2016) 주요내용

[표 3-19]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2016) 주요내용

장	조	제목	내용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범죄예방, 범죄예방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범죄예방 진단, 범죄예방 강화구역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범죄예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책무를 규정함
	제4조	국민의 책무	
제2장		범죄예방진단 및 활용	
	제5조	범죄예방진단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관할 지역의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및 시설·건물주에게 통보하여야 함
	제6조	지역 범죄예방디자인 활성화	지방자치단체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범죄예방디자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제7조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지정 등	지방경찰청장은 범죄 발생 우려가 높아 특별한 범죄예방대책이 필요한 지역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경찰력 증원 등 강화된 범죄예방대책을 시행하여야 함
	제8조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관리	
	제9조	자문기구 및 지역 범죄예방디자인 협의체	범죄예방디자인 정책의 전문적 추진을 위해 경찰청에 자문기구를 둘 수 있으며, 자치단체장은 지역의 범죄예방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범죄예방디자인협의체를 둘 수 있음
제3장		범죄예방정보자료의 관리 및 활용	
	제10조	범죄예방정보자료의 관리	경찰청장은 각종 범죄통계, 범죄위험지도, 범죄위험지수 등 범죄예방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적절하게 공개하여 모든 범죄예방주체들이 효과적 범죄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제11조	범죄위험지수의 공표	
	제12조	범죄 등에 대한 예보·경보	테러·연쇄범죄 등 각종 범죄·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주변인에게 전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제13조	범죄예방디자인 인증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경찰이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인증사업의 전문적 추진을 위해 범죄예방디자인센터를 설립함
	제14조	인증의 취소 및 청문	
	제15조	범죄예방디자인센터의 설립	
제5장		범죄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제16조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범죄예방 교육 및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자율방범대 등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17조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제18조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의 활성화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②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2020)

■ 개요

2020년 7월 30일 발의되었으며, 대표발의자는 윤재옥의원이다. 총 16개의 조와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 등이 범죄예방에 대한 책무를 가지고, 범죄위험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및 협업적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

[표 3-20]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2020) 구성

조	제목	주체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경찰관서의 책무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경찰관서
제4조	지역주민의 책무	지역주민
제5조	범죄예방진단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제6조	지역 범죄예방디자인시책의 수립·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7조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지정 등	지방경찰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8조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조치	지방경찰청장
제9조	지역 범죄예방디자인 협의체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0조	범죄예방정보자료의 관리	경찰청장
제11조	범죄 등에 대한 예보·경보	경찰청장
제12조	범죄예방디자인 인증	경찰청장
제13조	인증의 취소 및 청문	경찰청장
제14조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경찰청장
제15조	범죄예방사업에 대한 보조	국가
제16조	과태료	
부칙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2020) 주요내용

[표 3-21]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2020) 주요 내용

조	제목	내용
제2조	정의	범죄예방디자인 정의
제3조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경찰관서의 책무	범죄예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관서, 지역주민의 책무를 규정함
제4조	지역주민의 책무	
제5조	범죄예방진단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관할 지역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지역주민 등으로부터 요청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 대상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과 협의를 거쳐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할 수 있음
제6조	지역 범죄예방디자인시책의 수립·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공간구조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제7조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지정 등	지방경찰청장은 범죄 발생 우려가 높아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해당 구역에 경찰력 증원하고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며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제8조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	

	한 조치	
제9조	지역 범죄예방디자인 협의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죄예방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지역 범죄예방디자인 협의체를 둘 수 있음
제10조	범죄예방정보자료의 관리	경찰청장은 각종 범죄통계, 범죄위험지도, 범죄예방정책 등 범죄예방정보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범죄예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제11조	범죄 등에 대한 예보·경보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또는 위해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권자에게 예보나 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수 있음
제12조	범죄예방디자인 인증	경찰청장은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음
제15조	범죄예방사업에 대한 보조	국가는 범죄예방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에 보조할 수 있음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③ 지역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2021)

■ 개요

2021년 4월 16일 발의되었으며, 대표발의자는 김영배의원이다. 총 17개의 조와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찰, 관계기관, 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치안협의체를 설치할 의무를 부여하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지역치안 협의체의 결정을 반영해 범죄예방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범죄예방을 위한 진단 실시권 및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장에 대한 협조 요청권, 지역 범죄예방디자인 시책 수립 의무를 각 규정하여 각 지역 특성에 따른 치안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

[표 3-22] 지역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2021) 구성

조	제목	주체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경찰관서의 책무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경찰관서
제4조	지역주민의 책무	지역주민
제5조	지역치안 협의체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시·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제6조	범죄예방진단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7조	지역 범죄예방디자인시책의 수립·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8조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지정 등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제9조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제10조	범죄예방정보자료의 관리	경찰청장
제11조	범죄 예보·경보	경찰청장
제12조	범죄예방디자인 인증	경찰청장
제13조	인증의 취소 및 청문	경찰청장
제14조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경찰청장
제15조	범죄예방사업에 대한 보조	국가
제16조	권한의 위임	경찰청장
제17조	과태료	
부칙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지역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2021) 주요내용

[표 3-23] 지역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2021) 주요 내용

조	제목	내용
제1조	목적	지역별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있어서 다양한 치안활동의 주체들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의 범죄예방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벗어나 보다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제2조	정의	범죄예방, 범죄예방 진단, 범죄예방 디자인, 범죄예방 강화구역 정의
제3조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경찰관서의 책무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경찰관서는 범죄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며,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로 협력
제5조	지역치안 협의체	1)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범죄예방과 관련된 모든 사업 등 범죄예방정책을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 관계기관, 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치안 협의체를 설치 2)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지역치안 협의체의 결정을 반영하여 범죄예방에 관한 정책을 수립
제6조	범죄예방진단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물·시설·공간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지역주민으로부터 관할구역 내 건축물·시설·공간 등에 대한 범죄예방디자인 실태조사 및 그 밖의 범죄예방을 위한 진단을 요청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단 대상 건축물·시설·공간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과 협의를 거쳐 범죄예방진단을 실시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진단을 위하여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진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7조	지역 범죄예방디자인시책의 수립·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기본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구역의 공간구조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제8조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지정 등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각종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아 범죄예방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특정 시설이나 지역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된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하여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예방진단 협조를 요청하며,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예방진단 결과에
제9조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조치	

		따라 소속 경찰관 증원 배치,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 순찰활동 증대 요청, 물리적 환경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제12조	범죄예방디자인 인증	경찰청장은 범죄예방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을 받은 자 및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을 받은 건축물·시설·공간 및 제품 등이 아님에도 범죄예방디자인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에 관한 광고를 한 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제17조	과태료	
제15조	범죄예방사업에 대한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개선, 범죄예방시설 및 장비의 보급 등 범죄예방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④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2025)

■ 개요

2025년 7월 30일 발의되었으며, 대표발의자는 김교흥의원이다. 총 19개의 조와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 등 모든 공동체 구성원에게 범죄예방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전국적·지역적 범죄예방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

[표 3-24]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2025) 구성

조	제목	주체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제4조	지역주민의 책무	지역주민
제5조	범죄예방정책협의체	경찰청장
제6조	지역 범죄예방협의체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제7조	범죄예방진단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제8조	지역 범죄예방디자인시책의 수립·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9조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지정 등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제10조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조치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제11조	범죄예방정보자료의 관리	경찰청장
제12조	범죄 예보·경보	경찰청장
제13조	범죄예방디자인 인증	경찰청장
제14조	인증의 취소 및 청문	경찰청장
제15조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경찰청장
제16조	지역별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7조	지역별 범죄예방사업 등에 대한 보조	국가
부칙	시행일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2025) 주요 내용

[표 3-25]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2025) 주요 내용

조	제목	내용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범죄예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의 책무를 규정함
제4조	지역주민의 책무	
제5조	범죄예방정책협의체	전국적인 범죄예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별 추진 업무를 협의·조정하기 위해 경찰청장 소속의 '범죄예방협의체'를 두고, 지역별 범죄예방정책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의 '지역 범죄예방협의체'를 각각 둠
제6조	지역 범죄예방협의체	
제7조	범죄예방진단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역주민 등으로부터 요청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 대상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과 협의를 거쳐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할 수 있음
제8조	지역 범죄예방디자인시책의 수립·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물을 심의하거나 방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제9조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지정 등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 발생 우려가 높아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해당 구역에 경찰력 증원·배치 및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제10조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조치	
제11조	범죄예방정보자료의 관리	경찰청장은 각종 범죄통계, 범죄위험지도, 범죄예방정책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범죄예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제12조	범죄 예보·경보	경찰청장은 범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예보 또는 경보를 할 수 있음
제13조	범죄예방디자인 인증	경찰청장은 범죄예방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고, 별도 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음
제14조	인증의 취소 및 청문	
제15조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경찰청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해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할 수 있음
제16조	지역별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개발을 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있음
제17조	지역별 범죄예방사업 등에 대한 보조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3) 법률안 별 비교분석

① 법률안에 포함된 내용

■ 유사한 항목

'기본법안', '기반 조성을 위한 법률안'과 같이 같은 제목을 가진 법률안끼리 유사한 항목을 포함한다. 연도별로는 2015년과 2016년에 제안된 법률안끼리, 2020년, 2021년, 2025년에 제안된 법률안끼리 유사한 항목을 포하고 있다.

■ 여러 법안에 포함된 항목

6개의 법률안 모두에 포함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며, 5개의 법률안에 포함된 것은 범죄예방 및 범죄예방 디자인의 정의, 지역 범죄예방디자인 시책, 범죄예방디자인 인증, 범죄예방 강화구역, 위해에 대한 예보·경보, 과태료, 권한의 위임 등이다. 총 6개 중 2개의 법안이 '범죄예방 기본법안', 4개의 법안이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므로, 5개 이상의 법률안에 포함된 것은 법률안의 제안자 및 제안 시기와 관계없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항목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3-26] 법률안별 포함 내용

내용		범죄예방기본법안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015	2016	2016	2020	2021	2025
정의	범죄예방	○	○	○		○	○
	협업적 범죄예방	○					
	범죄예방 디자인	○		○	○	○	○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			
	범죄예방 진단			○		○	○
	범죄예방 강화구역			○		○	○
책무	국가	○	○	○			○
	지방자치단체	○	○	○	○	○	○
	공공기관*		○				
	관할 경찰서				○	○	
	국민			○			
	지역주민				○	○	○
기본원칙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조사	실태조사		○				
진단	범죄예방 진단			○	○	○	○
정보	범죄통계 작성		○				
	범죄예방 정보자료 관리			○	○	○	○

계획	범죄예방 기본계획	○	○				
	범죄예방 시행계획	○	○				
	범죄예방 실행계획	○					
	지역 범죄예방디자인시책	○		○	○	○	○
사업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					
조직	범죄예방 자문위원회	○					
	범죄예방 정책위원회		○				
	범죄예방실무협의체		○				
	범죄예방정책책임관		○				
	자문기구			○			
	범죄예방정책협의체						○
	지역 범죄예방디자인 협의체			○	○		○
	지역치안 협의체					○	
위험지수	범죄위험지수 공표			○			
인증	범죄예방디자인 인증	○		○	○	○	○
강화구역	범죄예방 강화구역	○		○	○	○	○
예보·경보	위해에 대한 예보·경보	○		○	○	○	○
자원봉사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	○	○	○			
연구	범죄예방공단	○					
	범죄예방디자인센터			○			
	연구·개발 사업			○	○	○	○
	지역별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
보조	범죄예방사업에 대한 보조				○	○	
	지역별 범죄예방사업 등에 대한 보조						○
교육	범죄예방 교육		○	○			
홍보	범죄예방 활동 홍보		○	○			
과태료		○		○	○	○	○
포상			○				
위임	권한의 위임	○	○	○		○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 목적

■ 법안의 목적은 모두 유사함

표현은 다르더라도 모든 법안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생활' 또는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범죄예방 기본법안(2015, 2016)은 '범죄예방정책의 수립',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2021)은 '지역의 범죄예방 정책 수립',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2016, 2020)은

'범죄 위험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2025)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범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하고 있다.

■ 범죄예방의 주체

범죄예방 기본법안(2016)을 제외한 모든 법안에서 국민 또는 지역 주민을 범죄예방의 주체로 포함하고 있다. 범죄예방 기본법안(2015)에서는 '협의와 협업'을 통하여,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2016, 2020, 2021, 2025)에서는 다양한 치안활동의 주체들이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목적에 포함하고 있다.

[표 3-27] 법률안별 제정 목적

법률안	년도	조	내용
범죄예방 기본법안	2015	제1조	국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 범죄예방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 협의와 협업을 통한 범죄예방의 기반을 조성
범죄예방 기본법안	2016	제1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 구현
			• 범죄예방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함 • 범죄예방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016	제1조	국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벗어나 보다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 다양한 치안활동의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활동에 참여 • 범죄 위험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020	제1조	국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벗어나 보다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 다양한 치안활동의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활동에 참여 • 범죄 위험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
지역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021	제1조	각종 범죄로부터 벗어나 보다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 다양한 치안활동의 주체들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지역의 범죄예방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025	제1조	각종 범죄로부터 벗어나 보다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 다양한 치안활동의 주체들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지역의 범죄예방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③ 정의

■ 범죄예방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2020)을 제외한 모든 법안에서 '범죄예방'을 정의하였다.

범죄예방의 정의는 '국민(지역주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동일하며, 범죄예방 기본법안(2016)은 여기에 더하여 범죄자 교

화·개선 프로그램 운영, 범죄예방시스템 구축,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범죄예방 환경 개선사업 실시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였다. 범죄예방 기본법안(2015)에서는 국민을 포함한 주체를 명시한 '협업적 범죄예방'도 정의하고 있다.

■ 범죄예방디자인

범죄예방 기본법안(2016)을 제외한 모든 법안에서 '범죄예방디자인'을 정의하였다. 디자인의 대상으로는 공통적으로 건축물, 시설, 공간, 제품을 명시하고 있으며 범죄예방 기본법안(2015)에서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

범죄예방 디자인의 수단으로는 2015년과 2016년의 법안에는 설계, 시설, 기술 등으로 명시되어 있고 2020년과 2021년의 법안에는 '설계하거나 개선하는 행위'로 표현되었다.

■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은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2016)에 정의하고 있으며,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을 건축물·시설·공간 등 물리적 환경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규정하였다.

■ 범죄예방 진단

2016년과 2021년, 2025년의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범죄예방 진단'을 정의하였다. 2016년에는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2020년과 2025년에는 이 내용이 삭제되었다.

■ 범죄예방 강화구역

2016년과 2021년, 2025년의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범죄예방 강화구역'을 정의하였다.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정의는 세 법안이 모두 동일하다.

[표 3-28] 법률안별 정의된 항목

법률안	년도	조	내용	
범죄예방 기본법안	2015	제2조	범죄예방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
			협업적 범죄예방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및 국민 모두가 범죄예방의 주체로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협업하는 모든 활동
			범죄예방 디자인	건축물·시설·공간·제품 및 시스템 등에 있어 범죄예방 기능을 최적화시킨 설계·시설·기술 등
범죄예방 기본법안	2016	제2조	범죄예방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범죄자 교화·개선 프로그램 운영, 범죄예방시스템 구

				축,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실시 등을 의미함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016	제2조	범죄예방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
			범죄예방 디자인	건축물·시설·공간 및 제품 등에 범죄예 기능을 최적화시킨 설계·기술 등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범죄 위험지역 또는 건축물·시설·공간 등에 대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개선, 범죄예방 공동체 활성화 등의 정책적 활동
			범죄예방 진단	경찰이 지역사회와 함께 범죄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죄 위험지역 또는 건축물·시설·공간 등의 물리적·사회적 환경 요인을 분석하여 범죄취약요소를 파악하는 활동
			범죄예방 강화구역	각종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아 특별히 강화된 범죄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020	제2조	범죄예방 디자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감시·접근통제 및 공동체 강화를 고려하여 건축물·시설·공간, 그 밖의 물건을 설계하거나 개선하는 행위
지역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021	제2조	범죄예방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
			범죄예방 진단	범죄 위험지역 또는 건축물·시설·공간 등의 물리적·사회적 환경 요인을 분석하여 범죄취약요소를 파악하는 활동
			범죄예방 디자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감시·접근통제 및 공동체 강화를 고려하여 건축물·시설·공간, 그 밖의 물건을 설계하거나 개선하는 행위
			범죄예방 강화구역	각종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아 특별히 강화된 범죄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025	제2조	범죄예방	지역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
			범죄예방 진단	지역 내 범죄 위험지역 또는 건축물·시설·공간 등의 물리적·사회적 환경 요인을 분석하여 범죄취약요소를 파악하는 활동
			범죄예방 디자인	지역 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감시·접근통제 및 공동체 강화를 고려하여 건축물·시설·공간, 그 밖의 물건을 설계하거나 개선하는 행위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역 내 각종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아 특별히 강화된 범죄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④ 책무

■ 국가의 책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범죄예방 기본법안(2015, 2016, 2025)과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2016)의 4개 법률안이며, 6개의 법률안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다.

2015년 범죄예방 기본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협업적 범죄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2조 협업적 범죄예방의 정의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법인, 단체 및 국민 모두가 시책에 포함된다. 2016년의 범죄예방 기본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업적 범죄예방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대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공공기관의 책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2016년의 범죄예방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시책 또는 정책의 수립이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고 지방자치제와 관할 지방경찰청, 경찰서 등이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2025년의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2016년과 동일하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것을 규정하였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고 상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차이가 있다.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2020, 2021)에서는 국가의 책무는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경찰서의 책무로 변경되었으며, 기존의 내용에 더하여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에 참여할 수 있는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의 활성화가 추가되었다.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2020, 2021, 2025)은 교육·홍보,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 활성화를 책무에 포함한다.

■ 국민의 책무, 지역주민의 책무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대한 법률안은 국민(2016) 또는 지역주민(2020, 2021, 2025)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4개 법률안 모두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도록 한 것은 동일하다. 2016년 법률안에는 국민의 책무에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이후 법률안에서는 삭제되었다.

[표 3-29] 법률안별 책무

법률안	년도	조	제목	내용	
범죄예방 기본법안	2015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업적 범죄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범죄예방 기본법안	2016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범죄예방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범죄예방정책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범죄예방정책의 정책의 정착·확산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정보

					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공공기관	범죄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016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짐 • 범죄예방에 대한 정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로 협력하여 범죄예방 효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	효율적인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할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하여야 함
		제4조	국민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사업을 추진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020	제3조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경찰관서의 책무	• 범죄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짐 •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로 협력하여 범죄예방 효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범죄예방정책 및 범죄예방디자인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홍보 등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에 참여할 수 있는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효율적인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상시적인 상호 협력체계 구축하여야 함	
		제4조	지역주민의 책무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경찰관서가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지역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021	제3조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경찰관서의 책무	• 범죄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짐 •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로 협력하여 범죄예방 효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범죄예방정책 및 범죄예방디자인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홍보 등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에 참여할 수 있는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효율적인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상시적인 상호 협력체계 구축하여야 함	
		제4조	지역주민의 책무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경찰관서가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025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범죄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짐 •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로 협력하여 범죄예방 효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홍보 등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효율적인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상시적인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제4조	지역주민의 책무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경찰관서가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⑤ 계획·사업

■ 범죄예방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범죄예방 기본법안(2015, 2016)에서는 동일하게 범죄예방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등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기본계획의 내용은 정책의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연구·교육·홍보, 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 재원 조달과 운용 등으로 거의 같으나, 2015년 안은 경찰청장이 5년마다, 2016년 안은 법무부장관이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차이가 있다.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의 주체가 2015년 안은 경찰청장, 2016년도 안은 법무부장관 및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등으로 다르며, 2015년도 안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이 관할 지역에 대한 실행계획도 세우도록 하고 있다.

■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범죄예방 기본법안(2016)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하였다. 범죄취약지역을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기관 및 지역 특성에 맞게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범죄예방 디자인 시책

범죄예방 기본법안(2015)과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대한 법률안(2016, 2020, 2021, 2025)의 5개 법안에서 범죄예방 디자인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범죄예방 기본법안(2015)과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대한 법률안(2016, 2020, 2021)의 4개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구역의 공간구조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때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대한 법률안(2025)는 범죄예방 디자인 시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것은 다른 법안들과 동일하지만 「국토기본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구역의 공간구조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건축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물을 심의하거나 방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시책을 수립해야 하는 요건이 변경되었다.

범죄예방 디자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2025년 법안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예방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016년도와 2020년도의 법률안에서는 시책의 수립·시행에 앞서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2021년 안에서는 삭제되었고, 2025년 법안에서는 다시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표 3-30] 법률안별 계획·사업 관련 내용

법률안	년도	조	계획		
범죄예방 기본법안	2015	제5조 (범죄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범죄예방 기본계획	기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주체	경찰청장
				포함 내용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실태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3.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4. 범죄예방 관련 재원의 조달과 운용 5. 그 밖의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자문	범죄예방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통보	계획 수립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통보하여야 함
			범죄예방 시행계획	기간	매년
				주체	경찰청장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함
				자문	범죄예방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통보	계획 수립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통보하여야 함
			관할 지역 범죄예방 실행계획	기간	매년
				주체	지방경찰청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수립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 추진실적을 보고하여야 함
		제7조 (범죄예방 디자인 활성화)	범죄예방 디자인 시책	주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토의 이용, 도시의 개발 및 주거환경 사업 등에 있어 범죄예방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책 마련하도록 함
				의견 수렴	관할 경찰관서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범죄예방 기본법안	2016	제6조 (범죄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범죄예방정책 기본계획	기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주체	법무부장관(관계 중항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포함 내용	1. 정책의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2. 주요 정책의 개요 3. 연구·교육·홍보 4. 정보체계의 구축, 표준화 및 관리·공유 5. 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 6. 그 밖의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심의	범죄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통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제7조 (범죄예	범죄예방정책 연도별 시행계	기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
				주체	법무부장관 및 관계 | 시행계획 수립·시행

		방 정 책 연 도 별 시 행 계 획의 수 립)	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기본계획과 조화되도록 시행계획 수립하여야 함 - 수립한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소관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필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제8조 (관계 중앙 행 정 기 관 의 장 등의 협조)	협조요청	주체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등	
					•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나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제17조 (범죄예방 환경 개선 사업)	범죄예방 환경 개선사업	주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범죄예방을 위한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함 • 지역적 특성, 범죄유발요인 등을 분석하여 범죄취약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기관 및 지역 특성에 맞게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016	제6조 (지역 범죄 예 방 디 자 인 활성화)	범죄예방디자인 시책	주체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토의 이용, 도시의 개발 및 주거환경 사업 등에 있어 범죄예방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의견 수렴	시책의 수립·시행 시 미리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지원 요청	• 필요할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예방을 위한 진단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함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020	제6조 (지역 범죄 예 방 디 자 인 시 책 의 수립·시행)	지역 범죄예방 디자인 시책	주체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구역의 공간구조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견 수렴	시책의 수립·시행에 앞서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지원 요청	• 필요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예방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지역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2021	제7조 (지역 범죄 예 방	지역 범죄예방 디자인 시책	주체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토기본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구역의 공간구조 등에 관한 계획을 수	

관한 법률안		디 자 인 시 책 의 수립·시행)			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지원 요청	• 시책의 수립·시행에 앞서 시·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예방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025	제8조 (지역 범 죄 예 방 디 자 인 시 책 의 수립·시행)	지역 범죄예방 디자인 시책	주체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토기본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구역의 공간구조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건축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물을 심의하거나 방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견 수렴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예방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요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3. 법안 내용상의 쟁점

1) 목적에 대한 접근 방향의 차이와 그로 인한 쟁점

① 목적에 대한 접근 방향의 차이

기존에 제출된 법안의 목적은 모두 '국민이 범죄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생활을 누리는 것'으로 유사하지만, 크게 2016년 '범죄예방 기본법안'과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접근 방향이 다르다. 2016년 '범죄예방 기본법안'의 방향은 "범죄예방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협의와 협업을 통한 범죄예방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범정부 차원의 범죄예방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Top-down 방식이다. 반면,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 방향은 "다양한 치안활동의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하고(2016, 2020)", "다양한 치안활동의 주체들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2021, 2025)",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2016, 2020, 2021, 2025)"하는 것으로, 사회적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 커뮤니티의 자치 능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2, 3세대 CPTED의 개념에 가까운[18] Bottom-up 방식이다. 이러한 접근 방향의 차이로 인하여 법안의 추진 및 운영 주체, 참여 주체, 법안에서 다루는 계획의 위계, 의견수렴 기구의 운영 등에서 쟁점이 발생한다.

가장 먼저 제출된 2015년 범죄예방 기본법안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동시에 다양한 범죄예방 주체가 참여하는'협업적 범죄예방' 시책을 마련하며 범죄에 관한 국가정책을 경찰청이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범죄예방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과 더 가까운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18)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 3세대 CPTED 구현을 위해 추진 중인 법적 근거로 언급됨. 김효원. (2020). Landscape Times. 2020.12.07. (https://www.la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36880) (검색일: 2025.4.18.)

② 쟁점1-법안 수립 및 운영 주체

[표 3-31] 법률안별 주체

주체		범죄예방기본법안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015	2016	2016	2020	2021	2025
계획 수립·시행	정책·시책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	-	-
	기본계획 수립	경찰청장	법무부장관	-	-	-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경찰청장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	-	-	-
	실행계획 수립·시행	지방경찰청장	-	-	-	-	-
	범죄예방디자인 시책·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자문기구, 협의체	자문기구 운영	경찰청장	국무총리	경찰청장	-	-	-
	정책협의체 운영	-	-	-	-	-	경찰청장
	지역협의체 운영	-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범죄예방실무협의체 운영	-	법무부	-	-	-	-
담당 지정	범죄예방정책책임관 지정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	-	-
조사·진단	실태조사	-	법무부장관	-	-	-	-
	범죄예방진단	-	-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범죄정보 작성·관리	범죄통계(범죄예방정보자료)의 작성·관리	-	형사사법기관(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 법원 등)	경찰청장	경찰청장	경찰청장	경찰청장
	범죄통계의 통합관리	-	법무부장관	경찰청장(범죄예방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의무)	경찰청장(범죄예방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재량)	경찰청장(범죄예방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재량)	경찰청장(범죄예방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재량)
범죄정보 공개	범죄통계의 공개	-	법무부장관	-	-	-	-
	범죄위험지수 조사 및 공표	-	-	경찰청장	-	-	-
범죄예방정보 공개	범죄예방정보시스템 제공	-	-	경찰청장(의무)	경찰청장(의무)	경찰청장(의무)	경찰청장(재량)
인증	범죄예방디자인	경찰청장	-	경찰청장	경찰청장	경찰청장	경찰청장

제도	인증·취소						
범죄예방 강화구역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해제	지방경찰청장	–	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시·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시·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범죄예방 강화구역 관리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관서의 장	–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시·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예보·경보	위해에 대한 예보·경보	경찰청장	–	경찰청장	경찰청장	경찰청장	경찰청장
교육·연구·홍보	범죄예방교육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경찰서 (책무)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경찰서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범죄예방 연구·개발	–	–	경찰청장	경찰청장	경찰청장	경찰청장
	지역별 범죄예방 연구·개발	–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범죄예방 활동 홍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경찰서 (책무)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경찰서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연구시설	연구시설 설치	국가(범죄예방공단)	국가(범죄예방디자인센터)	–	–	–	–
자원봉사단체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경찰관서(책무)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경찰관서(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기본계획 수립의 주체

기본계획은 '범죄예방 기본법안'에서만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정책·시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도록 하는 점에서는 2015년과 2016년의 법안이 동일하지만, 2015년 법안은 기본계획 및 시행·실행계획을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이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2016년 법안은 기본계획은 법무부장관, 실행계획은 법무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가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의 주체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은 모든 법안이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6년 범죄예방 기본법안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머지 5개 법안은 '범죄예방디자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범죄예방 기본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차이가 있다.

■ 중심이 되는 주체

2016년의 범죄예방 기본법안은 법무부 및 법무부장관이 중심이 되며 국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2015년 범죄예방 기본법안과 2016년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경찰청장 및 경찰이 중심이 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2020년, 2021, 2025년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경찰청장 및 경찰이 중심이 되며, 지방자치단체와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 법안에 포함되지 않는 주체

2016년 범죄예방 기본법안에는 경찰청장이 운영 주체가 되는 항목이 없으며, 경찰의 참여는 제14조 범죄통계의 작성·관리 및 공개에 범죄통계를 작성해야 하는 형사사법기관으로만 포함되어 있다[19].

반면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에서 국가가 주체가 되는 항목은 2016년 법안의 범죄예방교육, 범죄예방 활동 홍보,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 활성화뿐이며, 이후 2020, 2021년의 법안에서는 삭제되었다.

2025년 법안은 제2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면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

■ 종합

2016년 범죄예방 기본법안에서는 법무부가 중심이 되고 경찰의 역할이, 2020년과 2021년의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경찰이 중심이 되고 국가의 역할이 배제되어 있다. 2015년의 범죄예방 기본법안은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기본계획부터는 경찰이 총괄하는 형태이다.

제346회 국회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에서 2016년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은 '개별 사안에 있어서 경찰청의 적정한 업무 범위 및 업무 수행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고[20], 제349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17년 범죄예방 기본

19) 2022년 대통령훈령 제448호에서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기구인 범죄예방환경개선 협의회를 구성할 때 경찰청의 차장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

법안 관련 '정책적인 측면에서 법무부가 범죄예방과 관련된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하는 것이 맞다'[21]는 의견이 있는 반면, 제346회 국회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에서는 2016년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관련 '범죄예방은 명확하게 경찰의 업무이며 법무부의 경우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기본 업무'[22]라는 의견이 있다. 또한 2016년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법무부에서 반대의견이 개진되었고[23], 2016년 범죄예방 기본법안에 대한 제349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범죄정책 주무부처 결정에 있어서 법무부와 경찰청 입장이 대립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고, 따라서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범죄예방진단, 범죄예방정보관리 등을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24]고 하는 등 법무부와 경찰 간 직역의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책무와 관련하여서는 2016년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제346회 국회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에서 '법안이 지역 범죄예방활동 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관서가 주체가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민의 책무보다는 지역주민의 책무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으며[25] 이후 법안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범죄예방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나중에 발의된 법안일수록 지자체의 역할이 커지는데, 지자체장은 임기가 있어 범죄예방정책의 통일성, 지속가능성 측면이 우려되므로 국가 차원에서 큰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경찰이 중심이 되는 등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무부처 결정이 법안의 제정에 있어 가장 치열하게 대립되는 사안이므로, 법안의 방향이 정책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현장 위주의 예방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모두 포괄하는 형태가 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고 법안에서 포함할 내용 및 주체별 업무 범위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③ 쟁점2-기본계획 수립 여부 및 수립 주체

기본계획은 '범죄예방 기본법안'에서만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범죄예방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는다. 현재 대통령훈령 제448호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규정」에 따라 수립된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은 범죄예방이 아닌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

20) 국회사무처. (2016). p.10.
21) 국회사무처. (2017a). p.33.
22) 국회사무처. (2016). p.18.
23) 국회사무처. (2016). p.18.
24) 국회사무처. (2017a). p.31.
25) 국회사무처. (2016). p.11.

업'에 대한 기본계획이지만, 법무부가 중심이 되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한다는 점에서 2016년 범죄예방 기본법안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표 3-32] 법안별 기본계획과 대통령훈령 제448호에 따른 범죄예방환경개선 기본계획

구분		범죄예방기본법안		대통령훈령 제448호
		2015	2016	2022
기본계획	이름	범죄예방 기본계획	범죄예방정책 기본계획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주체	경찰청장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
	협의대상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기관
	심의기구	-	범죄예방정책위원회	범죄예방환경개선 협의회
	자문기구	범죄예방자문위원회	-	-
	수립기간	5년	3년	5년
	포함내용	1.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2. 범죄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3. 범죄예방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4. 범죄예방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과 운용 5. 그 밖에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의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3. 범죄예방을 위한 주요 정책의 개요 4.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교육·홍보 1. 범죄예방과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 표준화 및 관리·공유 2. 범죄예방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2.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종합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한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연구·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계획	수립주체	경찰청장	법무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법무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
	수립기간	1년	1년	1년
	자문기구	범죄예방자문위원회	-	-
	계획내용 통보대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 및 단체	-	-
	실적보고 대상	-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
실행계획	수립주체	지방경찰청장	-	-
	실적보고 대상	경찰청장	-	-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2015년 범죄예방 기본법안 - 범죄예방 기본계획

2015년 법안에서는 범죄예방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경찰청장이 수립하며, 이에 따

라 지방경찰청장이 관할 지역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경찰청장에게 실적을 보고하여 모든 계획을 경찰청장이 총괄하는 형태이다. 협의나 심의에 대한 내용은 없고 범죄예방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며,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경찰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경찰청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어 구성의 권한이 경찰청장에게 있다.

■ 2016년 범죄예방 기본법안 – 범죄예방정책 기본계획

2016년 법안의 범죄예방정책 기본계획은 법무부장관이 수립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범죄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범죄예방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은 제7조제1항에서 법무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가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7조제2항부터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주체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고 법무부장관에게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시행계획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수립·시행보다는 관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 종합

2015년 법안은 '범죄예방 기본계획'으로 경찰청장이 총괄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2016년 법안은 '범죄예방정책 기본계획'으로 법무부장관이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기본계획에서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항목은 유사하지만, 2016년의 '범죄예방정책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주요 정책의 개요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국가행정 규모의 정책 중심이다.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2016년, 2020년, 2021년, 2025년의 4개 법안 모두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정책적 접근보다는 지역 및 현장 현황 중심으로 접근하도록 하고 있다.

앞에서의 쟁점과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상위 계획의 정책에 따라 현장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한다면 하위 계획의 단계, 단계별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 업무의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인지 등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④ 쟁점3-의견수렴 기구의 운영

■ 자문·심의·정책수립 기구

2015년 범죄예방 기본법안의 범죄예방자문위원회는 경찰청장이 구성에 모든 권한이 있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16년 범죄예방 기본법안의 범죄예방정책위원회는 심의기구로, 국무총리 소속에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참

여하여 사실상 범죄예방 정책 관련 정부 부처들의 협의기구라고 볼 수 있다. 2016년 범죄예방 기반조성 법률안에도 자문기구에 대한 항목이 있으나, 경찰청장이 둘 수 있다 정도로만 언급되어 있다.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지 않는 '범죄예방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2016년 법안에만 자문기구가 간단하게 언급되었고 2020년과 2021년의 법안에서는 규제적 측면을 완화하기 위해 삭제하였다[26].

2025년 법안의 범죄예방정책협의체는 범죄예방에 관한 정책 수립,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별 사업에 관해 협의·조정 등 정책결정 및 협의기구의 역할을 하며, 위원장은 경찰청장, 위원은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다.

[표 3-33] 법안별 자문·심의기구

구분	범죄예방기본법안		범죄예방 기반조성 법률안	
	2015	2016	2016	2025
이름	범죄예방자문위원회	범죄예방정책위원회	-	범죄예방정책협의체
설치 권한	경찰청장이 설치	국무총리 소속	경찰청장이 설치할 수 있음	경찰청장 소속
역할	자문	심의·조정	자문	정책 수립, 사업 협의·조정
	기본계획·시행계획 자문	•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제13조에 따른 범죄예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범죄예방 관련 재원의 배분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 범죄예방정책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 범죄예방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 협조·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범죄예방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요청하는 사항	• 범죄예방디자인 정책의 수립·시행 • 범죄예방 분야의 참여치안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별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	위원장 1인 포함 10인 이상 30인 이내	위원장 1인 포함 25명 이내	-	-
위원 구성	관계 공무원, 범죄예방 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	-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관계

26) 국회사무처. (2019). p.4.

	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경찰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앙행정기관의 장 •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위원 임기	–	2년	–	–
위원장	위원 중 경찰청장이 지명	국무총리	–	경찰청장
위임	위원회의 운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	협의체의 구성 및 협의·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지역협의체

'범죄예방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모두 지역협의체를 두도록 한다.

2020년과 2021년의 법안에서 지역협의체에 대한 내용은 동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지역치안 협의체의 결정을 반영하여 범죄예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2025년 법안의 지역 범죄예방디자인협의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할 수 있으며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지역 범죄예방협의체의 결정이 지역 범죄예방에 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하였다. 2016년 법안에서는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지정 및 해제 시 지역협의체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이후 법안에서는 삭제되었다.

2016년, 2020년, 2021년, 2025년 법안의 지역협의체 구성은 경찰, 관계기관, 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모두 동일하며, 2020년과 2021년, 2025년 법안에서는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표 3-34] 법안별 지역협의체

구분	범죄예방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2016	2020	2021	2025
이름	범죄예방디자인 협의체	지역치안 협의체	지역치안 협의체	지역범죄예방협의체
설치 권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할 수 있음
역할	정책 수립			
	–	–	–	–
	협의·조정			
	–	–	–	–
	자문·협의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등	범죄예방과 관련된 모든	범죄예방과 관련된 모든	범죄예방과 관련된 모든

	범죄예방정책의 효과적 추진	사업 등 범죄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	사업 등 범죄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	사업 등 범죄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
	심의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 및 해제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지역치안 협의체의 결정을 반영하여 범죄예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지역치안 협의체의 결정을 반영하여 범죄예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지역 범죄예방협의체의 결정이 지역 범죄예방에 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함
위원의 수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위원 구성	경찰, 관계기관, 전문가, 지역주민 등	경찰, 관계기관, 전문가, 지역주민 등	경찰, 관계기관, 전문가, 지역주민 등	관할 경찰관서, 관계기관, 전문가, 지역주민 등
위원 임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위원장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 종합

의견수렴 기구는 기본계획 등 국가 규모의 정책 수립 단계의 자문·심의·정책수립기구와, 지역에 밀착되어 그 지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지역협의체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자문기구 또는 심의기구를 둘 경우, 다양한 참여주체의 의견이 반영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협의체는 범죄예방과 관련된 모든 사업 등 범죄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둔다고 하였으나 범죄예방 정책을 수립할 때 어떻게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지는 모호하다. 제353회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에서 '지역 범죄예방디자인 협의체는 지자체의 권한이 너무 커지는 것이 우려되므로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만들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27]. 지역협의체를 둘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되어 있어 지역협의체가 난립될 수 있으며, 기초자치단체 협의체 간에 의견이 다르거나 상반될 경우 광역자치단체에서 정책에 어떤 의견을 반영하여야 할지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지역협의체의 구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공정성, 의견 수렴의 다양성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7) 국회사무처. (2017b). p.35.

2) 지역주민의 범죄예방 책무에 대한 쟁점

■ 지역주민의 책무 규정

범죄예방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범죄예방이 경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국민)의 책무임을 규정한다.

2016년 법안에 포함되었던 '국민은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국민들에게 범죄예방에 대한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협조의무만 남기고 삭제되었다[28].

■ 종합

2020년과 2021년 법안에서 지역주민의 책무로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경찰관서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최대한 협조' 표현이 모호하다. 또한 2016년 범죄예방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346회 국회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에서 '주민들, 국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경찰이 권한을 가지고 강제하는 내용은 법안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발언이 있었다[29].

따라서 지역주민의 협조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범죄예방에 대한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등의 문제가 없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과도한 권한 및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

① 범죄·범죄예방 데이터의 수집 및 공표

[표 3-35] 법안별 범죄 데이터 관련 내용

구분	범죄예방 기본법안	범죄예방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2016	2016	2020	2021	2025
범죄예방 관련 정보 수집·관리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경찰청장	경찰청장	경찰청장
	• 3년마다 • 범죄예방 활동의 현황, 범죄예방정책 추진 상황 등 종합실태를 조사	• 범죄통계, 범죄위험지도, 범죄예방정책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범죄예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무)	• 범죄통계, 범죄위험지도, 범죄예방정책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범죄예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재량)	• 범죄통계, 범죄위험지도, 범죄예방정책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범죄예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재량)	• 범죄통계, 범죄위험지도, 범죄예방정책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범죄예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재량)

28) 국회사무처. (2019). p.17.

29) 국회사무처. (2016). p.15.

범죄통계 작성·관리	형사사법기관 • 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 법원 등 • 정확한 지역별·유형별 범죄통계 작성·관리	–	–	–	–
범죄통계 통합 관리	법무부장관	–	–	–	–
범죄예방 실태조사 결과 활용	법무부장관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	–	–	–	–
범죄관련 데이터 공개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경찰청장	경찰청장	경찰청장
	범죄예방 활동이나 학술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당한 범위 내에서 범죄 통계를 공개할 수 있음	관계 행정기관 및 국민이 범죄위험수준을 진단하고 연구·개선하는 데 범죄예방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관계 행정기관 및 국민이 범죄위험수준을 진단하고 연구·개선하는 데 범죄예방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제10조제3항)	관계 행정기관 및 국민이 범죄위험수준을 진단하고 연구·개선하는 데 범죄예방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관계 행정기관 및 국민이 범죄위험수준을 진단하고 연구·개선하는 데 범죄예방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음 (제11조제3항)
	국민이 범죄예방 관련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여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개인정보 보호	–	–	3항에 따라 범죄예방정보를 활용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서는 안됨	–	3항에 따라 범죄예방정보를 활용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서는 안됨
자료요청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	–	–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음	범죄예방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자료요청에 대한 협조 의무	요청받은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	–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위임	법무부령	대통령령	대통령령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
	범죄예방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범죄예방정보의 수집·관리, 범죄예방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활용 등에 필	범죄예방정보의 수집·관리, 범죄예방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활용 등에 필	범죄예방정보의 수집·관리, 범죄예방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활용 등에 필	범죄예방정보의 수집·관리, 범죄예방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활용 등에 필

		요한 사항	요한 사항	요한 사항	요한 사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 범죄예방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

2015년 범죄예방 기본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이 모두 범죄예방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다.

2016년 범죄예방 기본법안은 법무부장관이 3년마다 범죄예방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에서 작성한 범죄통계를 총괄하여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범죄예방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모두 경찰청장이 범죄통계, 범죄 위험지도, 범죄예방 정책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범죄예방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범죄예방정보통합관리시스템은 2016년 의무사항에서 2020년 재량사항으로 변경되었다.

■ 범죄관련 데이터 공개

2016년 범죄예방 기본법안은 범죄통계는 범죄예방 활동이나 학술 연구 등에, 범죄예방 관련 정보는 국민이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였다.

‘범죄예방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모두 관계 행정기관 및 국민이 범죄위험수준을 진단하고 연구·개선하는 데 범죄예방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6년, 2020년, 2021년 법안에서는 의무였으나 2025년 법안에서는 재량으로 변경되었다.

2020년에 시민단체의 우려를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2021년 삭제되었다가 2025년 법안에서 다시 포함되었다.

■ 자료요청 권한

2016년 범죄예방 기본법안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6년 범죄예방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범죄예방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이후 법안에서는 삭제되었다.

■ 종합

시민단체(참여연대, 공권력감시대응팀)에서 '범죄예방이라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목적 아래 경찰의 권한을 확대시키고 특히 광범위한 정보 수집·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점, 기본권 제한요소나 개인정보 침해에 대비한 구체적인 규율 없이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할 때 폐기 또는 전면 재검토 의견'을 내었다[30]. 이에 대해 경찰은 '범죄예방진단은 건축물·시설·공간 등에 대한 사물진단, 범죄예방정보는 예시된 범죄통계·위험지도·예방정책과 지역통계자료 등으로 개인정보 등 광범위한 정보 수집과는 연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2020년도 법안에 추가하였다. 이후 2021년 법안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2025년 법안에서 다시 포함되었다.

범죄예방 정보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2016년 범죄예방 기본법안의 법무부장관은 형사사법기관의 범죄통계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민간에 자료요청을 할 권한까지 더하여 범죄관련 데이터에 대해 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제346회 국회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에서 전문위원이 2016년 범죄예방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법안이 지향하는 범죄예방활동이 다양한 치안활동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업적 범죄예방활동이라는 점에서 볼 때 경찰청장에게 별도의 자료요청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31]며 자료요청 조항 삭제 의견을 냈으며, 경찰은 제353회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에서 '원활하게 범죄예방 진단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1인 가구율이나 외국인 거주율, 인구규모·밀도, 청소년·노령자 인구비 등의 자료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면 더 원활하게 범죄예방 활동을 할 수 있겠다'[32]는 의견을 냈다.

이처럼 범죄예방 정보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크다는 다수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므로, 데이터의 수집, 관리 및 공개, 관련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최소화되도록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② 범죄예방 진단

30) 범죄예방정책과. (2019). p.5
31) 국회사무처. (2016). p.12.
32) 국회사무처. (2017b). p.32

[표 3-36] 법안별 범죄예방 진단 내용

구분	범죄예방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2016	2020	2021	2025
주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소속 경찰관		
대상	• 관할지역 전체 • 관할 지역 내 범죄 위험 지역 또는 건축물·시설·공간	관할구역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건축물·시설·공간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지역주민 등으로부터 관할구역 내 건축물·시설·공간 등에 대한 범죄예방디자인 실태조사 및 그 밖의 범죄예방을 위한 진단을 요청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물·시설·공간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지역주민으로부터 관할구역 내 건축물·시설·공간 등에 대한 범죄예방디자인 실태조사 및 그 밖의 범죄예방을 위한 진단을 요청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물·시설·공간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지역주민으로부터 관할구역 내 건축물·시설·공간 등에 대한 범죄예방디자인 조사 및 그 밖의 범죄예방을 위한 진단을 요청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
협의	–	조사 대상 건축물·시설·공간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를 거침	진단 대상 건축물·시설·공간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과 협의를 거침	진단 대상 건축물·시설·공간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과 협의를 거침
요청 권한	–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제1항에 따른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예방진단을 요청할 수 있음 (제7조제2항)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요청에 대한 협조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
	요청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요청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	–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	–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요청에 따라야 함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범죄예방 진단 경찰관의 권한	범죄예방진단을 하는 경찰관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	범죄예방진단을 하는 경찰관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	–	–

	류 등을 열람할 수 있음	류 등을 열람할 수 있음		
진단결과 통보 의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설·건물주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조사 대상 건축물·시설·공간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조사 대상 건축물·시설·공간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지원	-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	-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진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진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결정권한	대통령령(위임)	대통령령(위임)	대통령령(위임)	경찰청장
	범죄예방진단의 절차 및 방법, 그 결과의 기록·유지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	범죄예방진단의 절차 및 방법, 범죄예방진단 결과의 기록·유지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	범죄예방진단의 절차 및 방법, 범죄예방진단 결과의 기록·유지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	범죄예방진단의 절차 및 방법, 범죄예방진단 결과의 기록·유지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표 3-37] 법안별 범죄예방 강화구역, 범죄예방 디자인 조항에서의 범죄예방 진단 내용

구분		범죄예방기본법안	범죄예방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2015	2016	2020	2021	2025
범죄예방 강화구역	주체	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대상	지정된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지정된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지정된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지정된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하여 시·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예방진단 협조를 요청하여야 함	지정된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합동점검단	-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을 편성하여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을 편성하여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할 수 있음	시·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을 편성하여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할 수 있음
	진단결과 활용	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진단결과와 지방자	진단결과와 해당 지	진단 결과에 따른	범죄예방진단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범죄예방 강화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범죄예방 강화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조치를 하여야 함	에 따라 소속 경찰관 증원 배치,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 순찰활동 증대 요청, 물리적 환경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의 장과 협의하여 범죄예방 강화구역 내의 시설이나 지역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또는 행사의 관리자·사업자에게 시설·환경개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자체 경비 인력의 증원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범죄예방디자인	주체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진단요청	-	지역 범죄예방디자인 시책의 수립·시행 시 필요한 때	범죄예방디자인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범죄예방디자인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범죄예방디자인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예방을 위한 진단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예방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예방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예방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협조의무	-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함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요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요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범죄예방 진단의 주체

범죄예방진단의 주체는 2016년과 2020년 법안에서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었으나, 2021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되었고, 2025년 다시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변경되었다. 2021년 법안의 경우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자치경찰제와 관련된 변화인 것으로 추정된다.

■ 범죄예방 진단과 관련된 권한

2016년, 2020년 법안에서는 범죄예방 진단의 주체인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2021년 법안에서 진단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바뀌면서 자료요청이 아니라 시·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025년 법안에서는 진단의 주체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바뀌면서 진단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진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6, 2020년 법안에는 범죄예방 진단 경찰관이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나 2021년과 2025년 법안에서는 삭제되었다.

■ 범죄예방 진단의 대상 및 협의

2016년 법안에서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단독으로 관할지역 전체 또는 관할지역 내 범죄 위험 지역, 건축물·시설·공간에 범죄예방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2020년 법안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건축물·시설·공간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지역주민 등으로부터 범죄예방디자인 실태조사 및 그 밖의 범죄예방을 위한 진단을 요청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범죄예방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2021년 법안에서는 건축물·시설·공간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지역주민으로부터 범죄예방디자인 실태조사 및 그 밖의 범죄예방을 위한 진단을 요청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범죄예방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2025년 법안에서는 제7조제1항에서 건축물·시설·공간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지역주민으로부터 범죄예방디자인 실태조사 및 그 밖의 범죄예방을 위한 진단을 요청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하여 범죄예방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2020년 법안과 2021년 법안에서는 대상 건축물·시설·공간 등의 소유자·관리자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1년과 2025년 법안에는 협의의 대상에 점유자가 추가되었다. 제346회 안전행정소위에서 전문위원이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할 때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과의 협의 또는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이들과의 협의를 통해 경찰이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33].

■ 타 조항에서 범죄예방 진단의 대상(범죄예방 강화구역, 범죄예방 디자인 조항)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내용이 있는 5개 법안 모두 범죄예방 강화구역에서는 범죄예방 진단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5년 범죄예방 기본법안을 제외하고 모든 '범죄예방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3) 국회사무처. (2016). p.12.

범죄예방 디자인과 관련한 내용은 '범죄예방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에만 있으며, 4개 법률안 모두 지역 범죄예방디자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범죄예방디자인시책의 수립·시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범죄예방 진단을 요청할 수 있다.

■ 종합

범죄예방진단은 '범죄예방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에만 포함되어 있다.

경찰은 2016년부터 '범죄예방진단팀(CPO)'을 전국 경찰서에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현재 '지역 전반의 범죄와 무질서에 대한 취약요인을 진단·분석하고 경찰 내부·외부(민간·자치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범죄취약요인을 개선하는 업무를 담당'[34]하고 있다. 범죄통계, Pre-cas(범죄 예측 시스템), Geo-pros(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 데이터 분석 후 현장 실사, 주민 인터뷰 등을 통해 범죄취약요소를 분석·발견하고, 개선을 위한 범죄예방활동으로 단기적으로는 지역경찰 순찰, 합동 순찰 등 경찰력 보강 활동, 장기적으로는 범죄예방캠페인 및 CPTED 사업 등이 있다. 법률안에서의 범죄예방 진단은 자료 요청 권한이 주된 쟁점이었으나, 현재에는 범죄 관련 데이터베이스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범죄취약지역을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 범죄예방디자인시책이 법안에 포함된다면 범죄예방 진단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법률안에서는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지정 후 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석 시스템의 발전 정도에 따라 지역의 범죄예방 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강화구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범죄통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료수집과 관련된 조항을 둘 경우 범죄예방 진단에 사용될 데이터도 포괄될 수도 있을 것이며, 범죄예방 진단의 결과가 지역 전체의 범죄예방 관련 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③ 범죄예방 강화구역에서의 조치

[표 3-38] 법안별 범죄예방 강화구역 내용

구분		범죄예방기본법안	범죄예방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2015	2016	2020	2021	2025
지정	주체	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지정 요건	범죄 등 각종 위해의 발생 우려가 높	각종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아 특별한	각종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아 범죄예	각종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아 범죄예	각종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아 범죄예

34) 경찰청 공식 블로그. (2024). (https://blog.naver.com/polinlove2/223618168439). (검색일: 2025.6.6.)

		아 범죄예방대책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정할 수 있음	범죄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방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방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 제9조에 따른 지역범죄예방디자인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의 의견을 들어 지정할 수 있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지정할 수 있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지정할 수 있음
	대상	특정 지역 또는 시설	특정 지역 또는 시설	특정 지역이나 시설	특정 시설이나 지역	특정 시설이나 지역
관리	범죄예방진단	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지방자치단체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지정된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지정된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하여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지정된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하여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을 편성하여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할 수 있음	• 지정된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하여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예방진단 협조를 요청해야 함 •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협조요청에 따른 범죄예방진단을 함께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지정된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하여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을 편성하여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할 수 있음
	계획수립	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	–	–
		진단결과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범죄예방 강화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진단결과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범죄예방 강화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경찰증원	관할 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 가용 경찰관을 증원하고, •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청장 또는 다른 지방경찰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가용 경찰관을 증원하고, •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청장 또는 다른 지방경찰청장에게 응원(應援)을 요청할 수 있음	• 소속 경찰관을 증원·배치하고,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직무 응원법」제1조에 따라 다른 지방경찰청장 등에게 응원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범죄예방진단 결과에 따라 소속 경찰관 증원 배치 (제8조제1항)	지정된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소속 경찰관을 증원·배치

	그 외 조치	–	관할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함 1. 지역 협업체계의 구축 2. 지역주민 대상 교육 및 홍보 3. 순찰·불심검문·차량수배 등 범죄예방활동 강화 4. 피난 또는 통제 체계의 구축 5. 그 밖에 관할 지역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 순찰활동 증대 요청, • 물리적 환경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제8조제1항)	–
	조치 요청 권한	관할 경찰관서의 장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 범죄예방 강화구역 내의 시설이나 지역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또는 행사의 관리자·사업자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자체 경비 인력의 증원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제10조제2항)	관할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 범죄예방 강화구역 내의 시설이나 지역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또는 행사의 관리자·사업자에게 시설·환경개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자체 경비 인력의 증원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제8조제3항)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 범죄예방 강화구역 내의 시설이나 지역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또는 행사의 관리자·사업자에게 시설·환경개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자체 경비 인력의 증원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제8조제3항)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 범죄예방 강화구역 내의 건축물·시설·공간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물리적 환경 개선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제8조제3항)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 범죄예방 강화구역 내의 시설이나 지역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또는 행사의 관리자·사업자에게 시설·환경개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자체 경비 인력의 증원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제10조제4항)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경찰청장 제3항에 따른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시설·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제3항에 따른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시설·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물리적 환경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제4항에 따른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물리적 환경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해제	주체	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시·도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시·도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요건	•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의 필요성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의 필요성이 해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의 필요성이 해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의 필요성이 해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의 필요성이 해

		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되거나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해제함	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거나 • 제9조에 따른 지역 범죄예방디자인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해제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제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제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제함
위임		대통령령	대통령령	대통령령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
		•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지정 및 강화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의 범죄예방 강화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지정·유지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지정·유지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지정·유지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의 주체

2015년 범죄예방 기본법안, 2016년과 2020년의 범죄예방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1년과 2025년 범죄예방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지정 주체의 자격이 완화되었다.

■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요건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지정요건 중 '각종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아 특별한 범죄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동일하며, 2015년 범죄예방 기본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다.

'범죄예방 기본법안'은 모두 지정 시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2016년 법안의 경우 추가적으로 제9조에 따른 지역 범죄예방디자인 협의체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2016년 법안과 관련하여 제346회 안전행정소위에서 전문위원이 '지역 범죄예방디자인 협의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기구 성격을 띠고 있는 점을 볼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관리 및 조치

범죄예방 강화구역 조항이 있는 모든 법안은 지정된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하여 범죄예방 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조치로 모든 법안에서 경찰관을 증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1년과 2025년 범죄예방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제외한 세 법안에서는 경찰청장 또는 다른 지방경찰청장에게 응원(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1년 범죄예방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응원경찰관에 관련된 내용이 삭제되고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 순찰활동 증대 요청, 물리적 환경 개선 등이 추가되었고, 2025년 법률안에서는 응원경찰관,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 순찰활동 증대 요청, 물리적 환경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 삭제되었다.

2016년 범죄예방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하여 순찰·불심검문, 차량수배 등 강력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346회 안전행정소위에서 2016년 범죄예방 기본법안과 관련하여 불심검문, 피난·통제 체계의 구축 등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상 자유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어 삭제의견을 냈으며[35], 시민단체(참여연대, 공권력 감시팀)에서도 경찰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여 경찰의 감시권력 확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였다[36].

2015년 범죄예방 기본법안과 2016년, 2020년 범죄예방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범죄예방 강화구역 내의 시설이나 지역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또는 행사의 관리자·사업자에게 시설·환경개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자체 경비 인력의 증원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2021년 범죄예방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물리적 환경 개선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로 포괄적으로 변경되었다.

제346회 안전행정소위에서 '경찰관의 증원·배치가 기본적인 범죄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밖의 조치들은 범죄취약요소 진단활동을 통해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37].

■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지원

2015년 범죄예방 기본법안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자체 경비 인력의 증원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016년과 2020년의 범죄예방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시설·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21년과 2025년의 범죄예방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물리적 환경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의 대상이 더 포괄적으로 변경되었다.

35) 국회사무처. (2016). p.12.
36) 범죄예방정책과. (2019). p.5
37) 국회사무처. (2016). p.12.

■ 종합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조치에서 물리적 환경 개선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범죄예방 환경 개선 디자인 시책과 중복되는 등 물리적 개선이 여러 조항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또한 범죄예방 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만큼 그 결과를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조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2021년 범죄예방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범죄예방 강화구역에서의 조치 및 비용 지원의 대상이 더 포괄적으로 변경되었는데, 지역에 밀착하는 방향의 변화로 보이는 만큼 관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행정적·재정적 지원

[표 3-39] 법률안별 행정적·재정적 지원

구분		범죄예방기본법안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2015	2016	2016	2020	2021	2025
범죄예방 강화구역	법조항	제10조제3항	–	제8조제4항	제8조제4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5항
	행정 지원 주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	–	–	–
	재정적 지원 주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	–	–	–
	비용 지원 주체	–	–	경찰청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	법조항	제12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8조제3항	–	제9조제4항	–
	행정적 지원 주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	–
	재정적 지원 주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	–
	비용 지원	–	–	–	–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조치에 자원봉사단체 활동 증대 포함	–
범죄예방 진단	법조항	–	–	–	–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10조제3항 (범죄예방강화구역)
	행정적 지원 주체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재정적 지원 주체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범죄 예방 환경 개선	법조항	–	제17조제1항	–	–	–	–
	행정적 지원 주체	범죄예방 강화 구역에 대한 조치에 CCTV 설치 등에 대한 지원 포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	–	–	–
	재정적 지원 주체	범죄예방 강화 구역에 대한 조치에 CCTV 설치 등에 대한 지원 포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	–	–	–
	비용 지원	–	–	범죄예방 강화 구역에 대한 조치에 시설·환경 개선 비용 지원 포함	범죄예방 강화 구역에 대한 조치에 시설·환경 개선 비용 지원 포함	범죄예방 강화 구역에 대한 조치에 물리적 환경 개선비용 지원 포함	범죄예방 강화 구역에 대한 조치에 물리적 환경 개선비용 지원 포함
민간 단체 지원	법조항	제13조제5항	–	–	–	–	–
	민간단체 지원사업	범죄예방공단	–	–	–	–	–
관련 기관·단체 지원	법조항	제3조제4항	–	–	–	–	
	정보제공 주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	–	–	
	재정 지원 주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	–	–	
범죄 예방 연구·개발	법조항	–	–	–	–	–	제15조 제2항
	필요한 지원	–	–	–	–	–	경찰청장
지역별 범죄 예방 연구·개발	법조항	–	–	–	–	–	제16조 제2항
	필요한 지원	–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의 보조	법조항	제13조제6항	–	제15조제6항	제15조	제15조	
	재정적 보조 대상	범죄예방공단	–	범죄예방디자인센터	–	–	
	비용 보조 대상	범죄예방공단	–	범죄예방디자인센터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물리적 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물리적 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은 'CCTV 설치'부터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까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법안에서 포함하고 있어 가장 필요성이 높은 조항으로 보인다.

범죄예방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2016년 범죄예방 기본법안에서의 지원 대상은 '범죄예방 환

경개선 사업'인 반면, 여타 다른 법안에서의 지원 대상은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조치' 중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차이가 있다. 반면 제346회 안전행정소위에서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운영이 한시적 대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만큼 경찰력 강화 등과 같은 즉응조치가 중점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고 범죄예방 환경 개선에 관한 계획은 범죄예방디자인시책과 상당부분 중복될 수 있다'는 전문위원의 의견[38]이 있었다.

2016년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경찰청장이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시설·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제346회 안전행정소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등 관계 부처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다[39].

■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이 2020년과 2025년 범죄예방 기반 조성을 위한 법률안을 제외한 모든 법안에서 규정되어 있어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법안에서 삭제된 것은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 지원은 부담이 된다는 기재부와 서울시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40].

2021년 법안에는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 지원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다시 추가되지 않고 대신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조치에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 순찰 활동 증대가 포함되어 평상시가 아닌 범죄예방 강화구역에서의 활동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종합

시설 및 물리적 환경의 개선은 특정 지역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지역 특성에 따른 우선순위가 있는 만큼,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되면 우선적으로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대상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제346회 국회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에서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 활성화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언급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의지하기보다는 경찰 스스로가 자체 예산을 확보하든지 별도의 입법조항을 마련해서 근거규정을 갖고 치안업무 보조, 주민단체에 대한 교육훈련, 안전보장, 피해나 사고 시에 보험이나 보상, 기본적인 수당 지급 등을 하는 것이 반드시

38) 국회사무처. (2016). p.12.
39) 국회사무처. (2016). pp.12-13.
40) 범죄예방정책과. (2019). p.4.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41]. 제353회 국회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에서 '경찰은 별도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지자체와 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경찰 측의 의견에 '경찰이 지자체를 통해 예산을 지원받을 경우 지자체에 예속되기 때문에 지자체를 견제하기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지역협의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제기되었다[42]. 지자체 예산을 활용하게 될 경우 지자체의 예산 규모에 따라 지역 간 범죄예방 수준의 격차가 벌어지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자체 예산에 대한 경찰의 지나친 의존을 막고 지자체 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의 비용 보조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인증제 운영 시 운영 주체, 건축허가와의 관계 문제

[표 3-40] 법안별 범죄예방디자인 인증 관련 내용

구분	범죄예방기본법안	범죄예방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2015	2016	2020	2021	2025
주체	경찰청장	경찰청장	경찰청장	경찰청장	경찰청장
목적	범죄예방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할 수 있음	범죄예방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할 수 있음	범죄예방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할 수 있음	범죄예방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할 수 있음	범죄예방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할 수 있음
신청 자격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한 건축물·시설·공간 및 제품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한 건축물·시설·공간 및 제품 등의 소유자, 관리자, 생산자 등	-	-	-
신청 대상	경찰청장에게 신청	경찰청장에게 신청	-	-	-
인증 표시	인증을 받을 경우 인증 받았음을 표시할 수 있음	인증을 받을 경우 인증 받았음을 표시할 수 있음	-	-	-
인증 광고	-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광고에 이용할 수 있음	-	-	-
미인증 표시·광고 제한	인증을 받지 않은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면 안됨	인증을 받지 않은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안됨	인증을 받은 건축물·시설·공간 및 제품 등이 아닌 것은 범죄예방디자인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안됨	인증을 받은 건축물·시설·공간 및 제품 등이 아닌 것은 범죄예방디자인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안됨	인증을 받은 건축물·시설·공간 및 제품 등이 아닌 것은 범죄예방디자인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안됨

41) 국회사무처. (2016). pp.16-17.

42) 국회사무처. (2017b). pp.33-34.

위임	대통령령	대통령령	대통령령	대통령령	대통령령
	인증의 기준·절차 및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인증의 기준·절차 및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제4항)	인증의 기준·절차 및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제4항)	인증의 기준·절차 및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제4항)	인증기준·인증절차 및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제4항)
위탁	경찰청장	–	경찰청장	경찰청장	경찰청장
	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증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전문기관 설립	–	국가	–	–	–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제 시행 등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범죄예방디자인센터를 설립할 수 있음			
인증 취소	–	경찰청장	경찰청장	경찰청장	경찰청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단,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해야 함	단,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해야 함	단,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해야 함	단,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해야 함
		1. 제13조제4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인증 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중요 정보나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3.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4. 기타 인증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인증 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중요 정보나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3.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4. 기타 인증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인증 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중요 정보나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3.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4. 기타 인증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제13조제4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인증 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중요 정보나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3.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4. 기타 인증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인증 취소 청문	–	경찰청장	경찰청장	경찰청장	경찰청장
		인증을 취소하기 위	인증을 취소하기 위	인증을 취소하기 위	인증을 취소하기 위

		해서는 사전에 청문을 하여야 함	해서는 사전에 청문을 하여야 함	해서는 사전에 청문을 하여야 함	해서는 사전에 청문을 하여야 함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범죄예방 인증제의 주체

범죄예방 인증제 조항이 있는 모든 법안에서 인증제도를 운영·시행하는 주체는 경찰청장이다.

2015년 범죄예방 기본법안과 2016년 범죄예방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경찰청장이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신청자격, 신청 대상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범죄예방 인증업무 위탁

2016년 범죄예방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에 인증업무 위탁에 관한 조항이 있다. 2015년 범죄예방 기본법안에서는 인증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인증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20년과 2021년, 2025년의 범죄예방 기반조성을 위한 법률안에서는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인증제는 건축물 등 물리적 시설에 대한 것으로 이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 운영 주체가 필요하므로, 인증기관은 그 전문성이 충분히 담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43].

■ 미인증 시 표시·광고 제한

모든 법안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고 있으며, 범죄예방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광고도 추가적으로 금지한다.

■ 종합

현재 민간단체인 (사)한국CPTED학회에서 CPTED 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며, 2010년부터 다수의 인증실적을 보유하고 있다[44]. 경찰청에서 직접 인증제를 운영할 경우 민간단체에서 취득한 인증은 홍보할 수 없게 되어 기 취득자들에게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건축허가와 관련하여서는 건축허가 내의 절차인지, 별개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며, 두 경우 모두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필요하므로 녹색건축인증, BF인증과 같이 주무부서가

43) 법률안 검토 내부자료.

44) (사)한국CPTED학회 인증 홈페이지. (https://kca.cpted.or.kr/kr/center/cetner_list.php) (검색일: 2025.6.6.)

국토교통부와 공동 운영하는 사례를 참고하여 인증제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45]. 또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 따라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인증제와의 중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46].

45) 법률안 검토 내부자료.
46) 법률안 검토 내부자료.

Chapter. 4

제4장

범죄예방 환경 조성 관련 법제정(안) 마련

1.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안)」 개선방안 제안
2. 전문가 FGI를 통한 법령 체계화 방안
3.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안)」 제안

1.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안)」 개선방안 제안

1) 통합적이며 단계적인 체계 구축

① 기존에 제출된 법률안에서 제안된 내용을 통합

■ 법안의 목적과 책무를 통합적으로 규정

- 법안의 목적

2015년 범죄예방 기본법, 2016년과 2020년의 범죄예방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제안이유로 CPTED 시스템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정착을 들었으며, 2016년 범죄예방 기본법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범죄예방정책 추진체계 마련을 들었다. 2021년의 지역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기반 조성을 위한 법률안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역치안업무를 수행할 권한과 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제안 이유로 들었으나, 몇 가지 조항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바뀐 것을 제외하면 2020년의 범죄예방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과 거의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제출된 법안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의 신체 및 재산의 보호'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위하여 제시한 접근방향을 종합하여 법안의 목적을 '범죄예방정책의 수립과 추진', '범죄예방환경 조성기반 구축', '범죄예방 지원체계'의 세 가지로 규정한다.

- 책무

기존 법안의 '관할 경찰서'를 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인 '시·도 경찰관서'로 수정하여 책무를 규정하고, 자치경찰 제도의 도입을 반영하여 자치경찰위원회를 주체로 추가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공공기관의 책무는 삭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지역주민의 책무가 아니라 국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존의 협조가 아닌 적극 참여 및 협력으로 강화한다.

[표 4-1]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 주체별 책무

주체	조	항	책무	
국가	3	1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	책무
		1	범죄예방에 관한 종합적·체계적 정책을 수립	의무
		2	1항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	노력
		3	범죄예방에 대한 정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찰관서와 협력	노력
		4	범죄예방정책 및 범죄예방환경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홍보 등을 활성화	노력
		7	범죄예방정책의 정착·확산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	재량
지방자치단체	3	1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	책무
		1	범죄예방에 관한 종합적·체계적 정책을 수립	의무
		2	1항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	노력
		3	범죄예방에 대한 정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 시·도 경찰관서와 협력	노력
		5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 활성화	노력
		6	효율적인 범죄예방환경 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상시적인 상호협력체계 구축	의무
		7	범죄예방정책의 정착·확산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	재량
시·도 경찰관서	3	3	범죄예방에 대한 정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노력
		4	범죄예방정책 및 범죄예방환경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홍보 등을 활성화	노력
		5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 활성화	노력
		6	효율적인 범죄예방환경 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상시적인 상호협력체계 구축	의무
국민	4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경찰관서가 추진하는 범죄예방정책 및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	의무

출처: 연구진 작성.

■ Top-down 방식과 Bottom-up 방식 통합

범정부 차원의 범죄예방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Top-down 방식과 커뮤니티 중심 접근법인 Bottom-up 방식을 통합한다.

Top-down 방식은 국가 단위 정책 수립과 관련된 법무부 등 정부부처 중심으로, Bottom-up 방식은 대민 범죄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을 중심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양 방향 모두 협력하며 각 단계를 연결하는 형태로 정리한다.

[표 4-2]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 구성

구분	조	제목	주체	
			기존 법안	본 법안
총칙	제1조	목적	-	-
	제2조	정의	-	-

	제3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도경찰관서의 책무	–	–
	제4조	국민의 책무	–	–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범죄예방정책의 수립	제6조	범죄예방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7조	범죄예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제8조	범죄예방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법무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경찰청장	
	제9조	계획수립의 협조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범죄예방추진체계	제10조	범죄예방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국무총리 소속)	(국무총리 소속)
	제11조	범죄예방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	범죄예방실무협의체의 설치	(법무부 소속)	(법무부 소속)
	제13조	범죄예방정책책임관의 지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제14조	범죄예방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경찰청장	경찰청장
	제15조	지역 범죄예방협의체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범죄예방환경조성기반구축	제16조	범죄예방 실태조사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
	제17조	범죄예방 진단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8조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9조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	지방경찰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제20조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조치	지방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제21조	범죄통계의 작성·관리 및 공개	작성 – 검찰, 경찰, 특법사법경찰,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 관리·공개–법무부장관	작성 – 검찰, 경찰, 특법사법경찰,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 관리·공개–법무부장관
			경찰청장	
	제22조	범죄위험지수의 공표	경찰청장	경찰청장
	제23조	범죄 등에 대한 예보·경보	경찰청장	경찰청장
	제24조	범죄예방디자인 인증	경찰청장	경찰청장
	제25조	인증의 취소 및 청문	경찰청장	경찰청장
	제26조	범죄예방공단의 설립	국가	국가
범죄예방지원	제27조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경찰청장	경찰청장
	제28조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29조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체계	제30조	범죄예방 사업에 대한 보조	국가	국가
	제31조	권한의 위임·위탁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경찰청장
	제32조	포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33조	과태료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② 단계적 계획 수립 및 주체의 구분

■ 계획의 단계 및 단계별 주체

- 범죄예방'정책' 계획 수립

'범죄예방'은 포괄적이고 범위가 넓어 해석에 따라 관련 주체 간의 직역 충돌이 발생하므로, 범죄예방 계획이 아닌 '범죄예방정책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명확화하여 원칙 및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 계획의 단계

계획의 단계는 국가단위 단계, 지방자치단체 단계, 지역 밀착 단계의 3단계로 구성한다. 국가단위 단계에서는 범죄예방 정책 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는 범죄예방 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지역 밀착 단계에서는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 계획, 범죄예방 강화계획 등을 수립한다.

- 계획의 주체

국가단위 단계의 범죄예방 정책 기본계획은 법무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지방자치단체 단계의 범죄예방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은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시행한다.

지역 밀착 단계의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범죄예방 강화 계획은 시·도경찰청장이 수립·시행한다.

[표 4-3]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 내 계획

구분	정책		사업	구역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범죄예방 환경 개선사업 계획	범죄예방 강화계획
단계	국가단위 단계	지방자치단체 단계	지역 밀착 단계	
	정부부처 중심	정부부처, 광역·기초 지방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범죄예방 강화구역

		자치단체	내 범죄취약지역	
수립주체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경찰청장
수립시기	5년마다	매년	-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 시
심의기구	범죄예방정책위원회	-	-	-
자문기구	-	범죄예방자문위원회	지역 범죄예방 협의체	-

출처: 연구진 작성.

■ 단계별 심의·자문·협의 기구

- 범죄예방정책위원회

범죄예방정책위원회는 범죄예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 국가단위 단계의 심의 및 조정 기구 위계이다. 기본계획의 수립주체인 법무부장관과 계획 수립의 협의 대상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이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범죄예방자문위원회

범죄예방자문위원회는 연도별 범죄예방 시행계획의 보완·조정, 주요 정책자문 등 광역 지자체 단계의 자문기구 위계이다. 계획단계에서 개별 계획안을 별도로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된 전년도 추진 실적 및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보완·조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경찰청장이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단계에 경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 범죄예방 협의체

지역 범죄예방 협의체는 경찰, 관계기관, 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의견을 제시한다. 범죄예방환경 개선사업 계획 수립,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 등에 지역 범죄예방 협의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지역밀착 단계에서의 의사결정에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한다.

[표 4-4]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 내 심의·자문 기구

구분	범죄예방정책위원회	범죄예방자문위원회	지역 범죄예방 협의체
단계	국가단위 단계	광역 지자체 단계	지역 밀착 단계
설치주체	국무총리 소속	경찰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인원	위원장 포함 25명	위원장 포함 10인 이상 30인 이내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

위원장	국무총리	위원 중 경찰청장이 지명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
부위원장	법무부장관	-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
위원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 관계 공무원과 범죄예방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경찰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2. 위원의 1/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	경찰, 관계기관, 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
임기	2년 / 1회 연임 가능	-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
역할	심의, 조정	자문, 협의·조정	자문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2. 범죄예방 실태조사 3. 범죄예방 관련 재원의 배분 및 효율적 운영 4. 범죄예방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 협조·협력에 관한 사항	1. 범죄예방 시행계획의 보완·조정 2. 범죄예방을 위한 주요 정책자문 3. 관계부처와의 업무 협의·조정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범죄예방 협의체의 결정을 반영하여 범죄예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2.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계획 수립 3.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
위임	대통령령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출처: 연구진 작성.

2) 주체 간 협력 명시

① 법안에 협력의무 명시

■ 책무에 주체 간 협력의무 명시

법안의 책무에 주체 간 협력의무를 명시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도경찰관서, 자치경찰위원회는 서로 협력하여 범죄예방효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경찰관서, 자치경찰위원회는 상시적인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국민은 범죄예방정책 및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범죄예방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에 주체 간 협력의무 명시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찰관서, 자치경찰위원회, 국민 등 관련 주체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수립·시행할 것을 명시한다.

[표 4-5]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 내 협력의무 명시 조항

조	제목	주체	내용	
제3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경찰관서, 자치경찰위원회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도경찰관서, 자치경찰위원회	범죄예방에 대한 정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로 협력하여 범죄예방 효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노력

	책무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경찰관서, 자치경찰위원회	효율적인 범죄예방 환경 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상시적인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의무
제4조	국민의 책무	국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경찰관서가 추진하는 범죄예방정책 및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함	의무
제6조	범죄예방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찰관서, 자치경찰위원회, 국민	범죄예방정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찰서, 국민 등 관련 주체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수립·시행할 것	원칙

출처: 연구진 작성.

② 계획수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

■ 범죄예방실무협의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의 구체적 방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협의체 구성원에는 유관기관 범죄예방 업무 관계자를 포함한다.

[표 4-6]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 범죄예방실무협의체

구분	내용
소속	법무부
구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유관기관 범죄예방 업무 관계자, 범죄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협의 대상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의 구체적 방안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 협조·협력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을 위하여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임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출처: 연구진 작성.

3) 데이터의 작성, 관리, 공개 조항 정리

■ 범죄 데이터와 범죄예방 데이터의 구분

범죄 데이터와 범죄예방 데이터를 구분하여 용어의 혼동이 없도록 하고 정보 공개의 정도에 차이를 둔다.

범죄예방 데이터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하여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범죄 데이터는 범죄예방 활동이나 학술 연구 등으로 공개를 제한하고 공개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한다.

■ 데이터의 관리와 공개 주체는 법무부로 일원화

범죄예방 데이터와 범죄 데이터 모두 최종적인 관리의 주체는 법무부로 일원화하여 데이터의 관리와 공개에 혼동이 없도록 한다.

[표 4-7]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의 범죄예방 데이터와 범죄 데이터

구분	범죄예방 데이터	범죄 데이터
작성주체	법무부장관	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
수집·작성 방법	범죄예방 실태조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유형별 범죄통계 작성
관리 주체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통합 관리)
작성 기간	3년마다	-
내용	범죄예방 활동의 현황, 범죄예방정책 추진 상황 등	범죄 통계
활용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
공표/공개	범죄예방 실태조사 결과 공개	범죄예방 활동이나 학술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당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음
	국민이 범죄예방 관련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여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개인정보 보호	-	공개 시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서는 안됨
협조의무	법무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음	-

출처: 연구진 작성.

4) 지역과 밀착된 조항의 세부내용 조정

■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은 정책 실행의 성격이므로 사업시행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 국가의 역할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한다.

절차, 방법, 사업계획과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임 조항을 추가하여 사업의 일관성을 담보한다.

■ 범죄예방 강화구역

범죄예방 강화구역은 원칙적으로 지자체장이 지정하도록 하고, 경찰청에서도 지정 요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지역 범죄예방 협의체는 심의기구가 아닌 협의기구이므로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지정 시 심

의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듣도록 한다.

5) 인권침해 우려 내용 삭제

■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조치사항 삭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제안된 범죄예방 관련 법안을 통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한 번 제안된 조항은 이후 법안에서 삭제된 것들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인권침해 우려가 강하게 제시된 '순찰·불심검문·차량수배 등 범죄예방활동 강화' 등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조치사항은 삭제한다.

2. 전문가 FGI를 통한 법령 체계화 방안

1) 전문가 FGI 개요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법령 주요 쟁점 사항 해소 및 입법을 위한 법령 체계화를 목적으로,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 15인을 대상으로 하여 2025년 7월 21일-25일 5일간 전문가 FGI를 진행하였다.

전문가 FGI의 주요 내용은 기존 입법 법령안의 쟁점 사항 및 법령안 개선사항,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국가(경찰) 사무로 설정 여부, 범죄예방 정책 수립 및 시행 주체로서 법무부의 역할, 부처 간 협력 의무의 실효성, 법률통계 작성·관리 및 공개 관련 타 법률과의 충돌 부분, 법령 조문의 용어 사용 등이다.

[표 4-8] FGI 참여 전문가 분야별 인원

분야	건축	도시	범죄	경찰	합계
인원(명)	7	4	2	2	15

출처: 연구진 작성.

2) 전문가 FGI 결과

① 법률안 전반에 대한 의견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국가(경찰) 사무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 범죄예방정책 수립·시행 주체로서 법무부의 역할에 대한 문제, 협력 의무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 범죄통계의 작성·관리 및 공개 관련 타 법률과의 충돌 문제, 쉬운 용어의 사용에 대한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표 4-9]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 법률안 전반에 대한 의견

조항	답변 수(명)	전문가 의견		
		구분	(명)	내용
법률안 전반 (3명)	2	국가(경찰)사무 설정 문제	1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는 자치경찰사무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함
			1	지방정부 및 시·도자치경찰과의 연계를 법률에 반영해야 함
	2	법무부 역할 문제	1	법무부의 업무 범위에 범죄예방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움
			1	법무부가 물리적 환경 개선 중심인 CPTED 정책을 주도하기에 어려움
	1	협력 의무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	1	협력 의무가 약하고 책임 소재 불분명
				협력의 방식이 불명확하여 협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1	범죄통계의 작성·관리 및 공개 관련 타 법률과의 충돌 문제	1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서 형사사법정보를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수집·저장 또는 이용할 수 없다 규정
				법원(사법부)은 행정부(법무부)에 종속된 기관이 아닌 3부에 해당
	2	용어의 사용	1	'범죄' 용어에 대한 거부감을 고려하여 사용 지양하고 거부감 없는 용어로 풀어서 사용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상투적인 문구 삭제
			1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며 주요 용어의 띄어쓰기가 일관되지 않음

출처: 연구진 작성. 중복 답변.

■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국가(경찰)사무로 설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

-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는 자치경찰사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는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하며, 「경찰법」 제18조 제1항은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경찰법」의 시행령(대통령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 제2항은 "시·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법」상 범죄예방의 구체적인 내용·방법이라 할 수 있는 범죄예방 환경조성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관장하는 자치경찰사무로 간주되며, 이 경우 법률이 아닌 자치법규(조례·규칙)로 규정해야 「경찰법」 등 타 법률과 충돌하지 않게 된다. 자치법규는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이미 제정·시행되고 있다.

-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함

범죄예방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지방정부 및 시·도자치경찰과의 연계를 법률에 반영해야 함

시·도 단위 자치경찰이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업무의 중심을 담당하므로, 지방정부 및 자치경찰과의 연계를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

■ 범죄예방정책 수립·시행 주체로서 법무부의 역할에 대한 문제

- 법무부의 업무 범위에 범죄예방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움

2020년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는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의 사무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비롯한 범죄예방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우며, 이에 경찰청이 담당 부서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11쪽).

또한 법무부 및 검찰의 역할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현 「정부조직법」상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기능을 법무부에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법무부가 물리적 환경 개선 중심인 CPTED 정책을 주도하기에 어려움

CPTED 사업은 현장 실행력과 기획력이 중요한 특성을 갖는데, 법무부는 물리적 환경 개선보다는 법집행과 교정 중심의 기능을 갖고 있어 실제 정책 주도에는 부적합할 수 있다.

법무부는 CPTED 실무에 대한 경험과 실행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정책조정기관으로는 부적절할 수 있으며, 경찰청,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실제 실행력을 가진 기관과의 주도권 충돌 및 역할 모호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 협력 의무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

- 협력 의무가 약하고 책임 소재 불분명

'관계기관의 협조' 수준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제로는 협력 의무가 약하며 실행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 협력의 방식이 불명확하여 협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협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의사결정 주체, 책임 소재, 예산 배분 방식 등이 불명확하여 협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 범죄통계의 작성·관리 및 공개 관련 타 법률과의 충돌 문제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서 형사사법정보를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수집·저장 또는 이용할 수 없다 규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 제3항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그 소속 기관과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47])이 형사사법정보(“형사사법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48])를 범죄예방 등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수집·저장 또는 이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 법원(사법부)은 행정부(법무부)에 종속된 기관이 아닌 3부에 해당

“법무부장관이 각 형사사법기관이 작성·관리하는 범죄통계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기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분립하여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권력분립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상 불가하다.

또한 법원은 지역이 아닌 법원 관할로 통계를 작성하고 있어 법령안에서 의도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 용어의 사용에 대한 의견

전체적으로 ‘범죄’라는 용어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을 고려하여 가급적 사용을 지양하고 거부감이 없는 용어로 풀어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법률은 지나치게 복잡하기 보다는 간단명료하여 그 취지가 쉽게 이해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상투적인 문구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며 주요 용어의 띄어쓰기가 일관되지 않은 것을 수정하여야 한다.

②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 조항별 의견

■ 제1장(총칙)

- 제1조(목적)

제1장제1조(목적)에 대해서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하였으며, 법안의 목적에 ‘정책’뿐만 아니라 ‘사업’도 추가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추진’으로 변경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7)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 제2호
48)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 제3호

[표 4-10]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제1장제1조)

조항	답변수 (명)	전문가 의견		
		구분	(명)	내용
제1조 (목적)	1명	법안 목적에 '사업' 추가	1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추진'으로 변경

출처: 연구진 작성.

- 제2조(정의)

제2조(정의)는 정의된 용어별로 다양한 의견이 제안되었다. 그 중에서도 '범죄예방'의 정의에 범죄발생 수준과 범죄두려움 수준을 낮추는 것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과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연결되지 않는 일반적인 용어이므로 생략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안되었다. '범죄예방디자인'에 대한 사항으로는 대상에 공공공간 추가, 커뮤니티 관련 사회적 환경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는 의견과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의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또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고려도 제안 되었다. 이밖에 '범죄예방진단'은 취지에 맞는 용어로 변경, 경찰청 훈령과의 중복·별도의 정의규정이 불필요하므로 삭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경우 지역과 구역의 구분 필요, 현재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범죄예방 강화구역과의 관계에 대한 의문, 삭제 의견 등이 있었다.

[표 4-11]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제1장제2조)

조항	답변수 (명)		전문가 의견		
			구분	(명)	내용
제2조 (정의)	6	1	1. 범죄예방	1	범죄예방의 정의는 범죄발생 수준과 범죄두려움 수준을 낮추는 것 모두를 포함
		1	2. 범죄예방활동	1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연결되지 않는 일반적인 용어이므로 생략 가능
		3	3. 범죄예방 디자인	1	건물과 시설은 유사어로 '시설'을 '시설물'로 대체가 적절
				1	공공장소(거리, 광장 등)도 명확히 포함하여 "공공공간"명시를 추가
				1	커뮤니티 관련 사회적 환경으로 확장
					'건축물·시설·공간·제품·시스템 등을'→'건축물·시설·공간·제품·시스템 등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서비스·정책·이용자 경험 등 비물질적 요소를 포함한 사회적 환경을'
		5	4.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	2	제19조 '범죄예방환경 개선사업'과 명칭 상이
				1	정책적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근거를 강화
					'범죄예방환경'→'지역사회 내 범죄 발생의 기회를 감소시키고 주민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범죄예방환경'
				1	'범죄' 용어 지양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
					'범죄예방환경'→'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으로 변경
				1	4.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과 5. 범죄예방진단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
				1	삭제
					'환경개선,' '공동체 활성화'를 포괄하는 별도의 정의규정 불필요

		3	5. 범죄예방 진단	1	현재 용어는 범죄예방을 진단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예방을 위해 환경을 진단하는 것 혹은 범죄예방효과나 성능을 진단하는 취지로 보이는 용어로 변경
					'범죄예방진단'→'범죄예방성능진단'
				1	경찰청 CPO의 업무 및 경찰청 훈령의 용어와 중복되므로 굳이 정의할 필요 없음
					이 용어의 정의를 존치시킨다면 '범죄예방 실태조사'의 개념정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1	삭제
					범죄예방디자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정의규정 불필요
		2	6. 범죄예방 강화구역	1	지역과 구역을 구분할 것
				1	현재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범죄예방 강화구역과는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혹은 동일한 것인지 의문
				1	삭제

출처: 연구진 작성. 중복 답변.

- 제3조(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경찰관서의 책무)

제3조 전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조항이 의무규정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임의규정이라 노력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해 보인다는 의견, 공공의 책무가 지나치게 장황하고 많아 보이므로 축소 또는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책무의 주체에 자치경찰위원회를 추가하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법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관련하여 '시·도경찰관서' 대신 '경찰관서', '경찰관서' 대신 '경찰서'를 사용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조항별로는 제1항에 대하여 '범죄예방에 관한 종합적, 체계적 정책을 수립, 시행'이 범죄예방과 관련한 모든 정책 수립, 시행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범죄예방 종합계획'과 같이 주기적으로 범죄예방에 대한 종합적 계획 수립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범죄예방 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광역 지자체장의 '범죄예방 종합계획' 수립 의무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2항에 대하여 범죄예방환경조성을 위한 재원확보는 필수적이므로 의무규정으로 변경 또는 조항에 '적극적으로' 표현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3항에 대하여 범죄예방 효과의 '향상'에 대한 표현 변경 및 제6항과 통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4항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대상을 '범죄예방환경'에서 '범죄예방사업'으로 변경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5항에 대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 활성화 내용을 삭제하고,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 단체가 범죄예방정책 및 사업에 자발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안이 제안되었다. 제6항에 대하여 '환

경개선사업'과 '환경조성사업' 용어 혼용 문제가 지적되었다. 제7항에 대하여 범죄예방정책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사업의 정착·확산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4-12]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제1장제3조)

조항	답변수 (명)		전문가 의견		
			구분	(명)	내용
제3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할 경찰관서의 책무)	7	3	전체	1	대부분 조항이 '-한다'와 같이 의무규정처럼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 노력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해 보임
				1	공공의 책무가 지나치게 장황하게 많아 보임. 일부 축소하거나 통합을 해야 공공의 책무가 더 강조되어 보일 것으로 생각됨
				1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관서의 역학관계를 고려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경찰관서→국가,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자치경찰위원회
		2	용어	1	시·도를 붙일 필요 없음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경찰관서→국가,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1	'경찰관서'는 경찰관서와 경찰서가 혼용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경찰서'로 통일
		2	1항	1	'사업' 추가
					'범죄예방에 관한 종합적·체계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범죄예방에 관한 정책 및 사업계획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범죄예방에 관한 종합적, 체계적 정책을 수립, 시행'이 범죄예방과 관련한 모든 정책 수립, 시행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범죄예방 종합계획'과 같이 주기적으로 범죄예방에 대한 종합적 계획 수립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제3조의 1항이 범죄예방 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자체장의 '범죄예방 종합계획' 수립 의무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권장(기초지자체를 제외한 광역 지자체장의 법적 의무로 제한)
		1	2항	1	범죄예방환경조성을 위한 재원확보는 필수적이므로 의무규정으로 변경 또는 '적극적으로' 추가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확보하여야 한다' 또는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3항	1	범죄예방 '효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효과가 강화될 수 있도록' 또는 '효과가 커질 수 있도록'
				1	3항과 6항은 통합 가능
		1	4항	1	'범죄예방환경'을 '사업'으로 변경
					'범죄예방정책 및 범죄예방환경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참여'→'범죄예방정책 및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참여'
		1	5항	1	자원봉사단체 삭제, 관련 기관, 단체를 지원 대상에 추가
					'활성화 노력'에서 '지원'으로 변경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에 참여할 수 있는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지역주민과 관련 기관, 단체가 범죄예방정책 및 사업에 자발적으로(또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6항	1	'환경개선사업'과 '환경조성사업' 용어 혼용
		1	7항	1	'사업'추가

					'범죄예방정책의 정착·확산'→'범죄예방정책 및 사업의 정착과 확산'

출처: 연구진 작성. 중복 답변.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와 관련하여 타법에 같은 조항이 있는데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항이므로 삭제하는 것도 고려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

[표 4-13]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제1장제5조)

조항	답변수 (명)	전문가 의11견		
		구분	(명)	내용
제5조 (다른 법률 과의 관계)	1	전체	1	5조 자체를 삭제하는 것도 고려 가능 타법에 같은 조항이 있는데,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항이 됨
		1항	1	1항은 이 법의 위상을 낮추는 표현
		2항	1	2항은 신법우선원칙에 의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임

출처: 연구진 작성.

■ 제2장(범죄예방정책의 수립)

제2장에 대하여 제명이 '범죄예방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 범죄예방정책이나 범죄예방정책 기본계획은 이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명을 더 포괄적으로 바꾸거나 제2장에서 다루는 내용을 환경조성 관련 정책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4-14]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제2장)

조항	답변수 (명)	전문가 의견		
		구분	(명)	내용
제2장 (범죄예방 정책의 수립)	1	전체	1	제명은 '범죄예방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 범죄예방정책이나 범죄예방정책 기본계획은 이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임
				제명을 더 포괄적으로 바꾸거나, 제2장에서 다루는 내용을 환경조성 관련 정책으로 축소해야할 것임

출처: 연구진 작성.

- 제6조(범죄예방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제6조에 대하여 제3호의 '시·도경찰서'를 제1항과 통일하여 '시·도경찰관서'로 변경하거나 '시·도 경찰서'를 '경찰관서'로 수정하고 자치경찰위원회를 추가하여 포함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표 4-15]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제2장제6조)

조항	답변수 (명)	전문가 의견		
		구분	(명)	내용
6조 (범죄예방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1	3호	1	'시·도경찰서'→'시·도경찰관서'
				또는 시·도 경찰서를 경찰관서로 수정하고 자치경찰위원회를 포함

출처: 연구진 작성.

- 제7조(범죄예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에 대하여 2명의 전문가가 경찰관서의 상위부서는 행정안전부인데 범죄예방정책 기본계획 수립의 주체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법의 '범죄예방정책 기본계획'이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수립되는 '범죄예방디자인 기본계획'과 다른 것인지, 다르다면 지자체의 기본계획이 이후 수립이 명시된 시행계획으로 대체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조항별로는 제2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표현이 어색하므로 '확정할 수 있다' 또는 '확정해야 한다'로 변경하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제3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에 사업을 추가하여 '범죄예방정책'을 '범죄예방정책 및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제4항에 대하여 3명의 전문가가 기본계획이 공고되는 것은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법무부 홈페이지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범죄예방정책 관련 전용 홈페이지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안되었다.

추가적으로 기본계획에 범죄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범죄 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다.

[표 4-16]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제2장제7조)

조항	답변수 (명)		전문가 의견		
			구분	(명)	내용
제7조 (범죄예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5	2	전체	2	전국 경찰관서의 상위부서는 행정안전부인데, 이 법 에서는 경찰관서가 법무부의 정책을 실행하는 또는 지휘를 받는 것 및 그렇게 인식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중에 누가 적절하고 합리적인지 다시 검토 필요
				1	지자체별 범죄예방디자인(지자체별 명칭은 조금씩 상이) 조례에서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법의 '범죄예방정책 기본계획'과 지자체의 '범죄예방디자인 기본계획'은 어떤 관계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
					뒤에 시행계획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데, 지자체의 기본계획은 시행계획으로 대체될 수 있는가?
		1	2항	1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확정할 수 있다' 또는 '확정해야 한다'
		1	3항	1	'사업' 추가
					'범죄예방정책'→'범죄예방정책 및 사업'

		3	4항	3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1	범죄예방정책 관련 전용 홈페이지 구축 필요
		1	추가 제안	1	기본계획의 내용에 범죄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범죄 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으면 함

출처: 연구진 작성. 중복 답변.

- 제8조(범죄예방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에 대하여는 계획 및 자문위원회의 위계에 대한 의견이 대부분이다. 시행계획 수립권자는 시·도지사인데, 제20조의 강화구역 지정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것이 맞지 않으므로 시행계획이 기초단체 수준에서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기본계획은 범죄예방정책 위원회, 시행계획은 범죄예방 자문위원회의 역할로 구분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효율적일지에 대한 의문이 제시되었다.

조항별로는 제2항 자문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자문위원회는 제14조에서 경찰청장이 범죄예방 자문위원회를 구성·임명하게 되어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을 심의하는 것이 위계가 맞지 않으며, (지방)경찰청에서 범죄예방자문위원회를 설치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 위상 및 역할은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시행계획 심의 기관을 범죄예방정책위원회의 업무로 이관하거나 명칭을 변경한 다른 위원회를 범죄예방정책위원회와 동일한 위상으로 설치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표 4-17]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제2장제8조)

조항	답변수 (명)		전문가 의견		
			구분	(명)	내용
제8조 (범죄 예방 정책 시행 계획 의 수 립)	3	2	전체	1	시행계획 수립권자는 시·도지사인데, 제20조의 강화구역 지정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임
					시행계획이 기초단체 수준에서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지 검토를 제안함
				1	기본계획은 범죄예방정책 위원회, 시행계획은 범죄예방 자문위원회의 역할로 구분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효율적일지 의문
		1	2항	1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을 범죄예방 자문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은 부적절. 제14조에서 경찰청장이 범죄예방 자문위원회를 구성, 임명하게 되어서 위계가 맞지 않음
					(시·도)경찰청에서 범죄예방자문위원회를 설치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 위상 및 역할은 어떻게 조정하나?
					시행계획 심의 기관을 범죄예방정책위원회의 업무로 이관하거나 명칭을 변경한 다른 위원회를 범죄예방정책위원회와 동일한 위상으로 설치해야 할 것임

출처: 연구진 작성. 중복 답변.

■ 제3장(범죄예방정책 추진체계)

- 제10조(범죄예방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와 관련하여 제14조 자문위원회와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으며, 위원회에서 범죄예방정책 수립에 필요한 범죄관련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이 있는)의 제공 여부에 관한 심의 기능을 넣는 것도 고려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조항별로는 제1항에서 범죄예방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는데, '정책과 사업'으로 변경하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표 4-18]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제3장제10조)

조항	답변수 (명)		전문가 의견		
			구분	(명)	내용
제10조 (범죄예방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3	1	전체	1	제14조 자문위원회와 중복
		1	추가 제안	1	위원회에서 범죄예방정책 수립에 필요한 범죄관련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이 있는)의 제공 여부에 관한 심의 기능을 넣는 것도 고려
					다만, 22조에서 개방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다면 불필요
		1	1항	1	'사업'추가
					'범죄예방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범죄예방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사업계획을'

출처: 연구진 작성. 중복 답변.

- 제11조(범죄예방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 제1항에 범죄예방정책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당연직 위원이 포함될 시 외부의 전문가들이 충분히 위원회에 속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제1항제2호의 전문가는 반드시 민간위원이 아니어도 될 수 있으므로 민간위원이 포함되도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4-19]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제3장제11조)

조항	답변수 (명)	전문가 의견		
		구분	(명)	내용
제11조 (범죄예방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1항	1	범죄예방정책위원회의 위원은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당연직 위원이 포함될시 외부 전문가들이 충분히 위원회에 속할 수 있는지 검토 필요
			1	제1항제1호는 정부위원으로 명확히 인식될 수 있으나,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반드시 민간위원이 아니어도 될 수 있음. 즉 위원회 위원 모두 민간위원이 아닌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

출처: 연구진 작성.

• 제12조(범죄예방실무협의체의 설치)

제1항제1호에 대하여 제1장에서 시·도경찰관서가 언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시·도경찰관서를 추가하거나 제1장제3조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포함된다면 여기서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1항제3호에 대하여 제2장제7조를 반영한 구체화 및 '사업'을 추가하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제2항에 대하여 협의체는 위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장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4-20]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제3장제12조)

조항	답변수 (명)	전문가 의견		
		구분	(명)	내용
제12조 (범죄예방실무협의체의 설치)	2	1항 2호	1	제1장에서 시·도경찰관서가 언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시·도경찰관서 추가
				또는 제1장제3조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포함된다면 여기서도 반영되어야 함
		1항 3호	1	제2장제7조를 반영한 구체화와 '사업' 추가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실태조사'→'범죄예방정책 및 사업을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실태조사'
		2항	1	협의체는 위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장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정의할 필요가 있음

출처: 연구진 작성. 중복 답변.

• 제13조(범죄예방정책책임관의 지정)

제1항에 대하여 제1장에서 시·도경찰관서가 언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시·도경찰관서를 추가하거나 제1장제3조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포함된다면 여기서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경우 시·도경찰관서의 CPO가 범죄예방정책 책임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의 인력을 지정할 수 있다.

[표 4-21]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제3장제13조)

조항	답변수 (명)	전문가 의견		
		구분	(명)	내용
제13조 (범죄예방정책책임관의 지정)	2	1항	1	제1장에서 시·도경찰관서가 언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경찰관서 추가
				제1장제3조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포함된다면 여기서도 반영되어야 함
				시·도경찰관서의 CPO가 범죄예방정책 책임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의 인력을 지정할 수 있음

출처: 연구진 작성. 중복 답변.

• 제14조(범죄예방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에 대하여 2명의 전문가가 경찰청장이 설치 및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

다. 경찰청 산하로 위원회가 운영될 경우 자문 자체가 정책에 대한 큰 그림 위주로 되지 못하고 실행 차원에서의 자문에 그칠 우려가 있으며, 위원이 경찰 위주로 구성될 경우 현재 국내 범죄예방 환경설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심화·고착될 우려를 제기하였다.

자문위원회는 범죄예방 사업 및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혹은 법무부 산하에 두어서 정책 및 사업 기획 등에 자문을 제공하고 위원 구성도 실제 환경조성에 책임이 있는 도시, 건축학 분야의 위원과 환경조성에 필요한 범죄정보와 이론적 배경 제공에 책임이 있는 범죄학, 경찰행정학 분야의 위원이 균형 있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표 4-22]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제3장제14조)

조항	답변수 (명)	전문가 의견		
		구분	(명)	내용
제14조 (범죄예방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3	전체	1	자문위원회를 경찰청 산하에 두고 구성을 경찰청장이 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자문위원회는 범죄예방 사업 및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혹은 법무부 산하에 두어서 정책 및 사업 기획 등에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
				위원 구성은 도시·건축학, 범죄학, 경찰행정학 분야의 위원이 균형 있게 배분되어야 함
			1	경찰청장이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 필요
			1	제10조 위원회(정책위원회)와 중복

출처: 연구진 작성. 중복 답변.

- 제15조(지역 범죄예방협의체)

제12조에 범죄예방 실무협의체가 있음을 고려하면, 범죄예방 지역협의체가 어감 또는 인식에 유리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4-23]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제3장제15조)

조항	답변수 (명)	전문가 의견		
		구분	(명)	내용
제15조(지역 범죄예방협의체)	1	명칭	1	지역 범죄예방협의체와 범죄예방 지역협의체 중에서 어떤 것이 적절한지 검토 필요

출처: 연구진 작성.

■ 제4장(범죄예방환경 조성기반 구축)

- 제16조(범죄예방 실태조사)

제2항에 범죄예방사업을 추가하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표 4-24]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제4장제16조)

조항	답변수 (명)	전문가 의견		
		구분	(명)	내용
제16조 (범죄예방 실태조사)	1	2항	1	표현 변경, '사업' 추가
				'범죄예방 활동의 현황, 범죄예방정책 추진 상황 등'→'각종 범죄예방 활동, 범죄예방정책 및 사업 추진 상황 등'
		3항	1	'법무부령'→'법무부장관령'

출처: 연구진 작성. 중복 답변.

- 제17조(범죄예방진단)

'범죄예방진단'이라는 용어가 범죄예방을 진단한다는 것처럼 느껴져 어색하므로 범죄예방성능진단의 개념으로 용어를 변경할 것이 제안되었다.

제1항에 범죄안전진단 대상에 '지역'을 추가하는 것이 제안되었으며, 추가적으로, 범죄예방진단을 위해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관련 범죄통계를 제공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표 4-25]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제4장제17조)

조항	답변수 (명)		전문가 의견		
			구분	(명)	내용
제17조 (범죄예방진단)	3	2	1항	1	'범죄예방을 위한 진단' 표현이 어색함
					'범죄예방진단' 명칭이 어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예방성능진단 개념으로 용어를 변경할 것을 제안함
				1	'건축물·시설·공간 등'에 구역(지역)을 추가
					'건축물·시설·공간 등'→'건축물·시설·공간·지역 등'
		1	추가 제안	1	제17조에서 범죄예방 진단을 위해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관련 범죄통계를 제공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것을 제안함

출처: 연구진 작성. 중복 답변.

- 제18조(범죄예방 디자인 활성화 시책)

제18조 '범죄예방 디자인 활성화 시책'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CPTED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조례에 CPTED 활성화 시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제18조 내용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제1항 범죄예방 디자인 활성화 시책의 적용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으며, 필요시 관련 법령의 범위를 대통령령 또는 법무부장관령에 위임해서 명확히 정하자는 의견도 있다. 제1항에 추가해야 할 것으로 제안된 법령은 「건축법」,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등이며, 이 중 「공공주택특별법」은 2명의 전문가가 추가를 제안하였다.

제2항에 대하여 경찰조직이 인식하고 경험한 CPTED와 현실에 필요한 CPTED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그 외에 유지관리 및 사후 평가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현행 건축법 제53조의 2항의 유효성을 담보할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심의 소관 위원회를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로 정하고 범죄예방환경설계 전문가 위촉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필요한 동시에 CPO가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려면 일정 기간 이상의 건축 관련 교육 이수 의무화를 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표 4-26]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제4장제18조)

조항	답변수 (명)		전문가 의견		
			구분	(명)	내용
제18조 (범죄예방 디자인 활성화 시책)	6	1	전체	1	이미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CPTED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조례에 CPTED 활성화 시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제18조 내용의 전면 수정 필요
		3	1항	1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른 일반 건축행위 및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주거지 조성,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의한 임대주택 정비 등에 범죄예방정책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 필요
					법의 적용 대상 건축물 및 도시환경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었으면 함
				1	「공공주택 특별법」 등의 추가가 필요
					필요시 관련 법령의 범위를 대통령령 또는 법무부장관령에 명확히 제시 필요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추가 필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추가 고려
		1	2항	1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듣는 것은 위험할 수 있음
					경찰조직이 인식하고 경험한 CPTED와 현실에 필요한 CPTED는 차이가 있기 때문
		2	추가 제안	1	현행 건축법 제53조의 2항의 유효성을 담보할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1	실사용자(주민, 이용자) 참여절차 규정 추가 제안
					⑥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관할 지역의 주민, 이용자 등 실사용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범죄예방디자인의 계획·설계·실행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유지관리 및 사후평가 규정 추가 제안
					⑥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된 범죄예방디자인 시책에 대하여 일정 주기로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범죄예방디자인 시책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 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연구진 작성. 중복 답변.

- 제19조(범죄예방환경 개선사업)

이 법안에서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과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므로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제18조와 마찬가지로 이미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CPTED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조례에 CPTED 활성화 시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제19조 내용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법안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 3명의 전문가가 '범죄취약지역'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고 '범죄취약지역'을 정의하거나 설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은 취약지역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으므로, 취약지역에 한정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제3항제1호의 '범죄유발요인'을 '범죄 및 두려움 유발요인'으로 변경하고, 제19조 하위 시행령 또는 지침에 범죄 및 두려움 유발요인 예시를 포함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그 외에 실사용자 참여절차 규정, 유지관리 및 사후평가 규정의 추가가 제안되었다.

[표 4-27]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제4장제19조)

조항	답변수 (명)		전문가 의견		
			구분	(명)	내용
제19조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	7	1	전체	1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과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용어 정리
				1	앞선 의견과 동일하게 이미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CPTED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조례에 CPTED 활성화 시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제19조 내용의 전면 수정 필요
		2	1항	1	사업을 취약지역에 한정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음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은 취약지역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음
				1	'범죄취약지역'은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정의하거나 제16조(범죄예방 실태조사) 혹은 제17조 (범죄예방 진단)과 연계하여 설명할 필요성이 있음
		2	3항	1	'범죄취약지역'의 명확한 규정이 없이, 그를 위한 조사내용을 명기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임
					범죄취약지역을 실제 범죄 발생 정도로만 판단하는 것으로는 적절치 않을 수 있음. 범죄 불안감 또는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잠재성 등 또한 고려할 수 있을 것임
				1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설명 보완
					2.강력범죄 발생지역, 여성대상범죄 취약지역, 외국인범죄 빈발지역 등 범죄 발생 위험 요인 3. 난개발지역, 쇠락지역, 도서벽지 등 범죄예방 기능이 취약한 지역적 요인
				1	제1호의 '범죄유발요인'을 '범죄 및 두려움 유발요인'으로 변경
					'범죄유발요인'→'범죄 및 두려움 유발요인'
		2	4항	2	'보행환경개선사업' →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

		2	추가 제안	1	주민 의견 수렴 또는 주민 참여 절차 포함 필요
				1	실사용자(주민 및 공동체) 참여절차 규정 추가 제안
					③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 계획 및 시행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주민 및 공동체가 사업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공청회, 설명회, 협의회 운영 등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유지관리 및 사후평가 규정 추가 제안
					⑥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 시행 이후 해당 지역의 범죄 발생률, 주민 체감 안전도 등의 변화를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유지·보수 및 보완 사업을 계획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유지관리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고, 해당 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1	19조 하위 시행령 또는 지침에 두려움 유발 요인 예시 포함 제안
					• 어둠, 폐쇄성, 사각지대, 관리 부재 등 환경적 요인 • 사회적 무질서(낙서, 쓰레기 등) • 심리적 위축감을 유발하는 공간 등

출처: 연구진 작성. 중복 답변.

• 제20조(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

제20조에 대하여 현재 경찰청에서 지정, 운영 중인 범죄예방 강화구역(경찰청 훈령)과 용어 및 개념, 활동 등이 유사한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범죄예방 강화구역'이라는 표현이 어색하므로 본문의 '특별한 조치' 언급을 반영하여 '범죄예방특별구역'으로 변경하고, 지정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최소한 법무부장관 이상에서 지정을 건의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 시 주민의견을 수렴 또는 주민참여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표 4-28]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제4장제20조)

조항	답변수 (명)		전문가 의견		
			구분	(명)	내용
제20조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	3	2	전체	1	현재 경찰청에서 지정, 운영 중인 범죄예방 강화구역(경찰청 훈령)과 용어 및 개념, 활동 등이 유사함
				1	강화구역이라는 표현이 어색함. 본문에 "특별한 조치"라고 언급한 것처럼 범죄예방특별구역이 바람직해 보임
		1	1항	1	범죄예방특별구역으로 변경하고 지정요건을 대폭 강화해야 함
					마치 특별재난구역 선포처럼 최소한 법무부장관 이상에서 지정을 건의(조폭단체가 창궐하는 등 누가 봐도 범죄가 심각하다고 인지할 수 있는 곳에 한정)
					중앙위원회의 심의도 거치도록 해야 함
					재난에 비해서는 시급성이 높은 것은 아니므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1	추가 제안	1	강화구역 지정 시 주민의견 수렴 또는 주민참여 절차 포함 필요

출처: 연구진 작성. 중복 답변.

• 제21조(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조치)

제2항의 '범죄예방 강화계획'에 대한 개념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제4항과 관련하여 2명의 전문가가 인권침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한 명은 개인정보보호, 인권침해 방지 등에 관한 기준이 필요하다 하였으나 다른 한 명은 인권침해의 법적 근거가 되고 국민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당한 우려를 표하였다.

[표 4-29]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제4장제21조)

조항	답변수 (명)		전문가 의견		
			구분	(명)	내용
제21조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조치)	4	1	전체	1	이는 경찰청 고유의 업무로 본 법률에서 다룰 사항이 아님
		1	2항	1	'범죄예방 강화계획'에 대한 개념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4항	1	상당히 우려스러운 조항임
					단체장이 큰 어려움 없이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불심검문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됨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언론에서 조금만 부정적으로 조명하더라도, 국민들의 우려나 반발이 매우 클 것임
				1	범죄예방활동 강화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인권침해방지 등에 관한 기준 필요

출처: 연구진 작성. 중복 답변.

• 제22조(범죄통계의 작성·관리 및 공개)

제22조에 대하여 범죄통계의 내용과 형식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상세한 형식과 규격을 명확히 하여야 실효성 있는 범죄통계가 구축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3항에 대하여 범죄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사안에 '범죄예방 정책 및 사업'을 추가하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또한 '상당한 범위 내에서 범죄통계를 공개할 수 있다'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범죄예방정책 수립 목적으로 민감 범죄통계를 다룰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고 시행령을 통해 다룰 수 있는 자료의 범위, 자격을 갖춘 사람의 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을 권장하는 의견이 있다.

[표 4-30]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제4장제22조)

조항	답변수 (명)		전문가 의견		
			구분	(명)	내용
제22조 (범죄통계의 작성·관리 및 공개)	3	1	전체	1	범죄통계의 내용과 형식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상세한 형식과 규격을 명확히 하여야 실효성 있는 범죄통계가 구축될 것이라 봄
		2	3항	1	'범죄예방정책 및 사업' 추가
					'범죄예방 활동이나 학술 연구 등'→'각종 범죄예방 활동, 범죄예방정책 및 사업,

					학술 연구 등’
				1	‘상당한 범위 내에서 범죄통계를 공개할 수 있다’가 분명하지 않음
					범죄예방정책 수립 목적으로 민감 범죄통계를 다룰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는 방향을 권장함
					시행령을 통해, 다룰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다룰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의 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음

출처: 연구진 작성. 중복 답변.

- 제23조(범죄위험지수의 공표)

제23조에 대하여 2명의 전문가가 행정안전부의 지역별 범죄안전지수와 중첩되는 문제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1항과 관련하여 제22조에서 범죄통계의 작성, 관리 및 공개 의무는 법무부 장관에게 있는데, 이를 활용한 범죄위험지수를 개발하고 공표하는 것의 의무는 경찰청장에게 있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제4항에서 ‘범죄위험지수’와 ‘범죄예방지수’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표 4-31]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제4장제23조)

조항	답변수 (명)		전문가 의견		
			구분	(명)	내용
제23조 (범죄위험지수의공표)	3	2	전체	1	행정안전부의 지역별 범죄안전지수와 어떤 관계인지 정리 필요
				1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에 나오는 지역안전등급과의 중첩 문제 있어서 이 부분은 조율이 필요함
		1	1항	1	제22조에서 범죄통계의 작성, 관리 및 공개 의무는 법무부 장관에게 있는데, 이를 활용한 범죄위험지수를 개발하고 공표하는 것의 의무는 경찰청장에게 있는 것은 합당치 않음
		1	4항	1	‘범죄위험지수’와 ‘범죄예방지수’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음

출처: 연구진 작성. 중복 답변.

- 제24조(범죄 등에 대한 예보·경보)

제24조에 대하여 경찰청 고유의 업무로 이 법안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표 4-32]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제4장제24조)

조항	답변수 (명)	전문가 의견		
		구분	(명)	내용
제24조(범죄 등에 대한 예보·경보)	1	전체	1	이는 경찰청 고유의 업무로 본 법률에서 다룰 사항이 아님

출처: 연구진 작성.

- 제25조(범죄예방디자인 인증)

제25조와 관련하여 인증제도의 실효성과 책임성에 대한 논란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인증제도의 주체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다.

인증제도의 주체를 경찰청장이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인증을 위한 인정 기관도 필요함을 전제로 하여 인증은 다양한 주체가 할 수 있지만 이를 인정하는 것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이 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또한 인증의 주체를 경찰청장이 아닌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범죄예방 환경조성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을 검토하는 의견 등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도시 조성 시에 모든 공동주택과 학교에 인증 의무화를 시장 규칙으로 제정·시행하여 효과를 본 시흥시 배곧신도시의 사례가 제시되었다.

인증제도의 기준으로 국제표준을 도입·운영하는 동시에 지속가능성 및 지역사회 주민 참여도 또한 인증기준에 포함하자는 의견이 있다.

조항별로는 제2항에 대하여 인증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평가항목 및 기준, 사후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훈령으로 위임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3항과 관련하여 인증을 받은 사업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홍보, 교육 등에서 우선 지원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표 4-33]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제4장제25조)

조항	답변수 (명)		전문가 의견		
			구분	(명)	내용
제25조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	5	4	전체	1	경찰청장이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제도의 주체가 되는 것은 부적절함
				1	인증을 위한 인정 기관도 필요함을 전제로, 인증은 다양한 주체가 담당할 수 있지만 이를 인정하는 것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이 되는 것임
				1	인증 권한을 경찰청장에게 두고 있으나,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실효성과 책임성에 대한 논란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범죄예방디자인인증의 주체가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장관 중에 누가 적절하고 합리적인지 검토 필요
				1	인증제도 시행의 주체를 '경찰청장'으로 하는 것보다는 '광역지자체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권장함
		1	추가 제안	1	국제표준 도입·운영 및 인증기준 제시
					① 경찰청은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의 효과성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에 따라 환경조성계획, 설계 및 실행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1. CPTED 원칙의 충실한 반영 여부 2. ISO 22341 등 국제표준과의 부합성 3. 지속가능성,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4. 지역사회 및 주민 참여도
		1	2항	1	인증기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경찰청 훈령으로 정함
					③ 경찰청장은 인증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평가항목 및 기준, 사후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훈령으로 정할 수 있다.

		1	3항	1	인증을 받은 사업 또는 시설물에 대해 우선 지원 또는 인센티브 부여
					④ 인증을 받은 사업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홍보, 교육 등에서 우선 지원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출처: 연구진 작성. 중복 답변.

- 제27조(범죄예방공단의 설립)

제27조에 대하여 두 명의 전문가가 불필요, 삭제 내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다. 삭제 내지 신중 검토 의견의 경우 근거로 현재 방범제품에 대한 인증기준 마련, 시험·평가 등과 같은 인증제도 운영에 따른 기술적 업무는 산업자원부의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기관 간 인증업무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의 대상이 되는 시설·제품·공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2016년 11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25쪽)를 제시하였다.

제6항에 대하여 두 명의 전문가가 국가의 재정소요 발생, 비용추계에서의 장애 발생 등을 우려하였으며, 지원한 재원이 부적절하게 지출되거나 불필요한 사업수행으로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공단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4-34]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제5장제27조)

조항	답변수 (명)		전문가 의견		
			구분	(명)	내용
제27조 (범죄예방 공 단 의 설립)	3	2	전체	1	삭제 또는 신중 검토 필요
					현재 방범제품에 대한 인증기준 마련, 시험·평가 등과 같은 인증제도 운영에 따른 기술적 업무는 산업자원부의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수행하고 있음
					범죄예방이라는 특화된 분야에 대한 별도의 인증업무 기능을 수행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의 대상이 되는 시설·제품·공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2	6항	1	국가가 비용 보조 및 재정자금 융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적지 않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지원한 재원이 부적절하게 지출되거나 불필요한 사업수행으로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공단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제정법이므로 비용추계에서 큰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임

출처: 연구진 작성. 중복 답변.

- 제28조(범죄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제27조 범죄예방공단의 업무 중에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및 연구개발'이 있어 내용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다.

경찰청장이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 개발의 주체가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현재

경찰청 관련 사업과의 중복 문제, 경찰 고유 업무와 관련된 지원이 많아질 우려 등이 제기되었다.

[표 4-35]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제5장제28조)

조항	답변수 (명)	전문가 의견		
		구분	(명)	내용
제28조(범죄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1	전체	1	제27조 범죄예방공단의 업무와 중복됨
		1항	1	경찰청장이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 개발의 주체가 되는 것은 부적절
				현재도 경찰청에서 관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문제가 있으며, CPTED보다 경찰 고유 업무와 관련된 지원이 많아질 우려가 있음

출처: 연구진 작성.

- 제29조(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4명의 전문가가 제29조와 제30조가 중복되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범죄예방공간의 역할과 중복된다는 의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다.

[표 4-36]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제5장제29조)

조항	답변수 (명)	전문가 의견		
		구분	(명)	내용
제29조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4	전체	4	제29조와 제30조는 중복됨
			1	범죄예방공단의 역할과 중복됨
			1	국가 및 지자체의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임

출처: 연구진 작성. 중복 답변.

- 제31조(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의 활성화 등)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3)과의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표 4-37]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제5장제31조)

조항	답변수 (명)	전문가 의견		
		구분	(명)	내용
제31조(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의 활성화 등)	1	전체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3)과의 관계 설정이 필요

출처: 연구진 작성.

- 제32조

제19조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규정이 있어 중복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표 4-38]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제6장제32조)

조항	답변수 (명)	전문가 의견		
		구분	(명)	내용
제32조 (범죄예방 사업에 대한 보조)	1	전체	1	제19조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규정이 있음

출처: 연구진 작성.

③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에 추가해야 할 조항

기타 의견으로 자치 경찰의 책임과 참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조항, 지역 주민의 참여 절차에 대한 규정, 국가단위 CPTED센터(또는 정책지원단) 설립, 국제표준과의 정합성 확보, 범죄예방강화구역 지정 등에 대한 시범사업의 상세한 사항을 새로운 장에서 구체화, 디자인의 의미를 서비스·정책·사용자 경험(UX)·커뮤니케이션 등 비물질적 요소까지 확대, 향후 하위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 제정,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고려 필요 등이 제안되었다.

3.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안)」 제안

1) 제1장 총칙

① 제1조(목적)

■ 제정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예방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 범죄예방환경 조성기반 구축, 범죄예방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정이유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안)」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규범의 목적을 밝혀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한다.

범죄예방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다양한 치안활동 주체가 자발적으로 범죄예방에 참여하도록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범죄예방정책을 수립 및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관련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법무부의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경찰청의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및 범죄예방 진단팀 운영,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사업 등 다양한 범죄예방 관련 계획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근거 법률이 없으므로 법률 제정을 통한 안정적 추진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 입법례

예방, 안전 등을 키워드로 하면서 다양한 위험 요소로부터 안전한 환경 여건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법령 사례를 조사하였다. 입법례 검토 결과, 위험 요소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궁극적으로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밝히는 사례가 대다수이다.

[표 4-39] 타 법률에서의 제정목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② 제2조(정의)

■ 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활동"이란 범죄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범죄예방디자인"이란 자연적 감시·접근통제 및 공동체 강화를 고려하여 건축물·시설·공간·제품·시스템 등을 범죄예방 기능에 최적화되도록 설계하거나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이란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개선, 범죄예방 공동체 활성화 등의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5. "범죄예방진단"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사회와 함께 범죄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찰의 협조를 받아 범죄 위험지역 또는 건축물·시설·공간 등의 물리적·사회적 환경 요인을 분석하여 범죄취약요소를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활동을 말한다.
6. "범죄예방강화구역"이란 각종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 범죄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정이유

법(안)의 용어 중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용어에 대해 그 뜻을 별도로 규정한다.

'범죄예방'을 정의한 입법 사례는 없으며 범죄의 유형별로 마련된 법령에서 해당 범죄를 정의한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범죄'는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 '예방'은 '질병이나 재해 따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하여 막는 일'이며, 따라서 '범죄예방'은 사전적으로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하여 막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범죄예방활동'은 각종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규정하여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각 정부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을 포괄하는 의미로 정의하였다. 각 정부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범죄예방활동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활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 침해사고 예방활동,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활동,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예방활동 등이다.

'범죄예방 디자인'은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개념을 반영하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자연적 감시·접근통제 및 공동체 강화를 고려하여 건축물·시설·공간, 그 밖의 물건을 설계하거나 개선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범죄예방환경'은 자연적 감시·접근통제 및 공동체 강화 등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으로 범죄예방에 최적화된 환경으로 정의한다.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은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개선, 범죄예방 공동체 활성화 등의 정책적 활동으로 정의한다.

'범죄예방진단'은 범죄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죄 위험지역 또는 건축물·시설·공간 등의 물리적·사회적 환경 요인을 분석하여 범죄취약요소를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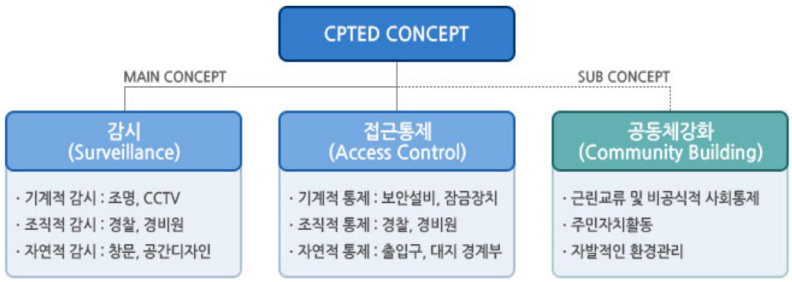

[그림 4-1] 범죄예방디자인(CPTED)의 개념

※ 자료: 범죄예방디자인 연구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cpted.kr/?r=home&c=02/0203) (검색일: 2025.6.24.)

‘범죄예방강화구역’은 각종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으로 정의한다.

■ 입법례

‘범죄예방’을 정의한 입법 사례는 없으며 범죄의 유형별로 마련된 법령에서 해당 범죄를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선거범죄’라 함은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죄 중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정의(「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하는 식이다. ‘범죄예방’과 유사한 용어로는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에서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을 각종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각각 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의 범죄예방을 ‘주민의 안전을 위한 순찰 강화, 순찰소 등 범죄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로 규정한다.

‘범죄예방활동’과 유사한 의미의 용어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관리’가 있다.

‘범죄예방환경’과 관련하여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보행환경’을 정의하고, 보행환경개선지구,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용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범죄예방진단’, ‘범죄예방강화구역’과 관련하여서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본 법률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예방’을 화재예방으로 정의하며,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화재예방안전진단 등을 추가로 정의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안전도에 대한 진단을 정의한 사례로는 화재예방안전진단, 안전보건진단.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등이 있다.

[표 4-40] ‘용어의 정의’ 중 ‘범죄예방’ 관련 입법례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제2조(정의) 1.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범죄자 교화·개선,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의미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0조(정비구역의 범죄 등의 예방) ②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한 경우 정비구역 내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순찰 강화**

2. 순찰초소의 설치 등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그 밖에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①
1. "**예방"이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5. **"화재예방안전진단"이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정의)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畵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건축기본법]
제2조 (정의)
4. "건축디자인"이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9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특별시장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2.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3.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4.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이하생략〉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특별시장등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
12.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재해대책법]
5.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15.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③ 제3조(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경찰관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책무)

■ 제정안

제3조(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경찰관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며, 범죄예방에 관한 종합적·체계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경찰관서, 자치경찰위원회는 범죄예방에 대한 정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로 협력하여 범죄예방 효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경찰관서, 자치경찰위원회는 범죄예방정책 및 범죄예방환경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홍보 등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와 시·도경찰관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에 참여할 수 있는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경찰관서, 자치경찰위원회는 효율적인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상시적인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정책의 정착·확산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정이유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범죄예방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관서의 책무를 명시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경찰관서는 범죄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며,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로 협력하여야 함을 규정한다.

■ 입법례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한 입법례 검토 결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 법률 적용 관련주체 등에 대해 관련 정책 수립·시행, 교육·홍보, 재원 확보 등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한 사례로 「범죄피해자보호법」, 국가·지방자치단체·국민의 책무를 함께 규정한 사례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

[표 4-41] '국가 등의 책무' 입법례

[건축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건축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건축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직접 발주하거나 건축주가 되는 경우 우수한 건축디자인을 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홍보**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분야 전문지식의 발전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 및 발주자는 건축서비스사업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기준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시설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체단체가 시행하는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매년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
③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시점검 및 보수 등을 통한 상시관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
④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이하 “화재예방정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예방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화재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1.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체제의 구축 및 운영
2.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교육, 홍보
3.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④ 제4조(국민의 책무)

■ 제정안

제4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경찰관서가 추진하는 범죄예방정책 및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정이유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범죄예방정책 및 사업에 모든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국민의 책무를 명시한다.

■ 입법례

[표 4-42] '국민, 지역주민의 책무' 입법례

[건축기본법] 제5조(국민의 의무) 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축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공공기관,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③ 국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6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5조(국민과 사업자의 책무) ① 국민은 국가와 인류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해사안전기본법] 제5조(국민 등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해사안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정안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범죄예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범죄예방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정이유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령과의 상충을 피하고 법령 간의 조화를 도모한다.

법령과 다른 법령 간의 적용에 있어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안)의 목적이 범죄예방을 통한 국민의 안전 확보라는 점에서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하여야 함을 명시한다.

■ 입법례

[표 4-4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입법례

[건축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건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축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관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② 녹색건축물과 관련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보행환경의 조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보행환경의 조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 제2장 범죄예방정책의 수립

① 제6조(범죄예방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 제정안

제6조(범죄예방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예방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
2. 범죄예방정책은 지역 간 차별 없이 균형 있게 수립·시행할 것
3. 범죄예방정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경찰관서, 자치경찰위원회, 국민 등 관련 주체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수립·시행할 것

■ 제정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가치기준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한다.

■ 입법례

정책 수립의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법률 대부분은 한 정책 분야의 근간을 제시하는 '기본법' 유형으로, 「국가유산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문화기본법」, 「스포츠기본법」 등이다. 기본법이 아닌 사례로는 「식생활교육지원법」 등이 있다.

입법례들의 기본원칙은 해당 법률에서 지향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보다는 해당 정책 분야의 원칙적인 가치를 제시하여 정책 수립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표 4-44] '범죄예방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입법례

[국가유산기본법] 제7조(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에 관한 보호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의 유형적·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할 것 2. 국가유산과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을 함께 보호할 것 3.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하여 국가유산의 가치 증진 및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도모할 것 4. 쉽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5.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 간 조화·균형을 이루며,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 및 다른 정책·시책과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유산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것 6.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다양성을 존중하며, 다양한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근로자가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중소·영세기업 근로자,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고용하는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및 장기근속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0. 12.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조(기본원칙)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과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한다.
2.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에 대응하는 국제적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토대로 종합적인 위기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3.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고,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위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4.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하는 기후정의를 추구함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5.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체계와 금융체계 등을 개편하여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구현되도록 노력한다.
6.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8. 기후위기가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개발도상국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조(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는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에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해당 지역의 농업·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문화기본법]
제7조(문화정책 수립·시행상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고 문화의 창조성이 확산되도록 할 것
2. 국민과 국가의 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하고 여건을 조성할 것
3. 문화 활동 참여와 문화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문화 창조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할 것
4. 차별 없는 문화복지가 증진되도록 할 것
5.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문화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
6. 문화의 국제 교류·협력을 증진할 것

[스포츠기본법]
제7조(스포츠 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스포츠권을 보장할 것
2. 스포츠 활동을 존중하고 사회전반에 확산되도록 할 것
3. 국민과 국가의 스포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할 것
4. 스포츠 활동 참여와 스포츠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할 것
5. 스포츠의 가치를 존중하고 스포츠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

6. 스포츠 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것
7. 스포츠의 국제 교류·협력을 증진할 것

[주거기본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23.〉
1. 소득수준·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3.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4.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5.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6.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8. 저출산·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9.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식생활교육지원법]
제6조(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 교육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가정의 역할, 사회구조, 식생활 소비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② 제7조(범죄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 제정안

제7조(범죄예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제10조에 따른 범죄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범죄예방정책의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2. 범죄예방정책의 주요내용
3. 범죄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4. 범죄예방정책 관련 연구·교육·홍보
5. 범죄예방과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6. 범죄예방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
7. 그 밖에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법무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보 또는 법무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이유

범죄예방을 통해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

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 이 조에서는 이를 위한 범죄예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 주기 및 절차와 함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제시한다.

기본계획은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범죄예방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수립한 기본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기본계획에는 범죄예방정책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실태조사, 연구·교육·홍보,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재원조달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 입법례

일반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일부 법령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외에 추가로 공청회 등 국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기도 한다.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는 관보 또는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한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은 중앙행정기관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부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기본계획과 함께 시행계획을 같은 조문에 포함하고 세부내용은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사례도 있다.

[표 4-45] '범죄예방 기본계획 수립' 입법례

[건축기본법] 제10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건축정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 후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5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건축서비스산업의 분야별 진흥정책 3. 제8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제13조에 따른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고용 및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 8. 제19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9. 제20조에 따른 우수 건축물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제21조에 따른 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품격제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관법]

제6조(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 · 육성하기 위하여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경관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경관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경관정책의 기본목표와 바람직한 국토경관의 미래상 정립에 관한 사항
3. 국토경관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회기반시설의 통합적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우수한 경관의 보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경관 분야의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7. 지역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에 관한 중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등 경관과 관련된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7. 24.〉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2.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행정시장
4.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광역시의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기구(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의 장(이하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 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정·변경된 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0. 22.〉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법·제도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국민 참여에 관한 사항
6.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공공디자인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광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계획을 수립하려는 시·도지사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1.〉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광역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한다. 〈개정 2023. 3. 21.〉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2023. 8. 8.〉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1.〉
⑥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5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 3. 21.〉
[제목개정 2023. 3. 2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기·내용 및 시행계획의 제출시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6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5년 단위의 계획(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2. 21.〉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저상(底床)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도입에 관한 사항
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7의2.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 간 연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
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 재원(財源) 조달 방안
9.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

다. 수립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7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나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나 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내용을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이나 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교통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려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이나 군수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받으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한 후 부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거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간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⑦ 시장이나 군수는 제6항에 따른 요청이 없으면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하며,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⑧ 시장이나 군수는 제7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변경되거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⑩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2(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실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행정구역 내 시·군의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시·군 간 균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 도입·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③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소방청장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의 감소, 안전기준의 개발,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의 향상,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착 등을 위하여 5년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7. 7. 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22.〉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 방향
2.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에 관한 사항
3.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다중이용업소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 연구·개발
5의2.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관한 기본 방향
5의3.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이하 "책임보험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축·운영
5의4.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3. 1. 3.〉

⑤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대기관리권역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질소산화물
2. 황산화물
3. 휘발성유기화합물
4. 먼지
5. 미세먼지(PM-10)
6. 초미세먼지(PM-2.5)
7. 오존(O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기환경개선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현황과 그 전망
3. 대기오염도의 현황과 그 전망
4. 대기관리권역의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5. 대기관리권역의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저감계획
6.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이하 "지역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
7.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사항
8.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
9.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에 대한 지원
1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11.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12.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13. 그 밖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변경을 요청하는 등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12조에 따른 해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수준, 환경기술의 발전추세, 공장의 신·증설의 필요성 및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과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교통약자 보행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4. 보행 관련 정보구축 방안
5.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등과 협의하고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 ·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보행 관련 계획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지역별 기본방향 및 목표
2.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
3.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성능 개선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5.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6.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식 함양 및 홍보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보행환경 정비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나.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8.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등은 지역계획에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도로 · 시설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등은 지역계획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그 지역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역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역계획안을 제출받으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교통 · 보행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또는 지역계획의 효율적인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장등에게 지역계획안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

다.
⑦ 특별시장등은 제6항에 따른 요청이 없으면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지역계획을,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계획을 확정·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특별시장등은 계획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역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⑨ 지역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계획의 수립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의 개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4조(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생활 교육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 3. 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7조(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 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여성폭력방지정책 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방향과 기본목표
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4.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5년마다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소방청장,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2. 11., 2019. 1. 15., 2023. 7. 11.〉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3. 아동·청소년·청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4.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5. 정보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6.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 · 치료 및 사후관리
7.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8. 자살 감시체계의 구축
9. 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
10. 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
11.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지원
12. 중앙 및 지역 협력기관의 지정 및 운영 방안
13. 언론의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
14.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신설 2018. 12. 11.〉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25. 1. 21.〉
1.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
2.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재활 등의 지원
3.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지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및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이하 “전문단체”라 한다)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제11조제8항에 따른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21.〉
④ 교육감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21.〉
⑤ 교육부장관은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예방교육 등에 관한 안내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2025. 1. 21.〉
⑥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3. 3. 23., 2023. 10. 24., 2025. 1. 21.〉
⑦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 1. 21.〉

[해사안전기본법]
제7조(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증진을 위한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항행환경개선에 관한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 · 단체의 장 또는 개인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소방청장은 화재예방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예방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
3.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4.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5.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
6.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소관 사무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③ 제8조(범죄예방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 제정안

제8조(범죄예방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매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제14조에 따른 범죄예방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시행계획의 보완·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범죄예방 시행계획 수립 주체는 시행계획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이유

범죄예방정책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계획 수립주기, 절차,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다.

■ 입법례

일반적으로 시행계획 수립주체, 시기, 내용, 절차로 구성되며, 계획수립주체는 개별 법령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다양하다. 시행계획 수립주체는 다음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주무부처 장관에게 제출하고, 주무부처 장관은 시행계획의 평가 및 보완·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시행계획 수립주체를 광역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로 구분하여 위계에 맞게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표 4-46] '범죄예방 시행계획 수립' 입법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3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2. 해당 연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의 추진방향 3.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4.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제출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해당 관할 구역에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요청받으면 제12조에 따른 해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시행계획 중 주요 내용을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이 시행계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개선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그 추진실적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매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시행계획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시행계획을 수립한 장에게 시행계획의 보완·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시기, 제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

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분석·평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도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도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시·도 관리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군·구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 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과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시·도지사,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사안전기본법]
제8조(해사안전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별 해사안전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할 내용과 수립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④ 제9조(계획수립의 협조)

■ 제정안

제9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기업 또는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정이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주체가 범죄예방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협조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에 협조 의무를 부과한다.

■ 입법례

[표 4-47]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입법례

[교통안전법] 제20조(계획수립의 협력 요청) ①국토교통부장관, 지정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9.〉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4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9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식생활 교육정책 및 식생활 교육 사업의 시행·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24.〉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9조(계획 수립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0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그 밖에 자살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자료 제출 요청 등)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 시·도 관리계획 또는 시·군·구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3) 제3장 범죄예방정책 추진체계

① 제10조(범죄예방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정안

제10조(범죄예방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범죄예방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범죄예방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6조에 따른 범죄예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관련 재원의 배분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정책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5. 범죄예방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 협조·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범죄예방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심의·조정하려는 사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정책이나 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정책이나 계획을 주관하는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정이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추진조직 구축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범죄예방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조정 기능을 부여하고자 한다. 위원회는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정책 평가·조정,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 협조·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입법례

각 법령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의 위원회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로 위계를 구분하여 설치하거나 정책위원회와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로 역할을 구분하기도 한다. 「건축기본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은 국가 단위 위원회와 지역 단위 위원회를 구분하며,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은 정책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대기환경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분하고 있다.

타 법률에 따른 위원회를 활용하거나 개별 법령에 따른 심의기구를 별도로 두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교통안전법」은 타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를 활용하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정책심의기구로서 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위해 지방지하안전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사항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기도 한다. 「국토기본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은 법률에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표 4-48] '범죄예방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입법례

[건축기본법]

제13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 ①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의 조정 및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가건축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자

④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6. 9.〉

1.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포함한 건축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건축분야 발전에 관한 주요 사업의 지원
3.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축문화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5. 국민의 건축문화 향유기회의 확대에 관한 사항
6.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7. 건축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건축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지역건축위원회) ① 지역의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건축정책위원회(이하 "광역건축위원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건축정책위원회(이하 "기초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광역건축위원회 및 기초건축위원회(이하 "지역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조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6. 15.〉

1.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관련 법률·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역위원회) ①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과한 법률]

제7조(교육시설정책위원회) ①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시설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시설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단체 및 전문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2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① 정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각 대기관리권역별로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각 권역별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전문성과 식견이 높은 전문가를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권역별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제13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공무원과 대기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되는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조정·검토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8조(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① 식생활 교육에 관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② 국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③ 국가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7. 14.〉
④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호선된 민간위원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식생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1.〉
⑤ 그 밖에 국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0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 ①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6. 여성폭력방지 관련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2.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그 밖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①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0조의2(자살예방정책위원회) ①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살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자살예방정책의 관계 부처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5. 자살예방정책과 관련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자살예방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자살예방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9조의3(지진 · 화산방재정책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① 지진·화산방재정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7. 24.,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1. 종합계획
2. 제14조제4항의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3. 제15조의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
4. 그 밖에 지진·화산방재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2017. 3. 21.〉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7. 24., 2017. 10. 24.〉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17. 10. 24.〉
⑤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0. 2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의뢰하는 사항
제12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② 제11조(범죄예방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정안

제11조(범죄예방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회는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범죄예방정책의 이행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또는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검토를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이유

범죄예방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을 명시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 법무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부처의 장관 등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범죄예방정책의 이행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입법례

입법례의 위원회 조항 검토결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을 통합하여 제시하는 경우와 본 법률과 같이 구분하는 경우로 나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사례가 많으며, 지방위원회의 구성은 조례로 위임하는 사례도 있다.

[표 4-49] '범죄예방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입법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지명한 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위원은 국민건강증진·질병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관계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제4항(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제4항에 따른 심의 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너지법]

제9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정부는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 3. 23.〉

④ 당연직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촉위원은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하거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③ 제12조(범죄예방실무협의체의 설치)

■ 제정안

제12조(범죄예방실무협의체의 설치) ① 범죄예방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으로 범죄예방실무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의 구체적 방안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 협조·협력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을 위하여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유관기관 범죄예방 업무 관계자, 범죄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이유

법무부 소속으로 범죄예방실무협의체를 설치하여 범죄예방정책의 기본계획 수립·시행의 구체적 방안,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업무 협조, 연구·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한다. 협의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유관기관 범죄예방 업무 담당자, 범죄예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

■ 입법례

「건축기본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과 같이 정책위원회 지원 실무조직으로서 '기획단', '추진단'을 두는 유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과 같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로서 주무부처 소속 실무위원회를 운영하는 유형, 「평생교육법」과 같이 법률로 실무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해당 실무협의체의 구성과 기능을 구체화하는 유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 같이 법률에 규정된 특정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행령을 통해 협의체 구성·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유형이 있다.

[표 4-50] '범죄예방실무협의체의 설치' 입법례

[건축기본법] 제17조(기획단) 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기획단을 둔다. ②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 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과 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8조(지방시대기획단) ① 지방시대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 소속으로 지방시대기획단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지적재조사기획단 등) ① 기본계획의 입안, 지적재조사사업의 지도·감독, 기술·인력 및 예산 등의 지원, 중앙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보좌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지적재조사기획단을 둔다. 〈이하 생략〉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실무추진단) ① 경쟁력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은 소재·부품·장비의 수급에 대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수급대응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8조(국가교통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국가교통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분야별 국가교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조정
2. 국가교통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5조(테러대책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대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대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 및 사전 조정을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테러대책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테러센터장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1항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3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공무원과 대기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되는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조정·검토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실무협의회) ① 협력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조정하고 의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의 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무조정실의 차장 중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1명, 법제처 차장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을 말한다)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하는 각 1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시·도지사 중에서 지명하는 1명이 공동으로 된다.

④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⑤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실무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생교육법]
제15조의2(장애인 평생학습도시) ⑤ 국가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 제7조의3(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①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이하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라 한다)는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②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
2.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법 제19조의2에 따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등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관련 기관의 장
③ 교육부장관은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44조(협의체) 환경부장관은 순환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업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에 따른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법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순환경제 촉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④ 제13조(범죄예방정책책임관의 지정)

■ 제정안

제13조(범죄예방정책책임관의 지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범죄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범죄예방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정책책임관을 지정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정이유

범죄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범죄예방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입법례

탄소중립, 양성평등, 재난관리, 지속가능성 확보 등 새롭게 도입한 정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책임관 제도를 운영하는 입법 사례가 있다. 「장애인복지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에만 책임관을 두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양성평등기본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청년기본법」에서는 중앙행정기

관 뿐 아니라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도 책임관을 지정한다.

[표 4-51] '범죄예방정책책임관의 지정' 입법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2022제정 **제79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①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요건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별영향평가법] 2011 분석평가책임관–〉2018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제14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업무를 총괄하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18. 3. 27.〉 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2. 3., 2017. 3. 21., 2018. 3. 27.〉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제출, 개선 조치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2016. 12. 20., 2018. 3. 27.〉
[양성평등기본법] 2002 여성정책책임관 –〉2015 양성평등정책책임관 **제13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양성평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전담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전담전문인력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2002 제정 제10조(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의 지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그 기관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하는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의 지정 및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제12조(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4 규정 신설 **제75조의2(안전책임관)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책임관 및 담당직원을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9.〉 ② 안전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초기대응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책임관의 임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2022 제정 **제22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과 그에 따른 추진계획, 제15조에 따라 개발한 지속가능발전지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청년기본법] 2020 제정

제16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그 기관의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⑤ 제14조(범죄예방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제정안

제14조(범죄예방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경찰청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주요 정책자문을 수행하고 관계 부처와의 업무 협의·조정 및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범죄예방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범죄예방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명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이유

범죄예방을 위한 주요 정책자문을 수행하고 관계 부처와의 업무 협의·조정 등을 위한 범죄예방자문위원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한다. 범죄예방정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범죄예방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경찰청에 설치하도록 한다.

■ 입법례

자문위원회 설치 관련 입법사례 검토 결과 관련 위원회 또는 주무부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두는 사례가 있다.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사례로 「신행정수도특별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있으며, 주무부처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해당 부처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유형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폐기물관리법」이 있다. 그 외에 법률에 규정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주요 업무 또는 이를 위한 조직에 대해 자문하는 위원회 규정을 시행령에 두는 유형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점자법」, 「온천법」 등이 있다.

범부처 정책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특정 행정기관에 설치하는 사례는 없으나 특정기관에 자문위원회를 두는 사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있다. 주무부처는 법무부이나 지정지급결제제도 관련 자문위원회를 한국은행에 두도록 하고 있다.

[표 4-52] '범죄예방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입법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자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권한에 속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에 10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조(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자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9조(교정자문위원회)** ① 수용자의 관리·교정교화 등 사무에 관한 지방교정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에 교정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4. 23.〉 ②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지방교정청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9. 4. 23.〉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법원조직법] 제25조(사법정책자문위원회) ①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사법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의뢰하는 사항
[폐기물관리법]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대상자 또는 조치명령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8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48조의3(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① 제48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3. 2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7조(지원센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21. 6. 15.〉 1. 실태 및 권익보호를 위한 국내외 제도조사 2. 불공정거래, 폭력 등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3. 성폭력 등의 방지를 위한 긴급전화센터 연계 및 지원 4.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4의2.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 지원 5.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직업능력 개발 및 교육 지원 6. 업무의 홍보 등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중문화예술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 및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 제4조(자문위원회)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온천법 시행령]
제11조(온천개발자문위원회) ① 법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법 제21조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등 온천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하 생략〉

[점자법]
제11조(점자교육의 기반조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점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보급하고 점자교원을 양성하는 등 점자교육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2. 9. 27., 2024. 2. 27.〉
영 제3조(점자정책자문위원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자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7.〉
1. 점자 교육과정과 교재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점자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하 생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자문위원회) ①한국은행총재는 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 및 지정 취소와 관련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행 총재가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⑥ 제15조(지역 범죄예방협의체)

■ 제정안

제15조(지역 범죄예방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죄예방과 관련된 모든 사업 등 범죄예방정책을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 관계기관, 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 범죄예방협의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역 범죄예방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범죄예방협의체의 결정을 반영하여 범죄예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범죄예방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로서 '지역 범죄예방협의체' 설치에 관하여 규정한다. 지역 범죄예방협의체는 경찰, 관계기관, 전문가,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 범죄예방협의체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시·도경찰관서의 장에게

지역 범죄예방협의체의 결정을 반영해 범죄예방 정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시·도경찰관서의 범죄예방정책에 지역 범죄예방협의체의 결정을 반영하도록 하여 각 지역 특성에 따라 치안 경쟁력을 강화한다.

■ 입법례

각 법령에서 추진하는 정책 및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로서 협의체를 두고 있다. 국가기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등으로 설치 주체에는 차이가 있다.

[표 4-53] '지역 범죄예방협의체의 설치' 입법례

[경관법] **제17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등은 경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경관사업의 계획 수립, 경관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 등 경관사업의 각 단계에 참여하여 경관사업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추진협의체)**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지**역 주민, 시민단체, 관련 기업, 관계 전문가,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는 추진협의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③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7조의2(협의체의 운영 등)** ① 시장·군수등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제117조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을 받기 전에 **사업시행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 시기, 협의 대상·방법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정책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의 관리에 필요한 협력 증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광역 또는 지역단위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4) 제4장 범죄예방환경 조성기반 구축

① 제16조(범죄예방 실태조사)

■ 제정안

제16조(범죄예방 실태조사) ① 법무부장관은 범죄예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범

> 죄예방 활동의 현황, 범죄예방정책 추진 상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령으로 정한다.
> ④ 법무부장관은 국민이 범죄예방 관련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여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정이유

법무부장관에게 범죄예방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개 의무를 부여한다. 범죄예방정책 추진 현황, 범죄예방활동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게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관계 기관 등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한다.

■ 입법례

실태조사 수행 주체는 주무부처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개별 법령마다 상이하며 조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경우와 수행 여부를 선택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조사 수행주체 외에 시기, 방법, 대상 등 세부 내용은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다.

일부 법령은 실태조사 결과 공개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사례와 필요시 공개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다. 「석면안전관리법」은 의무공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필요시 공개한다.

[표 4-54] '범죄예방 실태조사' 입법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2013. 3. 23., 2019. 4. 23., 2023. 5. 16.〉
1. 교통약자의 숫자 등 현황
2.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
2의2.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체계 구축 현황
3.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보행환경 실태
5.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
5의2.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현황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9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필요한 미세먼지 배출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한다)는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관할 지역의 보행자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1. 보행자길에 설치된 안전시설 및 관리 현황
2. 보행자길에서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積置物) 등의 현황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보안등, 그 밖에 보행자를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제7조(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석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③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그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실태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관리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등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실태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설물의 범위 등 실태점검의 실시와 제6항에 따른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2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에 관하여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여성폭력실태조사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스토킹 실태조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6.〉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여성폭력실태조사의 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2(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다중운집의 일시 및 장소
2. 순간 최대 인원 또는 총인원
3. 공간의 수용 능력
4. 인파의 밀집도 및 유동시간
5. 그 밖에 다중운집인파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제66조의11제6항에 따른 지역안전협의회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하생략〉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실태조사) ①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소방대상물의 용도별·규모별 현황
2. 소방대상물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현황
3.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 설치·관리 현황
4.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소방청장은 소방대상물의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유·운용하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관계인 등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② 제17조(범죄예방 진단)

■ 제정안

제17조(범죄예방 진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물·시설·공간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지역주민으로부터 관할구역 내 건축물·시설·공간 등에 대해 범죄예방을 위한 진단을 요청받거나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 건축물·시설·공간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과 협의를 거쳐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진단을 위하여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범죄예방진단을 하는 경찰관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진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진단 결과를 조사 대상 건축물·시설·공간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진단의 절차 및 방법, 범죄예방진단결과의 기록·유지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한 지역 내 건축물 등에 대한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관할 지역 내 주민 등으로부터 범죄예방진단 요청을 받거나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자 협의를 거쳐 수행하도록 한다.

범죄예방을 위한 진단을 위하여 시·도경찰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경찰청 내부조직으로 범죄예방 담당 부서 운영 중이며, 범죄예방 연구·계획 수립, 범죄예방진단,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기획·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4-55] 경찰관서의 범죄예방 관련 조직과 담당업무

구분	범죄예방 관련 조직	범죄예방 관련 업무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3	1. 범죄예방에 관한 기획·조정·연구 등 예방적 경찰활동 총괄 2. 범죄예방진단 및 범죄예방순찰에 관한 기획 · 운영 3. 경비업에 관한 연구·지도 〈이하 생략〉
	범죄예방대응국 내 범죄예방대응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2. 범죄예방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및 지침 수립 3. 범죄예방진단 및 범죄예방순찰에 관한 기획 · 운영 4. 기동순찰대 운영에 관한 사항 5.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기획 · 운영 6. 협력방범에 관한 기획·연구 및 협업 〈이하 생략〉
서울경찰청	범죄예방대응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1조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2. 범죄예방진단 및 범죄예방순찰에 관한 기획 · 운영 3. 경비업에 관한 지도·감독 〈이하 생략〉
	범죄예방대응부 내 범죄예방대응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2. 범죄예방진단 및 범죄예방순찰에 관한 기획 · 운영 3. 경비업에 관한 지도·감독 4. 기동순찰대 운영·관리〈이하 생략〉
시·도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2. 범죄예방진단 및 범죄예방순찰에 관한 기획 · 운영

	제 시행규칙 제71조	3. 경비업에 관한 지도·감독 4. 기동순찰대 운영·관리 〈이하생략〉

출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 입법례

시설물 등에 대한 진단 관련 입법례로 교통시설안전진단,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화재예방안전진단 등이 있다. 교통시설안전진단은 해당 시설 설치 전 시행하는 안전진단과 교통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안전진단이 있다.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는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 또는 시설물의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을 대상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표 4-56] '범죄예방 진단' 입법례

[교통안전법]

제34조(교통시설안전진단)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철도·공항의 교통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교통시설설치자"라 한다)는 해당 교통시설의 설치 전에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교통안전진단기관(이하 "교통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 17.〉

②제1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은 교통시설설치자는 해당 교통시설에 대한 공사계획 또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거나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작성·교부한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관련서류와 함께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의 교통시설설치·관리자는 해당 교통시설의 사용 개시(開始) 전에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 1. 17.〉

④ 제3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은 교통시설설치·관리자는 해당 교통시설의 사용 개시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작성·교부한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17.〉

⑤ 교통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로 하여금 해당 교통사고 발생 원인과 관련된 교통시설에 대하여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7. 1. 17.〉

⑥ 제5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은 교통시설설치 · 관리자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작성·교부한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17.〉

⑦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의 대상 · 기준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 1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2천제곱미터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5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경우
2.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 있는 경우
3.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 결과 다중이용업소에 부여된 등급(이하 "화재안전등급"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다중이용업주 또는 관계인에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4. 11. 19., 2017. 7. 26., 2018. 10. 16., 2021. 1. 5., 2021. 11. 30., 2023. 1. 3.〉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되거나 설비된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안전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안전시설등의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3. 1. 3.〉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안전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 1. 3.〉

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를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3. 1.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화재예방안전진단)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위험요인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재예방진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에는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 · 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에게 보수 ·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화재예방안전진단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③ 제18조(범죄예방 디자인 활성화 시책)

■ 제정안

제18조(범죄예방 디자인 활성화 시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구역의 공간구조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앞서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17조에 따른 범죄예방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된 범죄예방디자인 시책에 대하여 일정 주기로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구역의 공간구조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범죄예방디자인 활성화 시책 수립 시 관할 경찰관서의 의견을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에 범죄예방진단 등을 요청하도록 한다.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내 범죄예방대응과에서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기획·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표 [2-92] 참조)

또한 근거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범죄예방 디자인 시책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관된 원칙과 규범을 제공하도록 한다. 범죄예방 디자인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역, 기초를 포함하여 총 167개[49]이며, 각 조례는 일반적으로 범죄예방디자인 적용대상과 기본원칙, 활성화사업 추진 대상을 규정하고 관할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표 4-57] 범죄예방디자인 자치법규 사례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기본방향	제3조 기본원칙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 책무
제5조 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 적용범위
제6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등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7조 적용범위	제7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제8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제8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제9조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제9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10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구성 · 운영	제1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제11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대상사업 등의 협의
제12조 교육 및 홍보	제12조 홍보 및 포상
	제13조 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입법례

범죄예방디자인을 시설계획에 반영하도록 법제화한 사례로 「건축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건축법」은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및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49)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일 2025.5.31.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건축기준 적용하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생의 안전을 고려하여 교육시설 디자인에 범죄예방디자인 기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공원에서의 범죄예방을 위한 디자인 기준을 제시한다.

[표 4-58] '범죄예방 디자인' 관련 입법례

[건축법]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0호, 2021. 7. 1., 일부개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교육시설의 디자인)**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시설 디자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역량 있는 전문가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교육시설은 창의력 신장을 위한 공간구조, **범죄예방**, 감염예방, 무장애, 생태, 친환경, 녹색, 교통정온화, 청정환기 등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필요한 디자인 기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1. 12. 28.〉 ③ 교육시설의 계획·설계과정에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 사용자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사용자 참여의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도시공원의 안전기준)** ②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에서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을 계획·조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11.〉 1. 도시공원의 내·외부에서 이용자의 시야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할 것 2. 도시공원 이용자들을 출입구·이동로 등 일정한 공간으로 유도 또는 통제하는 시설 등을 배치할 것 3.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들이 다양한 시간대에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배치할 것 4. 도시공원이 공적인 장소임을 도시공원 이용자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시설 등을 적절히 배치할 것 5. 도시공원의 설치·운영 시 안전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디자인과 자재를 선정·사용할 것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특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입법화한 사례 조사 결과, 활성화시책 수립 주체 및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활성화 대상의 유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원방안으로 지원기구 설치·운영, 행·재정적 지원 등이 있다.

[표 4-59] '범죄예방 디자인 활성화 시책' 관련 입법례

[건설기술 진흥법] 제10조의2(융·복합건설기술의 활성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과 정보통신, 전자, 기계 등 다른 분야 기술을 융·복합한 기술(이하 "융·복합건설기술"이라 한다)의 개발·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융·복합건설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스마트건설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융·복합건설기술의 정책개발 2. 융·복합건설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융·복합건설기술의 검증 및 실증 4. 융·복합건설기술과 관련된 창업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5. 국내외 융·복합건설기술 동향 및 시장정보의 조사·분석
6. 그 밖에 융·복합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⑥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제5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범위·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1.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2.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범위에서 건축기준 완화 기준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정부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자금 지원
2.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3.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보행안전문화 활성화 시책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사업에의 주민 참여 확대, 보행자길에서의 통행 불편 사례 및 개선 의견 접수 등 보행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안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① **정부**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관리하는 시설(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제공 등을 위하여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 및 공공 부문의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민간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과 지원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④ 제19조(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

■ 제정안

제19조(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 내 범죄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지역 범죄예

방협의체의 의견을 듣고 그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을 고려하여 범죄취약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별 범죄발생현황, 지역 주민의 성별, 연령대, 인구수 등 지역적 특성, 범죄유발요인 등
2. 강력범죄 발생지역, 여성대상범죄 취약지역, 외국인범죄 빈발지역, 도서벽지 등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⑥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의 절차, 방법, 사업계획의 내용 및 그 밖에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평가의 기준과 방법 ·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내 범죄취약지역을 파악하고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한다.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범죄예방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며, 국가는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의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고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한다.

■ 입법례

유사 입법례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있으며 사업 시행의 주체, 사업 대상, 사업계획의 내용 및 수립 절차, 재원 확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사업 시행주체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이며, 사업 대상은 특별시장 등이 지정한 '보행환경개선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 시행 후에는 평가 규정을 마련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고 주무부처에 보고하도록 한다.

[표 4-60]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 입법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특별시장등**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3. 14.〉
1.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2. 해당 구역의 전통 및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보행자길의 조성
3. 차도와 보도의 분리, 고원식(高原式) 횡단보도(주변 도로보다 약간 높게 만든 횡단보도)의 설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성능 개선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5.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을 위한 보행편의증진시설의 설치
6.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계획을 확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전에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등은 계획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특별시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⑤ 제20조(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 등)

■ 제정안

제20조(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종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아 범죄예방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과 제15조에 따른 지역 범죄예방 협의체의 의견을 들어 특정 지역이나 시설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역의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이유

시·도경찰청장을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권자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15조에 따른 지역 범죄예방협의체의 의견을 들어 범죄예방 강화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각종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아 범죄예방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강화구역을 지정하도록 하여, 시·도경찰청의 강화된 범죄예방활동 대상 지역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기존에 경찰청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강화 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특별)치안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다각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해 왔으므로, 이러한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뒷받침하고자 한다.

■ 입법례

특정 환경여건 개선을 위해 지정하는 구역 사례로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보행환경개선지구,

미세먼지집중관리구역, 화재예방강화지구 등이 있으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관리·해제한다.

[표 4-61]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 관련 입법례

[주차장법]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따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 실태의 개선 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제4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른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2. 살수차·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3.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4.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5.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해제 요건, 절차,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특별시장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2.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3.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4.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이하 "보행환경개선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의 구역이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2.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

③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12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관리) ① 특별시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매년 보행환경개선지구별로 그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등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3조(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① 특별시장등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상실된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8.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⑥ 제21조(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조치)

■ 제정안

제21조(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조치) ① 시·도경찰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범죄예방진단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결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범죄예방 강화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도경찰청장은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소속 경찰관을 증원·배치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찰직무 응원법」 제1조에 따라 다른 시·도경찰청장 등에게 응원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범죄예방 강화구역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범죄예방 강화구역 내의 시설이나 지역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또는 행사의 관리자·사업자에게 시설·환경의 물리적 개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자체 경비 인력의 증원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물리적 환경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이유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범죄예방강화구역에 대해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범죄예방 강화 조치

근거를 마련한다. 시·도경찰청장은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고 범죄예방 강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경찰력 증원 등의 조치와 함께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 입법례

주차환경개선지구, 미세먼지집중관리구역,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경우 해당 지구·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주차환경개선지구는 지정 시 관리목표 및 방법, 주차수요 예측, 주차장 확충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미세먼지집중관리구역은 대기오염도 상시 측정, 살수차·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된 경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며 관계인에 대한 교육에 대한 기준을 명시한다.

보행환경개선지구의 경우 해당 지구를 대상으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본 법률의 범죄예방 강화구역과는 상이한 관리 유형이다. 보행환경개선지구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매년 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유지·관리를 시행한다.

[표 4-62]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조치' 관련 입법례

[주차장법] 제4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 및 지정의 필요성 2. 주차환경개선지구의 관리 목표 및 방법 3. 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4. 장기·단기 주차수요에 대한 예측 5. 연차별 주차장 확충 및 재원 조달계획 6. 노외주차장 우선 공급 등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른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2. 살수차·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3.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4.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5.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해제 요건, 절차,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관리) ① 특별시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매년 보행환경개선지구별로 그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등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③ 소방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소방관서장은 제3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또는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보수, 보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명할 수 있다.

⑤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현황, 제3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의 결과, 제4항에 따른 소방설비등의 설치 명령 현황, 제5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현황 등이 포함된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⑦ 제22조(범죄통계의 작성·관리 및 공개)

■ 제정안

제22조(범죄통계의 작성·관리 및 공개) ① 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은 범죄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정확한 지역별·유형별 범죄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각 형사사법기관이 작성·관리하는 범죄통계를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범죄예방 활동이나 학술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당한 범위 내에서 범죄통계를 공개할 수 있다. 이 때,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정이유

형사사법기관은 정확한 지역별·유형별 범죄통계를 작성·관리하고, 법무부장관은 각 통계를 통합하여 관리할 의무 규정을 마련한다.

검찰, 경찰,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은 각각 범죄통계를 작성·관리하고 있으나, 통계 작성·관리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및 기준이 부재하므로 범죄예방 활동이나 학술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범죄통계 공개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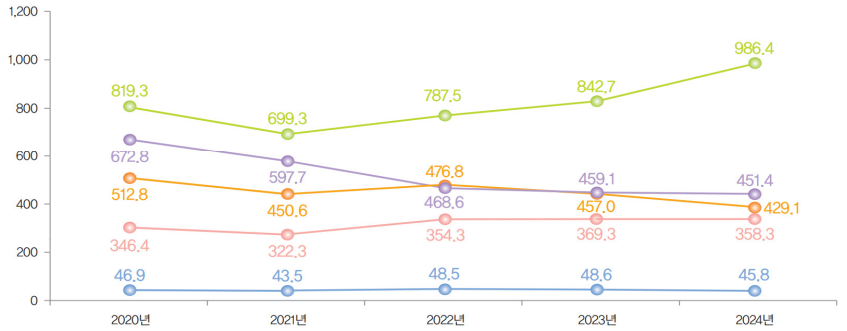

[그림 4-2]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범죄통계 사례(주요 범죄유형별 발생비 추이)
출처: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의 경찰청 범죄통계 일부 발췌

■ 입법례

정보 및 통계 관리 입법례 대부분은 주무부처 장관이 해당 정책 추진과 관계된 통합적인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간 공유하도록 한다.

국토부장관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한 정보를 공개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에 기반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연계·분석·활용·공유·공개 의무를 가지며,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정보는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 4-63] '범죄통계의 작성·관리 및 공개' 관련 입법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2024. 1. 16.〉
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설물관리계획
2. 제9조에 따른 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
3. 제9조제8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내용
4. 제1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5.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6.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 등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7. 제24조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에 관한 사항
8. 제28조, 제31조제1항, 제35조 및 제67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9. 제28조의2, 제31조제1항, 제35조 및 제67조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10. 제36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적
11.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12. 제41조에 따른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13.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0.〉
제55조의2(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
2. 제16조에 따른 안전등급의 이력
3. 제22조에 따른 중대한 결함의 이력
4. 제23조에 따른 긴급안전조치 현황
5. 안전점검등·성능평가·유지관리의 이력
6. 시설물의 제원(諸元)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관한 정보의 공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공공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3. 제2호 이외의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의 경우: 제1항제6호의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2(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 ①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정보를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되는 재난관리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해당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정보의 처리를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긴급구조지원기관 또는 재난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재난관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유 대상 재난관리정보의 범위,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4(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에 기반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연계·분석·활용·공유·공개(**이하 "수집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을 위하여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데이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데이터 제공의 대상·범위 및 재난안전데이터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⑧ 제23조(범죄위험지수의 공표)

■ 제정안

제23조(범죄위험지수의 공표) ① 경찰청장은 지역별 범죄위험수준과 범죄예방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이하 "범죄위험지수"라 한다)를 개발·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범죄위험지수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범죄위험지수의 개발·조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범죄위험지수의 조사 항목, 방법, 공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이유

지역별 범죄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경찰청장이 지역별 범죄위험지수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범죄예방지수의 조사 항목, 방법, 공표절차 등은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되, 지역 간 비교가 가능한 범죄위험지수를 공표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입법례

가족친화지수, 교통문화지수, 교통복지지표, 보행안전지수, 식생활안전지수, 안전지수 등 정책 추진 대상의 수준 및 정책 추진 효과를 계량화한 지표를 만들고 공표하는 내용의 입법 사례가 다수 있으며, 각 법령은 해당 지수를 객관적인 수치로 계량 및 측정하기 위한 개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범죄위험지수와 유사한 사례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안전 수준 및 보행정책 추진 노력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서 '보행안전지수'가 있으며, 매년 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표 4-64] '범죄위험지수의 공표' 관련 입법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가족친화지수의 개발 및 공표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 지표(이하 "가족친화지수"라 한다)를 개발·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지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제2항에 따라 가족친화지수 측정 대상이 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교통안전법] **제57조(교통문화지수의 조사 및 활용)** ①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와 관련된 국민의 교통안전의식의 수준 또는 교통문화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수(이하 "교통문화지수"라 한다)를 개발·조사·작성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문화지수가 공표된 경우, 교통행정기관은 교통문화지수의 결과를 활용하여 교통시설 개선 및 교통문화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4.〉 ③ 교통문화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의2(교통복지지표의 조사 및 활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 여객시설 및 도로의 이동편의와 보행환경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하 "교통복지지표"라 한다)를 개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복지지표를 활용하여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수준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표된 교통복지지표의 결과를 활용하여 교통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교통복지지표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보행안전지수의 산정 및 공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안전 수준 및 보행정책 추진 노력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보행안전지수"라 한다)를 개발·조사·산정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보행안전지수는 매년 조사·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행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3조(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식생활 안전지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의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56호, 2018. 8. 1., 일부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이하 "안전지수"라 한다)를 개발·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안전지수를 고려하여 안전수준 및 안전의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안전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등 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지수의 조사 및 안전진단의 실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3. 12.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지수의 개발 · 조사 및 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3. 12. 26.〉
⑤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방법, 공표절차 및 안전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⑨ 제24조(범죄 등에 대한 예보·경보)

■ 제정안

제24조(범죄 등에 대한 예보·경보) 경찰청장은 연쇄 살인·강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보 또는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정이유

범죄 등 각종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경보 또는 예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

여 연쇄 살인·강도·전기통신금융사기 같은 위해에 대하여 국민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각종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재난'의 범위에는 연쇄 살인·강도·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위해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예보 또는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경찰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또는 위해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권자에게 예보나 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표 4-6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예보·경보 대상 재난의 범위

구분	내용
재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
①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②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제3조(정의) 제1호 재난의 정의 내용을 정리함

■ 입법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에 대한 징후 식별 시 또는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상황에 부합하는 위기경보를 발령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시·군·구 종합계획에 재난예보·경보체계를 포함하도록 한다. 그 외에 개별법령의 경보 관련 규정으로는 테러경보, 대기오염경보, 산사태위기경보, 산불경보, 화재위험경보 등이 있다.

[표 4-66] '범죄 등에 대한 예보·경보' 입법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5제1항제1호 단서의 상황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심각 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우선 조치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 1. 7.〉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7.,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1. 7., 2017. 7. 26., 2019. 12. 3.〉
1.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④ 제3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기상청장이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 1. 17., 2023. 12. 26.〉
1.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지진 · 지진해일 · 화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난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디지털광고물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 1. 7., 2017. 1. 17., 2019. 12. 3.〉
⑥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내비게이션 제조업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의 예보·경보 실시 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6. 1. 7., 2017. 1. 17.〉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1조에 따른 위험구역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군·구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2., 2016. 1. 7., 2017. 1. 17.〉
⑧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시·군·구종합계획을 기초로 시·도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시·도종합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6. 1. 7., 2017. 1. 17., 2017. 7. 26.〉
⑨ 시·도종합계획과 시·군·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7., 2017. 1. 17.〉
1. 재난 예보·경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침
2.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종합적인 재난 예보·경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으로부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⑩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시·도종합계획과 시·군·구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 7., 2017. 1. 17., 2017. 7. 26.〉
⑪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시·도종합계획과 시·군·구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항과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 7., 2017. 1. 17.〉
⑫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의 절차, 시·도종합계획, 시·군·구종합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7., 2017. 1. 17.〉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2조(테러경보의 발령) ① 대테러센터장은 테러 위험 징후를 포착한 경우 테러경보 발령의 필요성, 발령 단계, 발령 범위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테러경보를 발령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의 이하의 테러경보 발령 시에는 실무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이하 생략〉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①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1.〉〈이하 생략〉

[산림보호법]
제45조의6(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 및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산림청장은 산사태예측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이하 생략〉

[산림재난방지법]
제30조(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①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이 조에서 "산불경보"라 한다)를 발령할 수 있다.〈이하 생략〉

[자연재해대책법]
제29조의2(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가뭄 방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화재 위험경보) 소방관서장은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3조의4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특보·태풍예보에 따라 화재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분석·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⑩ 제25조(범죄예방디자인 인증)

■ 제정안

제25조(범죄예방디자인 인증) ① 경찰청장은 범죄예방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한 건축물·시설·공간 및 제품 등의 소유자, 관리자, 생산자 등은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경우 건축물·시설·공간 및 제품 등에 인증 받았음을 표시하거나 이를 광고에 이용할 수 있다.
④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을 받은 건축물·시설·공간 및 제품 등이 아닌 것은 범죄예방디자인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증기준·인증절차 및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이유

경찰청장은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범죄예방디자인의 적용대상은 건축물, 방범창, 방범시스템, 잠금장치, CCTV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이루어진 방범제품과 주로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시설, 도시계획 등 두 가지 영역이다. 방범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는 주요국에서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방범제품 성능 향상 등을 통한 관련 산업진흥 효과를 도모할 수 있으며 방

범제품 제조자 입장에서도 인증제도에 참여할 유인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표 4-67] '범죄예방디자인 인증' 관련 해외 입법 사례

구 분	영국 (SBD)	네덜란드 (PKVW)	일본 (CP)
연혁	1989년 영국 동남부 지역에서 처음시작	영국제도를 벤치마킹, 1996년 도입	2006년 전국통합 인증기준 마련
인증대상	건축물 및 제품(창호, 셔터 등)	건축물 및 제품(창호, 셔터 등)	건축물 및 제품(창호, 셔터 등)
관련법규	범죄와 무질서법 1998 지속가능 주택규정	주택법 1999 건축법 2004	건물부품 방법성능 시험규칙 등
인증표준	유럽표준 및 영국표준	유럽표준 및 네덜란드 표준	규칙과 세칙에서 상세기준 마련

출처: 경찰청 생활안전국

■ 입법례

인증과 관련된 입법사례는 시설이나 공간에 대한 인증과 제품에 대한 인증으로 구분된다. 시설이나 공간에 대한 인증 사례로 교육시설안전인증, 녹색건축인증, 스마트도시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이 있으며, 제품에 대한 인증 사례로 재난안전제품인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이 있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주무부처 장관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법률로 인증 및 인증 취소, 인증기관의 지정 및 취소, 인증의 표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경우 법률에 인증의 유효기간, 사후관리, 인증통계의 작성 및 관리, 인증운영기관의 설치, 인증수수료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표 4-68] '범죄예방디자인 인증' 관련 입법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시설안전인증 등) ① 교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교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 결과 해당 교육시설이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은 교육시설이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그 밖에 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 주기, 등급, 유효기간, 인증절차 및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 업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 · 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재지정 시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19. 4. 30.〉

④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⑤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신청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 4. 30.〉
⑥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9. 4. 30.〉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16. 1. 19., 2019. 4. 30.〉

제19조(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30., 2024. 1. 9.〉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5.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6. 인증기관의 임직원이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7.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1. 9.〉

제20조(인증의 취소) ①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7.〉
1.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2. 인증 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중요 정보나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납한 경우
4.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수준 향상 및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
3. 스마트도시 관련 서비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인증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2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34조(인증의 표시 등) ①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스마트도시, 스마

트도시기반시설, 스마트도시 관련 서비스 등에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9까지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주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3., 2021. 6. 8.〉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절차,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절차,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8.〉
제10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
②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의4(인증의 표시) ①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의 시설주는 해당 대상시설에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이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6(인증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0조의7(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3.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인증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8(청문)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0조의6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제10조의7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제10조의9(인증 통계의 작성·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의 활성화 및 제10조의5에 따른 사후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시설별 인증의 현황 등 인증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등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의10(인증운영기관의 설치) ① 국가는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인증운영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인증기관 관리·지원
2. 인증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
3. 인증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인증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그 밖에 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의 설치·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11(인증 수수료) ① 시설주는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 및 예비인증 신청,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이하 "인증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인증 신청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수료 납부의 방법·기간, 수수료 감면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안전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심사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 사실 등을 관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이하 "인증제품"이라 한다)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인증제품임을 표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는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기준·대상·절차·표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인증제품의 사후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인증제품의 품질수준 유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인증의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한 경우
4. 업종변경·폐업 등으로 인하여 인증제품의 생산·제작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진 · 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시설물(이하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
2.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을 때 근거나 전제가 되었던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3.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의 건축주·소유자 및 관리자 등이 인증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 대상·기준·등급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환경보건법]
제23조의4(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등) ① 환경부장관은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을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경적 안전여부를 평가하여 해당 시설을 환경안심 시설로 인증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어린이활동공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제31조제1항제3호, 제31조제2항, 제33조(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받은 경우
3.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 제1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제3호·제5호·제5호의2·제6호·제7호에 해당하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인증기간, 인증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⑪ 제26조(인증의 취소 및 청문)

■ 제정안

제26조(인증의 취소 및 청문) ① 경찰청장은 제25조에 따라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을 받은 건축물·시설·공간 및 제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인증 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중요 정보나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3.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4. 기타 인증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정이유

범죄예방디자인 인증 취소 기준을 명시하고 인증 취소를 위해서는 사전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을 규정한다.

■ 입법례

인증 조항에 인증의 취소를 포함하여 규정한 경우와 별도의 조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한 경우로 나뉜다. 교육시설안전인증,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어린이활동공간 안심인증은 인증 조항

에 인증의 취소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표 4-69] '인증의 취소 및 청문' 관련 입법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시설안전인증 등)**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은 교육시설이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0조(인증의 취소)** ①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7.〉 1.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2. 인증 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중요 정보나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납한 경우 4.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인증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2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6(인증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8조(인증의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한 경우 4. 업종변경 ·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인증제품의 생산·제작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 2.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을 때 근거나 전제가 되었던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3.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의 건축주·소유자 및 관리자 등이 인증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환경보건법] **제23조의4(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등)**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어린이활동공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제31조제1항제3호, 제31조제2항, 제33조(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받은 경우
3.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1호 · 제2호, 제1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제3호·제5호·제5호의2·제6호·제7호에 해당하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5) 제5장 범죄예방 지원체계

① 제27조(범죄예방공단의 설립)

■ 제정안

제27조(범죄예방공단의 설립) ① 국가는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범죄예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범죄예방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범죄예방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범죄예방공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범죄예방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및 연구개발
2. 범죄예방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3. 범죄예방 관련 민간단체 지원사업
4. 범죄예방디자인 인증 및 관리
5. 범죄예방디자인 관련 국제교류 협력사업
6. 그 밖에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예방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⑦ 범죄예방공단에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그 밖에 범죄예방공단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이유

범죄예방 관련 정책, 기술, 디자인, 교육 등을 발전시키고,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등 각종 범죄예방 정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찰의 행정적 사무에서 분리된 독자적 기관이 필요하다. 따라서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 및 범죄예방디자인 등 각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범죄예방공단의 설립을 규정한다.

■ 입법례

각 법령에서 추진하는 정책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전문기관 관련 입법례 조사 결과 독립적인 법인 형태의 조직을 설립하는 경우와 별도의 전문조직을 설치

또는 지정하는 형태로 구분된다.

법인 형태 조직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주소지에서 설립등기를 하게 되며,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례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에너지공단, 교육환경보호전문기관 등이 있다.

전문조직의 경우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와 전문성을 갖춘 기존 조직을 지정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신규 조직을 설치하거나 기존 조직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례는 탄소중립지원센터 등이며, 신규 조직을 설치하는 사례는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운영기관,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등이다. 기존 조직을 지정하는 사례는 녹색건축센터,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석면환경센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환경보건센터 등이다.

[표 4-70] '범죄예방공단' 관련 입법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8조(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설립)** ①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3. 7. 30.〉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주소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소 또는 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 ①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과 산학협력 촉진을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설립한다. 〈개정 2018. 1. 16.〉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공단은 제45조의21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0. 4. 12., 2020. 12. 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45조의21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3. 제45조의22에 따른 차입금 4. 제45조의27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 그 밖의 수입금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촌·어항법] **제57조(한국어촌어항공단의 설립)** ①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연구, 관광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4. 3. 24., 2018. 4. 17.〉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8. 4. 17.〉 ③ 공단의 설립과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4. 17.〉 ④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4. 1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한국에너지공단의 설립 등)**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5. 1. 28.〉 ②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는 공단의 설립·운영과 사업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연시기, 출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이하 "교육환경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환경 보호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
2.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3. 교육환경과 관련한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4. 교육환경과 관련한 통계의 작성·보급
5. 교육환경 보호사업의 수행, 관리, 기술 지원 및 평가
6.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연수·교육·홍보 및 그 자료의 개발
7.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
8.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
9.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 등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③ 교육환경보호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교육환경보호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환경보호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⑦ 교육환경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도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2.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3. 지방자치단체별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에 대하여 그 특성을 고려한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이하 "전환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전환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일자리 및 지역사회 영향 관련 실태조사
2. 산업·노동 및 지역경제의 전환 방안, 일자리 전환모델의 연구 및 지원
3. 재취업, 전직 등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및 취업의 지원
4. 업종전환 등 기업의 사업전환에 관한 컨설팅 및 지원
5. 관련 법령·제도 개선 건의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취약한 지역 및 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환센터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환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3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1. 19.〉

1.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
2. 녹색건축의 인증
3. 삭제 〈2024. 2. 20.〉
4.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제로에너지건축물 시범사업 운영 및 인증 업무
6.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를 업무의 내용과 기능에 따라 녹색건축지원센터, 녹색건축사업센터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지원센터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전한 보행환경의 조성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행 활성화 시책의 발굴 및 지원
2. 보행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3. 보행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4.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 지원
5.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보행 관련 공공사업의 계획·시행 및 평가 지원
6. 보행안전지수의 개발·조사 및 산정 지원
7.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제33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석면의 체계적 관리, 석면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폐석면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처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석면의 관리·처리 등과 관련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석면환경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전문인력, 시설,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석면환경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10(인증운영기관의 설치) ① 국가는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인증운영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인증기관 관리·지원
2. 인증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
3. 인증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인증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그 밖에 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의 설치·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의 기간 중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의3제6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거부한 경우
6.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보건법]

제26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감시·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역학조사의 지원 및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평가의 지원 등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 등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지정 목적이나 사업의 성격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그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재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③ 국가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재지정된 환경보건센터(이하 "환경보건센터"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 2016. 1. 27.〉

④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 1., 2016. 1. 27.〉

제26조의2(환경보건센터의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1. 정기평가: 연 1회 환경보건센터의 전년도 사업 실적 등을 평가(제2호의 종합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평가는 생략한다)
2. 종합평가: 제26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때 환경보건센터의 운영 전반을 평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를 평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환경보건센터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해당 환경보건센터의 장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1. 경고조치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의 중단
2. 경고조치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원 금액의 감액

3.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원 금액의 증액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센터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2016. 1. 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거나 운영을 한 경우
2. 제26조제4항에 따른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해당 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3년 동안 두 번 이상 제26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 1.〉
③ 삭제 〈2012. 2. 1.〉
제27조의2(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성질환 및 그 밖에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시책 마련과 조치가 필요한 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정보의 보급과 의료지원 및 교육 · 체험활동 등의 운영을 위하여 권역별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② 제28조(범죄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 제정안

제28조(범죄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① 경찰청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정이유

경찰청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경찰법」 제26조에 이미 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사업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 입법례

각 법령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 연구 및 개발 추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표 4-71]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관련 입법례

[경찰법] **제26조(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지원 등)** ① 경찰청장은 치안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치안분야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안분야 관련 연구·조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경찰청장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6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2. 21., 2019. 4. 23.〉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표준모델 개발 3.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직접 운전하는 데에 필요한 운전장치 또는 차량의 개발 4. 특별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개발 4의2.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의 표준모델 개발 5. 보행환경의 개선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와 교통사업자 등에게 보급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개발을 위하여 차량 크기, 편의시설 등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6조(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 ① 정부는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녹색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2. 녹색기술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3.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4. 녹색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등 ② 정부는 정보통신·나노·생명공학 기술 등 다른 기술 영역과의 융합을 촉진하고 녹색기술의 지식재산권화를 통하여 지식기반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제1항의 시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2조(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녹색기술(이하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1.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2. 녹색건축물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3.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4. 녹색건축자재 개발 및 시공 기술의 개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6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경우 정책시행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9. 2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성과의 이용·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이용·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미세먼지 관련 연구개발) 정부는 미세먼지의 측정 및 예보, 미세먼지의 효율적 저감 및 관리, 국민건강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행안전 연구·개발 사업 등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법·제도의 연구
2.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 참여 방법 또는 교육사업 등의 개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8조(순환경제기술·서비스의 연구·개발 지원) 정부는 순환경제기술·서비스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순환경제기술·서비스의 동향 및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2. 순환경제기술·서비스의 연구·개발을 위한 우수 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순환경제기술·서비스의 연구·개발에 대한 금융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순환경제기술·서비스의 권리화 및 실용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순환경제기술·서비스 제품의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6. 순환경제기술·서비스 관련 국제 공동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순환경제기술 · 서비스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1조(연안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 연구)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상세표준도(詳細標準圖)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는 해당 편의시설에 관하여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로 본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①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과학기술 진흥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3. 22., 2017. 7. 26.〉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난 또는 안전 분야의 연구기관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 연구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중에서 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을 지정하여 그 총괄기관에게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제3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개발된 기술의 보급·진흥 등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⑤ 제4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총괄기관의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연구개발사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 1. 7.〉

⑥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와 제3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등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 7.〉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2조(지진·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진 및 화산활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지진·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소관 사항에 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를 하여야 하며, 지진·화산방재 기술 및 제도 등에 관한 국제공동연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5. 7. 24., 2017. 3. 21.,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차원의 내진성능목표 설정 및 내진등급 분류 등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7. 3. 21.,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화산방재대책을 연구하고 지진·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측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5. 7. 24., 2017. 3. 21.,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9., 2013. 8. 6., 2017. 3. 21., 2017. 7. 26.〉

⑤ 제4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의 기업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③ 제29조(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 제정안

제29조(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범죄 유형 및 특성을 분석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 교육, 교육방안 개발, 범죄예방 홍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정이유

효과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 및 범죄예방활동 관계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범죄예방 교육 및 대국민 홍보활동의 근거를 마련한다.

■ 입법례

[표 4-72] '범죄예방 교육' 관련 입법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정부는 국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녹색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1. 가정용 또는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을 절감하는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2. 승용·승합 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3.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국민 인식을 확산하고 실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 ④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와 국민 등이 관련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녹색생활 실천이 모든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⑦ 공영방송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고 기후위기 관련 공익광고를 활성화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0조(교육·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보호·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자, 범죄피해자에 관한 상담·의료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9조(여성폭력 예방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교육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1. 17., 2024. 1. 16.〉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2의2.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고 활동 장려·지원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과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2024. 1. 16.〉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 · 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1조(지진·화산방재 교육·훈련 및 홍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등은 소속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지진·화산재해로부터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의 시설·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과 직장에서 필요한 행동요령 등에 대한 지진·화산방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5. 7. 24., 2017. 3. 21.〉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등은 지진현상 및 화산현상을 체험하고, 지진 및 화산활동 발생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위하여 지진·화산체험교육장을 설치할 수 있고, 지진·화산방재 기술의 발전을 위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행사의 개최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5. 7. 24., 2017. 3. 21., 2017. 7. 26.〉
③ 시·도지사등은 관할 구역의 주민들에 대한 지진·화산방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5. 7. 24., 2017. 3. 21.〉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진·화산재해 관련 업무종사자에 대한 지진·화산방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환경보건법]
제23조의3(교육) 환경부장관은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④ 제30조(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의 활성화 등)

■ 제정안

제30조(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의 활성화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는 자율방범·교통안전·학교폭력예방·청소년계도 활동과 범죄예방문화 조성 등 범죄예방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정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여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주민들이 자발

적으로 참여하는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다.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는 자율방범·교통안전·학교폭력예방 등 포괄적인 범죄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현재 조직되어 활동하는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로 자율방범대가 대표적이며,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도 교통안전활동을 수행하고 있어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표 4-73]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 현황

구 분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조 직	4,361(개)	4,135(개)	250(개)
인 원	약 105,200(명)	약 25,000(명)	약 563,000(명)
주요 활동	취약시간대 지역순찰활동 청소년 선도·보호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질서유지 홍보활동	등·하교길 교통안전지도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출처: 경찰청 생활안전국

■ 입법례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르면 재정적 지원은 사업비 지원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자율방범대 등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에 사업비 외에 운영비 등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2014. 5. 28.)으로 2016년부터는 법률이나 조례의 근거가 없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관련 법률에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표 4-74]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의 활성화' 관련 입법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⑤ 제31조(범죄예방사업에 대한 보조)

■ 제정안

제31조(범죄예방 사업에 대한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개선, 범죄예방시설 및 장비의 보급 등 범죄예방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에서 수행하는 범죄예방 사업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 입법례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 추진에 대한 국고보조 대상과 범위를 정하여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표 4-75] '범죄예방사업에 대한 보조' 관련 입법례

[건축기본법] 제20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건축문화 관련 시설의 설립 및 운영 2. 출판·전시·축제 등 건축문화 관련 사업 3. 국민의 건축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4. 건축 관련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 5. 제21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6. 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7. 그 밖에 건축문화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국고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1조(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제안 플랫폼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5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화재의 예방 등에 대한 지원) ① 소방청장은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를 명하는 경우 해당 관계인에게 소방설비등의 설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환경보건법]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② 환경부장관은 제23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4., 2014. 3. 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6) 제6장 보칙

①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 제정안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인증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정이유

본 법률에 따른 법무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찰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경찰청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입법례

대부분의 입법례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행정기관에 위임하고, 해당 법률에 따

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표 4-76] '권한의 위임·위탁' 입법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국립환경과학원의 장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42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4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0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2020. 6. 9., 2021. 3. 16.〉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결과검토 및 내진 보강의 권고 2.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와 그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3. 제19조제1항·제2항·제9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실시,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의 통보 및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4. 제36조제3항에 따른 실적관리 및 실적확인서의 발급 5. 제5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및 소규모 취약시설 정보화시스템의 구축·운영 6. 제58조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이하 생략〉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 2021. 10. 14.〉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안순찰대의 편성 · 운영 3.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업무를 레저스포츠 관련 학과 및 학부 등을 운영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10. 14.〉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② 제33조(포상)

■ 제정안

제33조(포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이유

범죄예방활동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범죄예방에 공로가 있는 기관, 법인, 단체, 개인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한다.

■ 입법례

법률 제정의 주요 목적 달성에 기여한 기관, 법인,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포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표 4-77] '포상' 관련 입법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112신고자 포상) ① 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및 포상금의 지급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세법] 제324조(포상)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및 제275조의3에 해당되는 관세범을 세관이나 그 밖의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 2. 제269조부터 제27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범죄물품을 압수한 사람으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 및 내국세 등을 추가 징수하는 데에 공로가 있는 사람 4. 관세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사람〈이하생략〉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14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4조(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① 국가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테러에 관한 신고자, 범인검거를 위하여 제보하거나 검거활동을 한 사람 또는 그 친족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에 관한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테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였거나, 테러에 가담 또는 지원한 사람을 신고하거나 체포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평가 및 포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 제8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제26조, 제29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48조, 제66조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 · 복구 및 대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2조(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포상)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의2(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구조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다.

[해사안전기본법]
제25조(포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안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대상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선정하여 우수 소방대상물 표지를 발급하고,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방법, 평가 대상물의 범위 및 평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③ 제34조(과태료)

■ 제정안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에 관한 광고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부과·징수한다.

■ 제정이유

범죄예방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관련 규정 위반

시 경찰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을 받은 자,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을 받은 건축물·시설·공간 및 제품 등이 아님에도 범죄예방디자인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에 관한 광고를 한 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입법례

인증제도 운영을 제도화한 법률 사례의 경우 인증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를 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표 4-78] '과태료' 입법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5. 28., 2016. 1. 19., 2019. 4. 30., 2024. 2. 20.〉

1.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3항,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권자에게 근거자료 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거자료 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한 건축주
3.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일사의 차단을 위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단열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지능형 계량기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의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 및 사전확인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6. 제15조의2를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인증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7.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녹색건축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자

8.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서류를 첨부한 자

9.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부과·징수한다. 〈신설 2016. 1. 19.〉

1. 제1항제1호 및 제9호에 따른 과태료: 국토교통부장관
2.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과태료: 허가권자**

3. 제1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2. 3., 2019. 12. 3., 2021. 6. 8., 2021. 7. 27.〉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예비인증을 포함한다) 및 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3. 제11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4. 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 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중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

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10. 24., 2018. 3. 27., 2019. 12. 3.〉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사용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에 합격하거나 합격하였음을 표시한 자
4. 제10조제3항에 따른 침수흔적 등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침수흔적표지를 훼손한 자
5.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자
7. 제1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9.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중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자

② 삭제 〈2018. 3. 27.〉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Chapter. 5

제5장

결론

1. 연구 요약
2. 연구 성과 및 향후 과제

1. 연구 요약

■ 현행 범죄예방환경조성 관련 제도의 문제점

현행 범죄예방환경조성 관련 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근거법령 부재로 인한 사업의 지속성 부족, 둘째,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미비, 셋째, 범죄데이터 수집·활용의 어려움, 넷째, 예산 한계 및 전문 인력 부족, 다섯째, 주거환경·건축물 용도별 범죄 차이를 고려한 세분화 미흡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 범죄예방환경조성 관련 법제도 현황 분석(기입법 추진 6개안)

기존에 입법이 추진되었던 6개 안은 표현은 다르더라도 모든 법안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생활' 또는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 5-1] 법률안별 제정 목적

법률안	년도	조	내용
범죄예방 기본법안	2015	제1조	국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범죄예방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협의와 협업을 통한 범죄예방의 기반을 조성
범죄예방 기본법안	2016	제1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 구현
			범죄예방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함 범죄예방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016	제1조	국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벗어나 보다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다양한 치안활동의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활동에 참여 범죄 위험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020	제1조	국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벗어나 보다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다양한 치안활동의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활동에 참여 범죄 위험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
지역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2021	제1조	각종 범죄로부터 벗어나 보다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다양한 치안활동의 주체들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지역의 범죄예방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관한 법률안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025	제1조	각종 범죄로부터 벗어나 보다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다양한 치안활동의 주체들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지역의 범죄예방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또한 범죄예방 및 범죄예방 디자인의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할경찰서, 지역주민의 책무, 범죄예방 진단, 관할지역 범죄예방디자인 시책, 범죄예방디자인 인증, 범죄예방 강화구역, 위해에 대한 예보·경보, 과태료,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에 중점을 두어 규정하고 있다.

[표 5-2] 법률안별 포함 내용

내용		범죄예방기본법안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015	2016	2016	2020	2021	2025
정의	범죄예방	○	○	○		○	○
	협업적 범죄예방	○					
	범죄예방 디자인	○		○	○	○	○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			
	범죄예방 진단			○		○	○
	범죄예방 강화구역			○		○	○
책무	국가	○	○	○			○
	지방자치단체	○	○	○	○	○	○
	공공기관*		○				
	관할 경찰서				○	○	
	국민			○			
	지역주민				○	○	○
기본원칙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조사	실태조사		○				
진단	범죄예방 진단			○	○	○	○
정보	범죄통계 작성		○				
	범죄예방 정보자료 관리			○	○	○	○
계획	범죄예방 기본계획	○	○				
	범죄예방 시행계획	○	○				
	범죄예방 실행계획	○					
	지역 범죄예방디자인시책	○		○	○	○	○
사업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					
조직	범죄예방 자문위원회	○					
	범죄예방 정책위원회		○				
	범죄예방실무협의체		○				

	범죄예방정책책임관		○				
	자문기구			○			
	범죄예방정책협의체						○
	지역 범죄예방디자인 협의체			○	○		○
	지역치안 협의체					○	
위험 지수	범죄위험지수 공표			○			
인증	범죄예방디자인 인증	○		○	○	○	○
강화 구역	범죄예방 강화구역	○		○	○	○	○
예보·경보	위해에 대한 예보·경보	○		○	○	○	○
자원 봉사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	○	○	○			
연구	범죄예방공단	○					
	범죄예방디자인센터			○			
	연구·개발 사업			○	○	○	○
	지역별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
보조	범죄예방사업에 대한 보조				○	○	
	지역별 범죄예방사업 등에 대한 보조						○
교육	범죄예방 교육		○	○			
홍보	범죄예방 활동 홍보		○	○			
과태료		○		○	○	○	○
포상			○				
위임	권한의 위임	○	○	○		○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한 쟁점

법률 제정을 위한 쟁점은 첫째, 목적에 대한 접근 방향, 둘째, 범죄예방 책무의 범위, 셋째, 권한 및 인권 침해, 넷째, 행정적·재정적 지원, 다섯째, 제도 운영 주체 등이다.

[표 5-3]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 입법 시도된 법률안의 주요 쟁점

이슈	쟁점
1.목적에 대한 접근 방향	법안의 추진 및 운영 주체, 참여 주체, 법안에서 다루는 계획의 위계, 의견수렴 기구의 운영 방식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2.범죄예방 책무의 범위	경찰 외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국민)도 범죄예방 책무를 갖는가
3.권한 및 인권 침해	범죄 관련 정보는 누구에게 어디까지 개방하고 활용하게 할 것인가

4.행정적, 재정적 지원	공공재원의 지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_정부나 지자체의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관한 사업?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까지?
5.제도 운영 주체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제 운영 시 운영 주체는 어떤 기능이 가능한 조직이어야 하는가. 건축허가와 연계되어야 하는가

출처: 연구진 작성.

■ 전문가 FGI를 통한 법령 체계화 방안

전문가 FGI 실시 결과, 법률안 전반에 대한 의견으로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국가(경찰) 사무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 범죄예방정책 수립·시행 주체로서 법무부의 역할에 대한 문제, 협력 의무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 범죄통계의 작성·관리 및 공개 관련 타 법률과의 충돌 문제, 그 외 용어 사용에 대한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국가(경찰) 사무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는 자치경찰사무라는 의견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 지방정부 및 시·도자치경찰과의 연계를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범죄예방정책 수립·시행 주체로서 법무부의 역할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법무부의 업무 범위에 범죄예방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의견, 법무부가 물리적 환경 개선 중심인 CPTED 정책을 주도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협력 의무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와 관련하여 부처 간 협력 의무가 약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며, 협력의 방식이 불명확하여 협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범죄통계의 작성·관리 및 공개 관련 타 법률과의 충돌 문제와 관련하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서 형사사법정보를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수집·저장 또는 이용할 수 없다 규정하는 점을 지적하였고, 법원(사법부)은 행정부(법무부)에 종속된 기관이 아닌 3부에 해당하므로 범죄통계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지적하였다.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범죄'라는 단어의 재고, 쉬운 용어의 사용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고 용어의 혼용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표 5-4]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안)」 법률안 전반에 대한 의견 요약

조항	답변 수(명)	전문가 의견		
		구분	(명)	내용
법률안 전반 (3명)	2	국가(경찰)사무 설정 문제	1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는 자치결창사무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함

			1	지방정부 및 시·도자치경찰과의 연계를 법률에 반영해야 함
	2	법무부 역할 문제	1	법무부의 업무 범위에 범죄예방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움
			1	법무부가 물리적 환경 개선 중심인 CPTED 정책을 주도하기에 어려움
	1	협력 의무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	1	협력 의무가 약하고 책임 소재 불분명
				협력의 방식이 불명확하여 협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1	범죄통계의 작성·관리 및 공개 관련 타 법률과의 충돌 문제	1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서 형사사법정보를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수집·저장 또는 이용할 수 없다 규정
				법원(사법부)은 행정부(법무부)에 종속된 기관이 아닌 3부에 해당
	2	용어의 사용	1	'범죄' 용어에 대한 거부감을 고려하여 사용 지양하고 거부감 없는 용어로 풀어서 사용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상투적인 문구 삭제
			1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며 주요 용어의 띄어쓰기가 일관되지 않음

출처: 연구진 작성. 중복 답변.

■ 범죄예방환경 조성 관련 법령 제정 방안 제안

기존에 제출된 법률안에서 제안된 내용을 통합하고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6개 장, 35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범죄예방정책의 수립과 추진', '범죄예방 환경조성 기반 구축', '범죄예방 지원체계'의 세 가지를 목적으로 설정하고 역할 주체별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Top-down 방식과 Bottom-up 방식을 통합하여 Top-down 방식은 국가 단위 정책 수립과 관련된 법무부 등 정부부처 중심으로, Bottom-up 방식은 대민 범죄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을 중심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양 방향 모두 협력하며 각 단계를 연결하는 형태로 정리하였다. 계획의 단계는 국가단위 단계, 지방자치단체 단계, 지역 밀착 단계의 3단계로 구성하며 법무부 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경찰청장의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단계별 심의·자문·협의 기구로서 범죄예방정책위원회, 자문위원회, 지역협의체를 규정하였다. 또한 주체 간 협력을 위해 책무가 있는 관계 기관의 협력범위 및 역할을 규정하였다. 데이터의 작성 및 관리, 공개에 관한 조항을 설정하고, 지역과 밀착된 사항으로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범죄예방 강화구역 설정에 관한 내용을 지정하였다.

추가적으로, 범죄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안전영역을 생활안전 영역으로 확대해야 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차년도 사업에서 추진하기 위한 「생활안전환경조성법(안)」 예시를 본 보고서의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안)」 주요 내용

법의 목적은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을 지원·촉진하는 것이다.

총 6개의 장으로 이루어지며, 제1장 총칙은 목적·정의·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시 등, 제2장 범죄예방정책 수립은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체계화 등, 제3장 추진체계는 정책위원회, 실무협의체, 자문위원회, 책임관 지정 등, 제4장 기반 구축은 범죄예방진단·강화구역 지정·디자인 인증제 등, 제5장 지원체계는 범죄예방공단 설립·교육·연구·보조금·자원봉사활성화 등, 제6장 보칙은 권한위임·포상·과태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주요 방향은 첫째, 법령을 통합적·단계적으로 체계화, 둘째, 법무부, 지자체, 경찰청, 민간 등 주체 간 협력의무를 명문화, 셋째, 범죄데이터 작성·관리·공개 의무화, 넷째, 지역 밀착형 조항 강화, 다섯째,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제 법제화 및 전문기관 운영 근거 마련 등이다.

2. 연구 성과 및 향후 과제

■ 연구 성과 및 기대효과

기존 산재되어 있던 범죄예방환경조성에 관한 다양한 관련 기준, 조례,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하여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안)」을 마련하였으며, 근거 법령 제정을 통해 범죄예방환경조성과 관련한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의 역할 기능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다. 실제 법안 제정 추진을 위한 추진체를 구성(국회, 법무부, 경찰청 등)하고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범죄예방 환경조성 지원법을 실행하는 주체로서 건축공간연구원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추진 과정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범죄예방이 단순 치안이 아닌 생활안전·도시정책 과제로 확대될 필요성에 대한 수요를 인지하였다. 이에 따라 범죄예방환경조성에서 생활안전환경조성으로 범위가 확장된 법령 제정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차년도에 본 사업에서 범죄예방을 생활안전 영역으로 확대하는 후속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 검토 대안으로서 「생활안전환경조성법(안)」을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 향후 과제

실제 제도화 추진을 위하여 법령의 세부 조항 간 중복·충돌을 검토하고 고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 및 입법기관(국회)과의 협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범죄안전에 국한된 현재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의 영역을 생활안전 전반으로 확대·개편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생활안전정책 전반에 관련한 법령 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를 생활안전정책연구센터로 확대·개편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s

강용길·박민영. (2014). CEPTED 제도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Vol.14 No.2. pp.3-28.

관계부처 합동. (2023).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안).

경찰청. (2024). 2023 경찰청 범죄통계.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List.do?q_bbsCode=1115&estnColumn2=%EB%85%84%EB%8F%84) (검색일: 2025.2.19.)

국회사무처. (2016).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호. 2016.11.10.

국회사무처. (2017a).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4호. 2017.2.23.

국회사무처. (2017b).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2호. 2017.8.28.

국회사무처. (2019). 경찰청 소관 법안심사자료-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윤재옥의원안). 2019.4.

김고원·강석진. (2019). 설문조사를 통한 법제도 및 정책측면의 효과적인 CPTED 적용방안 연구. 한국CPTED학회지. Vol.10 No.2. pp.73-112.

김연수. (2013). 도시재생사업과 범죄예방 - 도시재생사업과 CPTED, 무질서, 그리고 범죄두려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15권 5호. pp.23-59.

박헌수. (2015). 한국의 CPTED 도입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중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범죄예방디자인 연구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cpted.kr/?r=home&c=02/0203) (검색일: 2025.6.24.)

범죄예방정책과. (2019). 범죄예방 법률안 자료.

법무부. (2022).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신의기 외. (2008).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안지호. (2024). 여성 1인가구 '범죄 불안' 커졌다...사회 안전 인식도 30%. 1코노미뉴스. 2024.11.13. (https://www.1conom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89) (검색일: 2025.2.19.)

양진석. (2010). 환경설계(CPTED)를 활용한 도시범죄 예방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왕연상. (2021). 경기도 내 범죄 피해 비용 36조 원…약취 유인 강간 각 6조 원. 부천포커스. 2021.02.15. (http://www.e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833) (검색일: 2025.2.19.)

월간중앙. (2021). [특별 초대석] '생활치안 컨트롤타워' 김교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월간중앙. 2021.08.20. (https://www.m-joong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456) (검색일: 2025.2.19.)

유지인. (2025). 김교흥 국회의원, '범죄예방기반조성법' 대표발의... 대응 패러다임 전환. 경기신문. 2025.07.30.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857531) (검색일: 2025.11.3.)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main/mainPage.do).

이수진. (202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CPTED 관련 조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동훈. (2023). 한국의 CPTED 관련 법령·조례 현황과 발전 방안.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영진·손동필. (2016). 건축물의 범죄예방 관련 법령 개선방안 연구 - 건축법 및 하위법령을 중심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조영진 외. (2019). 범죄예방 건축기준 개선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지표누리 국가발전지표. (2023). 범죄피해두려움.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lasCd=2&idxCd=4264) (검색일: 2025.2.19.)

최용성·곽대훈. (2020). CPTED의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 영국, 호주에 대한 비교법제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CPTED학회지 Vol.11 nO.2. pp.127-153.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2016).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2020).

범죄예방 기본법안. 서청원의원 대표발의 (2015).

범죄예방 기본법안. 권성동의원 대표발의. (2016)

지역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기반 조성을 위한 법률안. 김영배의원 대표발의. (2021).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김교흥의원 대표발의. (2025).

부록 1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안)」

[별표 1]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 최종안

조	제목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예방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 범죄예방환경 조성기반 구축, 범죄예방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활동”이란 범죄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범죄예방디자인"이란 자연적 감시·접근통제 및 공동체 강화를 고려하여 건축물·시설·공간·제품·시스템 등을 범죄예방 기능에 최적화되도록 설계하거나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이란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개선, 범죄예방 공동체 활성화 등의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5. "범죄예방진단"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사회와 함께 범죄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찰의 협조를 받아 범죄 위험지역 또는 건축물·시설·공간 등의 물리적·사회적 환경 요인을 분석하여 범죄취약요소를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활동을 말한다. 6. "범죄예방강화구역"이란 각종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 범죄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경찰관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며, 범죄예방에 관한 종합적·체계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경찰관서, 자치경찰위원회는 범죄예방에 대한 정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로 협력하여 범죄예방 효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경찰관서, 자치경찰위원회는 범죄예방정책 및 범죄예방환경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홍보 등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와 시·도경찰관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에 참여할 수 있는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경찰관서, 자치경찰위원회는 효율적인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상시적인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정책의 정착·확산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	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경찰관서가 추진하는 범죄예방정책 및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범죄예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범죄예방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범죄예방정책의 수립	
제6조	범죄예방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예방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 2. 범죄예방정책은 지역 간 차별 없이 균형 있게 수립·시행할 것 3. 범죄예방정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경찰관서, 자치경찰위원회, 국민 등 관련 주체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수립·시행할 것
제7조	범죄예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제10조에 따른 범죄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범죄예방정책의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2. 범죄예방정책의 주요내용 3. 범죄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4. 범죄예방정책 관련 연구·교육·홍보 5. 범죄예방과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6. 범죄예방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 7. 그 밖에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법무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보 또는 법무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범죄예방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매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제14조에 따른 범죄예방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시행계획의 보완·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범죄예방 시행계획 수립 주체는 시행계획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계획수립의 협조	①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기업 또는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범죄예방정책 추진체계	
제10조	범죄예방정책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범죄예방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범죄예방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6조에 따른 범죄예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관련 재원의 배분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정책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5. 범죄예방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 협조·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범죄예방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이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심의·조정하려는 사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정책이나 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정책이나 계획을 주관하는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범죄예방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회는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범죄예방정책의 이행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또는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검토를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범죄예방실무협의체의 설치	① 범죄예방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으로 범죄예방실무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의 구체적 방안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 협조·협력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을 위하여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유관기관 범죄예방 업무 관계자, 범죄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범죄예방정책책임관의 지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범죄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범죄예방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정책책임관을 지정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범죄예방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경찰청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주요 정책자문을 수행하고 관계 부처와의 업무 협의·조정 및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범죄예방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범죄예방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명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지역 범죄예방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죄예방과 관련된 모든 사업 등 범죄예방정책을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 관계기관, 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 범죄예방협의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역 범죄예방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범죄예방협의체의 결정을 반영하여 범죄예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장	범죄예방환경 조성기반 구축	
제16조	범죄예방 실태조사	① 법무부장관은 범죄예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범죄예방 활동의 현황, 범죄예방정책 추진 상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령으로 정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국민이 범죄예방 관련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여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범죄예방 진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물·시설·공간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지역주민으로부터 관할구역 내 건축물·시설·공간 등에 대해 범죄예방을 위한 진단을 요청받거나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 건축물·시설·공간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과 협의를 거쳐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진단을 위하여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범죄예방진단을 하는 경찰관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진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진단 결과를 조사 대상 건축물·시설·공간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진단의 절차 및 방법, 범죄예방진단결과의 기록·유지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범죄예방 디자인 활성화 시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구역의 공간구조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앞서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17조에 따른 범죄예방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된 범죄예방디자인 시책에 대하여 일정 주기로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9조	범죄예방환경조성사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 내 범죄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지역 범죄예방협의체의 의견을 듣고 그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을 고려하여 범죄취약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별 범죄발생현황, 지역 주민의 성별, 연령대, 인구수 등 지역적 특성, 범죄유발요인 등 2. 강력범죄 발생지역, 여성대상범죄 취약지역, 외국인범죄 빈발지역, 도서벽지 등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⑥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의 절차, 방법, 사업계획의 내용 및 그 밖에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평가의 기준과 방법 ·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범죄예방 강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종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아 범죄예방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

	구역 지정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과 제15조에 따른 지역 범죄예방 협의체의 의견을 들어 특정 지역이나 시설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역의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조치	① 시·도경찰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범죄예방진단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결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범죄예방 강화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도경찰청장은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소속 경찰관을 증원·배치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찰직무 응원법」 제1조에 따라 다른 시·도경찰청장 등에게 응원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범죄예방 강화구역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범죄예방 강화구역 내의 시설이나 지역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또는 행사의 관리자·사업자에게 시설·환경의 물리적 개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자체 경비 인력의 증원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물리적 환경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범죄통계의 작성·관리 및 공개	① 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은 범죄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정확한 지역별·유형별 범죄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각 형사사법기관이 작성·관리하는 범죄통계를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범죄예방 활동이나 학술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당한 범위 내에서 범죄통계를 공개할 수 있다. 이 때,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범죄위험지수의 공표	① 경찰청장은 지역별 범죄위험수준과 범죄예방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이하 "범죄위험지수"라 한다)를 개발·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범죄위험지수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범죄위험지수의 개발·조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범죄위험지수의 조사 항목, 방법, 공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범죄 등에 대한 예보·경보	경찰청장은 연쇄 살인·강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보 또는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	범죄예방디자인 인증	① 경찰청장은 범죄예방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한 건축물·시설·공간 및 제품 등의 소유자, 관리자, 생산자 등은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경우 건축물·시설·공간 및 제품 등에 인증 받았음을 표시하거나 이를 광고에 이용할 수 있다. ④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을 받은 건축물·시설·공간 및 제품 등이 아닌 것은 범죄예방디자인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증기준·인증절차 및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인증의 취소 및	① 경찰청장은 제25조에 따라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을 받은 건축물·시설·공간 및 제품 등이 다

	청문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인증 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중요 정보나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3.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4. 기타 인증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장	범죄예방 지원체계	
제27조	범죄예방공단의 설립	① 국가는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범죄예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범죄예방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범죄예방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범죄예방공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범죄예방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및 연구개발 2. 범죄예방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3. 범죄예방 관련 민간단체 지원사업 4. 범죄예방디자인 인증 및 관리 5. 범죄예방디자인 관련 국제교류 협력사업 6. 그 밖에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예방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⑦ 범죄예방공단에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그 밖에 범죄예방공단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① 경찰청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범죄 유형 및 특성을 분석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 교육, 교육방안 개발, 범죄예방 홍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의 활성화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는 자율방범·교통안전·학교폭력예방·청소년계도 활동과 범죄예방문화 조성 등 범죄예방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	범죄예방 사업에 대한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개선, 범죄예방시설 및 장비의 보급 등 범죄예방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2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인증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	포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에 관한 광고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부과·징수한다.

출처: 연구진 작성.

부록 2

「생활안전환경조성법(안)」 추가제안 및 비교

[별표 2] 「범죄예방환경조성법(안)」과 「생활안전환경조성법(안)」 조문비교

조	「범죄예방환경조성법(안)」	「생활안전환경조성법(안)」	비고
제1조 (목적)	이 법은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예방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 범죄예방환경 조성 기반 구축, 범죄예방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범죄 등을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생활안전환경 조성기반 구축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예방 중심에서 생활안전으로 포괄범위 확장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활동"이란 범죄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범죄예방디자인"이란 자연적 감시·접근통제 및 공동체 강화를 고려하여 건축물·시설·공간·제품·시스템 등을 범죄예방 기능에 최적화되도록 설계하거나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이란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개선, 범죄예방 공동체 활성화 등의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5. "범죄예방진단"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사회와 함께 범죄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찰의 협조를 받아 범죄 위험지역 또는 건축물·시설·공간 등의 물리적·사회적 환경 요인을 분석하여 범죄취약요소를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활동을 말한다. 6. "범죄예방강화구역"이란 각종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 범죄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고”란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화재사고, 교통사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사고를 말한다. 2. “범죄”란 형사사건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범죄를 말한다. 3. “생활안전관리”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범죄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생활안전디자인”이란 각종 사고·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시설·공간·제품·시스템 등을 생활안전 기능에 최적화되도록 설계하거나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생활안전환경 조성사업”이란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의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5. “생활안전진단”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사회와 함께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찰·소방·교통 등 관계 기관(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의 협조를 받아 건축물·시설·공간 등의 물리적·사회적 환경 요인을 분석하여 취약요소를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활동을 말한다. 6. “생활안전강화구역”이란 생활안전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범죄”는 형사사법기관에 따라 분류에 차이가 있으므로 ‘형사사건범죄’로 포괄하여 정의 - 형사사건범죄에는 재산범죄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의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사고”용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환경·사회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예: 홍수로 인한 침수 사고, 땅꺼짐 사고 등 포함할 수 있음)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며, 범죄예방에 관한 종합적·체계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경찰관서, 자치경찰위원회는 범죄예방에 대한 정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로 협력하여 범죄예방 효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경찰관서, 자치경찰위원회는 범죄예방정책 및 범죄예방환경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홍보 등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경찰관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에 참여할 수 있는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경찰관서, 자치경찰위원회는 효율적인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상시적인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정책의 정착·확산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사고·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며, 생활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체계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은 생활안전에 대한 정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로 협력하여 생활안전관리 효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은 생활안전정책 및 생활안전환경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홍보 등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은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생활안전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생활안전자원봉사단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은 효율적인 생활안전환경 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상시적인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안전정책의 정착·확산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협력기관-경찰, 소방, 교통, 보건
제4조 (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경찰관서가 추진하는 범죄예방정책 및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국민은 생활안전정책 및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범죄예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범죄예방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생활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② 생활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관계법령과의 관계, 중복규정 등 고려 필요)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대책법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예방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 2. 범죄예방정책은 지역 간 차별 없이 균형 있게 수립·시행할 것 3. 범죄예방정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경찰관서, 자치경찰위원회, 국민 등 관련 주체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수립·시행할 것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생활안전관리를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 2. 생활안전정책은 지역 간 차별 없이 균형 있게 수립·시행할 것 3. 생활안전정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국민 등 관련 주체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수립·시행할 것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제10조에 따른 범죄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범죄예방정책의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2. 범죄예방정책의 주요내용 3. 범죄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4. 범죄예방정책 관련 연구·교육·홍보 5. 범죄예방과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6. 범죄예방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 7. 그 밖에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법무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보 또는 법무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소방·교통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5년마다 생활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제10조에 따른 생활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안전정책의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2, 생활안전정책의 주요내용 3. 생활안전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4. 생활안전정책 관련 연구·교육·홍보 5. 생활안전과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6. 생활안전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 7, 그 밖에 생활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관부처를 법무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
제8조	①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①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의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매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제14조에 따른 범죄예방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시행계획의 보완·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범죄예방 시행계획 수립 주체는 시행계획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생활안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시행계획의 보완 ·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범죄예방 시행계획 수립 주체는 시행계획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계획수립의 협조)	①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기업 또는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기업 또는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범죄예방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범죄예방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6조에 따른 범죄예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관련 재원의 배분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정책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5. 범죄예방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 협조·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범죄예방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심의·조정하려는 사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정책이나 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정책이나 계획을 주관하는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생활안전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생활안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6조에 따른 생활안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생활안전 관련 재원의 배분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활안전정책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5. 생활안전관리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 협조·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활안전관리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심의·조정하려는 사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정책이나 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정책이나 계획을 주관하는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정책위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원회위원회 구성)	되고, 부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회는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범죄예방정책의 이행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또는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검토를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생활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회는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생활안전정책의 이행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또는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검토를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실무협의체의 설치)	① 범죄예방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으로 범죄예방실무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의 구체적 방안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 협조·협력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을 위하여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유관기관 범죄예방 업무 관계자, 범죄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생활안전관리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생활안전실무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의 구체적 방안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 협조·협력에 관한 사항 3. 생활안전관리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안전관리을 위하여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생활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정책책임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범죄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범죄예방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생활안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생활안전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	

	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정책책임관을 지정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정책책임관을 지정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자문위원회)	① 경찰청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주요 정책 자문을 수행하고 관계 부처와의 업무 협의·조정 및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범죄예방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범죄예방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명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위원회) ① 지역별 생활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자문을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생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생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당 지역에 대한 생활안전정책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생활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②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 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명칭 변경 및 기능 확대 - 「재난안전법」 제11조를 참고하여 작성
제15조 (지역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죄예방과 관련된 모든 사업 등 범죄예방정책을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 관계기관, 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범죄예방협의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역 범죄예방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범죄예방협의체의 결정을 반영하여 범죄예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삭제	- 지역협의체를 제14조의 시·군·구 생활안전관리위원회로 대체
제16조 (실태조사)	① 법무부장관은 범죄예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범죄예방 활동의 현황, 범죄예방정책 추진 상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범죄에 대해 발생 현황 및 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관리 실태조사의	

	관령으로 정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국민이 범죄예방 관련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여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주기·방법 및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이 생활안전관리 관련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여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진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물·시설·공간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지역주민으로부터 관할구역 내 건축물·시설·공간 등에 대해 범죄예방을 위한 진단을 요청받거나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 건축물·시설·공간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과 협의를 거쳐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진단을 위하여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범죄예방진단을 하는 경찰관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진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진단 결과를 조사 대상 건축물·시설·공간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진단의 절차 및 방법, 범죄예방진단결과의 기록·유지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활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시설·공간 등에 대한 진단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진단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진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진단 결과를 조사 대상 건축물·시설·공간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생활안전진단결과의 기록·유지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범죄예방디자인/생활안전디자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구역의 공간구조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앞서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17조에 따른 범죄예방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생활안전디자인)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구역의 공간구조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생활안전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앞서 제14조에 따른 시·도 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생활안전진단을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된 범죄예방디자인 시책에 대하여 일정 주기로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실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생활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환경개선사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 내 범죄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지역 범죄예방협의체의 의견을 듣고 그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을 고려하여 범죄취약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별 범죄발생현황, 지역 주민의 성별, 연령대, 인구수 등 지역적 특성, 범죄유발요인 등 2. 강력범죄 발생지역, 여성대상범죄 취약지역, 외국인범죄 빈발지역, 도서벽지 등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⑥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의 절차, 방법, 사업계획의 내용 및 그 밖에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평가의 기준과 방법 ·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 내 생활안전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안전환경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생활안전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안전환경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그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생활안전취약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2. 지난 5년 간 지역별 사고·범죄 발생 현황 3. 제22조에 따른 통계 결과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 생활안전환경 개선사업의 절차, 방법, 사업계획의 내용 및 그 밖에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강화구역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종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아 범죄예방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과 제15조에 따른 지역 범죄예방 협의체의 의견을 들어 특정 지역이나 시설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 시·도소방본부장, 지방 국토관리청 등 관할 관계 기관(이하 “관할 관계 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의견과 제14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특정 지역이나 시설을 생활안전 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안전 강화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 사고, 범죄 관련 관할 관계 기관 확인 필요

	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역의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있는 지역을 생활안전 강화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관계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역의 생활안전 강화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생활안전 강화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강화구역 조치)	① 시·도경찰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범죄예방진단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결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범죄예방 강화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도경찰청장은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소속 경찰관을 증원·배치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찰직무 응원법」 제1조에 따라 다른 시·도경찰청장 등에게 응원 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범죄예방 강화구역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범죄예방 강화구역 내의 시설이나 지역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또는 행사의 관리자·사업자에게 시설·환경의 물리적 개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자체 경비 인력의 증원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물리적 환경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생활안전 강화구역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생활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생활안전진단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결과와 관할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생활안전 강화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 강화구역에 대한 물리적 환경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생활안전 강화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통계의 작성·관리·공개)	① 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은 범죄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정확한 지역별·유형별 범죄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각 형사사법기관이 작성·관리하는 범죄통계를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범죄예방 활동이나 학술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당한 범위 내에서 범죄통계를 공개할 수 있다. 이 때,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활안전과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정확한 지역별·유형별 생활안전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작성·관리하는 생활안전 통계를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생활안전관리 계획수립 또는 학술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당한 범위 내에서 생활안전통계를 공개할 수 있다. 이 때,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 통계 작성 주체에 대한 고민 필요
제23조	① 경찰청장은 지역별 범죄위험수준과 범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별 생활안전관리	

(지수)	죄예방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이하 "범죄위험지수"라 한다)를 개발·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범죄위험지수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범죄위험지수의 개발·조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범죄위험지수의 조사 항목, 방법, 공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준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이하 "생활안전지수"라 한다)를 개발·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생활안전지수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생활안전지수의 개발·조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생활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방법, 공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예보·경보)	경찰청장은 연쇄 살인·강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보 또는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사고·범죄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보 또는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 (디자인 인증)	① 경찰청장은 범죄예방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한 건축물·시설·공간 및 제품 등의 소유자, 관리자, 생산자 등은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경우 건축물·시설·공간 및 제품 등에 인증받았음을 표시하거나 이를 광고에 이용할 수 있다. ④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을 받은 건축물·시설·공간 및 제품 등이 아닌 것은 범죄예방디자인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증기준·인증절차 및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생활안전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안전디자인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디자인 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생활안전디자인을 적용한 건축물·시설·공간 및 제품 등의 소유자, 관리자, 생산자 등은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경우 건축물·시설·공간 및 제품 등에 인증받았음을 표시하거나 이를 광고에 이용할 수 있다. ④ 생활안전디자인 인증을 받은 건축물·시설·공간 및 제품 등이 아닌 것은 범죄예방디자인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증기준·인증절차 및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인증의 취소 등 및 청문)	① 경찰청장은 제25조에 따라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을 받은 건축물·시설·공간 및 제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5조에 따라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을 받은 건축물·시설·공간 및 제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인증 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중요 정보나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3.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4. 기타 인증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인증 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중요 정보나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3.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4. 기타 인증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7조 (공단 설립)	① 국가는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범죄예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범죄예방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범죄예방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범죄예방공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범죄예방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및 연구개발 2. 범죄예방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3. 범죄예방 관련 민간단체 지원사업 4. 범죄예방디자인 인증 및 관리 5. 범죄예방디자인 관련 국제교류 협력사업 6. 그 밖에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예방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⑦ 범죄예방공단에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그 밖에 범죄예방공단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연구개발 내용은 28조에 있음
제28조 (연구개발)	① 경찰청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생활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생활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범죄 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생활안	

(교육·홍보)	형 및 특성을 분석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 교육, 교육방안 개발, 범죄예방 홍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관리 특성을 분석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생활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안전관리 교육, 교육방안 개발, 생활안전관리 홍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 (자원봉사단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는 자율방범·교통안전·학교폭력예방·청소년계도 활동과 범죄예방문화 조성 등 범죄예방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생활안전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생활안전관리 자원봉사단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안전관리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생활안전관리 자원봉사단체의 활동 및 업무의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 (사업에 대한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개선, 범죄예방시설 및 장비의 보급 등 범죄예방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전관리를 위한 물리적 환경개선, 사고·범죄 예방시설 및 장비의 보급 등 생활안전관리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32조 (권한 위임·위탁)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인증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3조 (포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안전관리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과태료)	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에 관한 광고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부과·징수한다.	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에 관한 광고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부과·징수한다.	

출처: 연구진 작성.